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5. 1.

대 한 민 국 국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기간 ····· 1

3. 감사 대상기관 ····· 2

4. 감사실시 경과 ····· 3

가. 감사반 편성 ····· 3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4

5. 증인•참고인 현황 ····· 5

가. 기관증인 현황 ····· 5

나. 일반증인 현황 ····· 6

다. 참고인 현황 ····· 8

6. 주요감사실시내용 ····· 13

가. 공통사항 ····· 13

나. 보건복지부 소관 ····· 14

1) 보건복지부 ····· 14

(1) 기획조정실·인사과·감사담당관 ····· 14

(2) 복지정책관 ····· 15

(3) 복지행정지원관 ····· 17

(4) 연금정책관 ····· 18

(5) 인구아동정책관 ····· 21

(6) 노인정책관 ····· 28

(7) 사회서비스정책관 ····· 34
(8) 장애인정책국 ····· 36
(9) 보건의료정책관 ····· 45
(10) 공공보건정책관 ····· 57
(11) 한의약정책관 ····· 63
(12) 건강보험정책국 ····· 64
(13) 필수의료지원관 ····· 76
(14) 건강정책국 ····· 77
(15) 정신건강정책관 ····· 82
(16) 보건산업정책국 ····· 87
(17) 첨단의료지원관 ····· 88
(18) 의료개혁추진단 ····· 90
2) 국민건강보험공단 ····· 92
3) 국민연금공단 ····· 103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08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118
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20
7)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122
8)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125
9)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126
10) 국립암센터 ····· 129
11) 대한적십자사 ····· 130
1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131
13) 한국장애인개발원 ····· 132
1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135

1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36
16) 국립중앙의료원 ····· 137
1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138
1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39
19)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140
20) 한국한의약진흥원 ····· 141
2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142
22) 한국공공조직은행 ····· 143
23) 아동권리보장원 ····· 143
24)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150
25)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151
26) 중앙사회서비스원 ····· 151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153
1) 식품의약품안전처 ····· 153
(1) 기획조정관 ····· 153
(2) 소비자위해예방국 ····· 153
(3) 식품안전정책국 ····· 154
(4) 식품기준기획관 ····· 160
(5) 수입식품안전정책국 ····· 160
(6) 식품소비안전국 ····· 163
(7) 의약품안전국 ····· 165
(8) 마약안전기획관 ····· 168
(9) 바이오생약국 ····· 173
(10) 의료기기안전국 ····· 176

(11) 감사담당관 ····· 178
(12) 규제과학혁신단 ····· 178
(13)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 178
(14) 사이버조사팀 ····· 179
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180
3)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180
라. 질병관리청 소관 ····· 181
1) 질병관리청 ····· 181
2) 대한결핵협회 ····· 192
7.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195
가. 보건복지부 소관 ····· 195
1) 보건복지부 ····· 195
(1) 기획조정실·인사과·감사담당관 ····· 195
(2) 복지정책관 ····· 196
(3) 복지행정지원관 ····· 197
(4) 연금정책관 ····· 198
(5) 인구아동정책관 ····· 201
(6) 노인정책관 ····· 207
(7) 사회서비스정책관 ····· 212
(8) 장애인정책국 ····· 213
(9) 보건의료정책관 ····· 221
(10) 공공보건정책관 ····· 228
(11) 한의약정책관 ····· 234
(12) 건강보험정책국 ····· 235

(13) 필수의료지원관 ····· 245
(14) 건강정책국 ····· 246
(15) 정신건강정책관 ····· 251
(16) 보건산업정책국 ····· 255
(17) 첨단의료지원관 ····· 256
(18) 의료개혁추진단 ····· 257
2) 국민건강보험공단 ····· 258
3) 국민연금공단 ····· 268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73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82
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284
7)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286
8)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289
9)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289
10) 국립암센터 ····· 292
11) 대한적십자사 ····· 293
1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294
13) 한국장애인개발원 ····· 295
1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298
1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299
16) 국립중앙의료원 ····· 300
1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302
1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302
19)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303

20) 한국한의약진흥원 ····· 304
2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305
22) 한국공공조직은행 ····· 306
23) 아동권리보장원 ····· 306
24)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313
25)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314
26) 중앙사회서비스원 ····· 314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316
1) 식품의약품안전처 ····· 316
(1) 기획조정관 ····· 316
(2) 소비자위해예방국 ····· 316
(3) 식품안전정책국 ····· 317
(4) 식품기준기획관 ····· 321
(5) 수입식품안전정책국 ····· 322
(6) 식품소비안전국 ····· 324
(7) 의약품안전국 ····· 325
(8) 마약안전기획관 ····· 329
(9) 바이오생약국 ····· 334
(10) 의료기기안전국 ····· 336
(11) 감사담당관 ····· 338
(12) 규제과학혁신단 ····· 338
(13)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 339
(14) 사이버조사팀 ····· 339

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340

3)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340

다. 질병관리청 소관 ····· 341

1) 질병관리청 ····· 341

2) 대한결핵협회 ····· 353

8. 증인 및 참고인 주요 신문사항 ····· 355

가. 증인 ····· 355

나. 참고인 ····· 357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법률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 대안과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감사기간

2024년 10월 7일(월) ~ 10월 25일(금) [19일간]

3. 감사 대상기관(총 42개)

-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제3호): 39개
-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3개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39개)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3개)
1. 보건복지부 2. 질병관리청 3. 식품의약품안전처 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8.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9.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1. 국민건강보험공단 12. 국민연금공단 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7.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8.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9. 국립암센터 20. 대한적십자사 2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2. 한국장애인개발원 2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5. 국립중앙의료원 26.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8. 한국장기조직기증원 29. 한국한의약진흥원 3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31. 한국공공조직은행 32. 아동권리보장원 33. 한국자활복지개발원 34. 한국보건의료정보원 3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36.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37. 식품안전정보원 38.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39.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 대한결핵협회 2. 중앙사회서비스원 3.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 감사위원

구 분		위 원
감 사 반 장		**박주민 위원장**
감사위원	더불어민주당 (14인) *위원장 포함	△**강선우 위원**, 김남희 위원, 김 윤 위원, 남인순 위원, 박희승 위원, 백혜련 위원, 서미화 위원, 서영석 위원, 소병훈 위원, 이개호 위원, 이수진 위원, 장종태 위원, 전진숙 위원
	국민의힘 (8인)	△**김미애 위원**, 김예지 위원, 백종헌 위원, 서명옥 위원, 안상훈 위원, 최보윤 위원, 추경호 위원, 한지아 위원
	조국혁신당 (1인)	김선민 위원
	개혁신당 (1인)	이주영 위원

△ : 간사

○ 사무보조자

구 분	성 명
위원회 직원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연광석 (행정실장) 현승철 (보건의료정책조사관) 정민주·김영수·조서연·이강혁·허기원·이성임·최은영 (복지정책조사관) 김태엽·김대명·박지호·양승민 (식품의약정책조사관) 정현하·김유림 (행정관) 최신기 (주무관) 홍재경·부 미·배자영·임현숙
의원 보좌진	김인아·김연주·홍춘택·이기정·김봉겸·이백휴·권 훈·조현수·김형준·김민준·황인기·변철환·김미중·김용천·신영훈·황동연·김영상·이상호·이수철·엄보섭·김동규·원종용·김명신·김성필
정책연구위원	조원준·홍성대·오용희·김민정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시 각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 7.(월)	10:00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회	
10. 8.(화)	10:00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회	
10. 10.(목)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및 소관기관 배석(지방청 포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국회	
10. 11.(금)		(자료정리)		
10. 14.(월)		(자료정리)		
10. 15.(화)		(자료정리)		
10. 16.(수)	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10. 17.(목)	10: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	국회	
10. 18.(금)	10:00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회	
10. 21.(월)	10:0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국회	
10. 22.(화)		(자료정리)		
10. 23.(수)	10:00	종합감사	국회	
10. 24.(목)		(자료정리)		
10. 25.(금)		(자료정리)		

5. 증인·참고인 현황

가. 기관증인 현황

기 관 명	증인수(명)	비 고
보건복지부	31	
질병관리청	18	
식품의약품안전처	1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	8	
국민연금공단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	
국립암센터	1	
대한적십자사	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	
한국장애인개발원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국립중앙의료원	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	
한국한의약진흥원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	
한국공공조직은행	1	
아동권리보장원	2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	
한국보건의료정보원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	
식품안전정보원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	
대한결핵협회	3	
중앙사회서비스원	2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1	
계	139	

나. 일반증인 현황

연번	성명	직업	신청의원 (소속정당)	피감기관 (출석요구일)	신문요지	비고
1	김소연	PCL 대표	강선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8.) (10. 23.)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체외의료기기 허가 절차 정당성 관련	
2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	강선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8.)	첩약 및 약침 급여화 절차 정당성 관련	
3	황성윤	법무법인 화우 고문	강선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8.) (10. 23.)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체외의료기기 허가 절차 정당성 관련	
4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	소병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백종헌 위원 (국민의힘)	식품의약품 안전처 (10. 10.)	코스트코코리아 양평점에서 ‘미국산 냉장 앞다리 불고기’ 제품에서 2개의 금속조각이 발견, 향후 대책 신문 반품 상품 대장균 검출 관련 식약처 점검 상황 및 수입축산물 관리 제도 보완 등	
5	주성원	쿠팡 전무	이수진 위원 (더불어민주당)	식품의약품 안전처 (10. 10.)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 점검	
6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박희승 위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공단 (10. 18.)	MBK 파트너스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 MBK 파트너스의 잇따른 논란이 ESG 원칙에 문제 없는지 확인	
7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	이수진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23.)	병원 진료 예약 어플 똑닥 유료화 관련 상대적 피해 문제 해결 방안 이행 점검	
8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	한지아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23.)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관련	
9	김인규	PCL CFO 전무이사	강선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23.)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체외의료기기 허가 절차 정당성 관련	

연번	성명	직업	신청의원 (소속정당)	피감기관 (출석요구일)	신문요지	비고
10	김필수	분당본플러스병원 원장	강선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23.)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체외의료기기 허가 절차 정당성 관련	
11	양재웅	더블유진병원 대표원장	김 윤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23.)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 사망 관련 질의 격리 강박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심문	
12	이지선	메디스태프 직원	김미애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23.)	국정감사 소회의장 무단출입 관련	
13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이사	김 윤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23.)	비대면진료 플랫폼 내 특정의약품 판매 관련 질의	
14	허정운	더블유진병원 진료과장	서미화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23.)	격리 강박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심문	
15	황금록	삼광의료재단 진단검사전문의	강선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23.)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체외의료기기 허가 절차 정당성 관련	

다. 참고인 현황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신청의원 (소속정당)	피감기관 (출석일자)	신문요지	비고
1	구민정	당뇨병교육 간호사 (대한당뇨병 교육 간호사회장/ 서울대 어린이병원 당뇨병교육실 간호사)	서미화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8.)	당뇨병 환자를 교육하는 간호사이자, 췌장장애 선정에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	
2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남인순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8.)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견해	
3	김대중	내분비의사 (대한내분비 학회 보험이사/ 아주의대 당뇨병센터 교수)	서미화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8.)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이자, 췌장장애 선정에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	
4	김신애	장애인 부모	최보윤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8.)	경장영양제(유동식) 공급부족에 따른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현장 증언	
5	남우동	강원대학교병원 병원장	장종태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8.)	지방국립대학교 경영난 및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현황 관련 질의	
6	박민숙	전국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수진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8.)	병원노동자 노동상황 실태 점검	
7	박정환	한양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 내과 교수	이주영 위원 (개혁신당)	보건복지부 (10. 8.)	제2차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 관련	
8	박조은	자영업	전진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8.)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 환경 개선 관련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신청의원 (소속정당)	피감기관 (출석일자)	신문요지	비고
9	박진주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팀장	안상훈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8.)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및 대책 마련 관련	
10	서은교	경기 지역상담기관 기관장	김미애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8.)	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11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남인순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8.)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견해	
12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남인순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8.)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필요성, 일차의료 강화 및 국민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 의료대란 관련 환자 피해 상황 검토	
13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강선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8.)	의대증원 관련 의학교육 평가 계획 및 교육부 지침 변경 문제점 지적	
14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서명옥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8.)	실손보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관련	
15	오복경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김예지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8.)	노인학대 사례 관련	
16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강선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8.)	의료대란 관련 사직 전공의 당사자 의견 경청	
17	정태근	한국근육장애인협회장	최보윤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8.)	희귀중증질환 재활 관련 현장 의견 청취	
18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	김선민 위원 (조국혁신당)	보건복지부 (10. 8.)	의료대란 관련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신청의원 (소속정당)	피감기관 (출석일자)	신문요지	비고
19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김 윤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8.)	코로나19 회복기 보상 관련 질의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정책 관련 점검	
20	최윤정	전)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김예지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8.)	장애노인 활동지원 및 장애인일자리 관련	
21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남인순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8.)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견해	
22	김재성	인천 참사랑병원 진료과장	서명옥 위원 (국민의힘) 한지아 위원 (국민의힘)	식품의약품안전처 (10. 10.)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 관련 의료현장의 고충 청취	
23	남경필	마약예방 치유단체 '은구(NGU)' 대표	강선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식품의약품안전처 (10. 10.)	마약 재발방지 단체 활동 관련	
24	려우 문한	웨일코코리아 Trust Safety 팀 책임자	서영석 위원 (더불어민주당)	식품의약품안전처 (10. 10.)	의료제품, 식품, 화장품 불법 유통 및 광고 관련	
25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	김 윤 위원 (더불어민주당)	식품의약품안전처 (10. 10.)	의료기관 내 마약류 오남용 관련 질의	
26	김대연	의료법인 희정의료재단 양구우리병원 원무부장	김예지 위원 (국민의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 16.)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종료(2024년 12월 31일)를 앞두고 사업의 연장 필요성 확인 및 의료취약지 현장의 목소리 청취, 취약지 의료인력 공급 지원, 의료서비스 개선 등 시범사업의 효과 점검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신청의원 (소속정당)	피감기관 (출석일자)	신문요지	비고
27	이승준	(주)일공비 이사	강선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0. 16.)	SMA 환자 급여기준 확대 불구하고 불승인 증가 관련	
28	조정일	한국폐암 환우회 회장	서명옥 위원 (국민의힘)	국민건강 보험공단 (10. 16.)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 확대 필요성 관련	
29	김 민	기후변화 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	남인순 위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공단 (10. 18.)	국민연금 탈석탄 선언 관련	
30	공혜정	(사)대한아동 학대방지협회 대표	서명옥 위원 (국민의힘)	아동권리 보장원 (10. 21.)	아동학대 이후 대응에 대한 문제점	
31	김춘심	전)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남인순 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사회 서비스원 (10. 21.)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32	한분영	덴마크한국인 진상규명그룹 공동대표	남인순 위원 (더불어민주당)	아동권리 보장원 (10. 21.)	입양기록 전산화 문제, 입양인 정보공개청구 소송 등 입양제도 관련	
33	강현석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전주지역 수행기관	서미화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23.)	보건복지부 탈시설 시범사업 관련 질문 수행기관이 겪는 시범사업 집행의 어려움 등	
34	권영대	한국수포성 박리증환우회 팀장	강선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23.)	수포성 박리증 환자 치료재료 급여화 및 희귀질환관리법 제정 필요성 관련	
35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	강선우 위원 (더불어민주당)	식품의약품 안전처 (10. 23.)	문신사법 제정 필요성 관련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신청의원 (소속정당)	피감기관 (출석일자)	신문요지	비고
36	박초현	피플퍼스트 성북센터 (성북발달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서미화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23.)	보건복지부 탈시설 시범사업 관련 탈시설 당사자 질문 탈시설 경험과 필요성 등	
37	신석철	한국정신 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	김 윤 위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10. 23.)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 사망 관련 질의	
38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	김미애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23.)	고립은둔청년 관련	
39	이상아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보윤 위원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10. 23.)	공공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현장 의견 청취	

6. 주요감사실시내용

가. 공통사항

(1) 2024년도 업무현황

(2) 2023년도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3) 2023년도 및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4) 2023년도 및 2024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5) 2023년도 및 2024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내규 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7) 위 (1)~(6)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8)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나. 보건복지부 소관

1)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인사과·감사담당관

○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의 간호조무직 및 의료기술직 등 소수직렬의 하위 직급 편중현상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보건복지부의 경우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28% 사업이 미흡판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정밀한 진단 및 전략적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위원회 위원 구성시 노동자 대표를 전국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의 추천인을 선임할 필요

○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중 하위법령이 미규정된 조항에 대한 사유 등에 대해 질의

○ 보건복지부 소속기관들이 성비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 필요

○ 최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징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질의

○ 보건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공공 모바일앱 일부가 앱 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아 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므로 앱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도록 개선할 필요

○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해 의료기관 보안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필요

○ 권익위에서 통보받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징계처분 관련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복지정책관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직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

○ 사회복지사 2급 국가시험제 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질의

○ 내년 기준 중위소득 책정 시 산정 방식 원칙 준수 및 임기 내 생계급여 선정 기준 35% 상향 필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택연금 월지급액의 50%를 포함하고 있어 주택연금 가입을 저해한다는 지적

○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장기수급하는 원인 및 해소방안 마련 필요성 지적

○ 수급 경계선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 및 탈수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다시 수급자가 되는 문제 지적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복지사각지대를 포괄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완충적 복지 지원제도 필요성 지적

○ 자활사업의 탈수급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열악한 지역의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지역자활센터 운영보조금 인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 자활사례관리사 확충 및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등 현장의 요구에 대한 복지부 의견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제2대 원장 임명 관련 공모, 재공모 등 심사과정 외압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 근로능력평가 비용 지원과 평가 결과 이유 공개 필요

○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의 재검토 및 보완방안 마련 필요

○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의 원인이 세수 부족인지, 정률제 개편 시 본인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에 대한 질의

○ 의료급여 식대가 건강보험과 차이가 없도록 개선할 필요

○ 정신병원 의료급여 환자 폐쇄병동집중관리료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

○ 의료급여관리사 인력 충원 및 처우개선 필요

○ 취약계층 임산부의 유·사산율 원인 파악을 위한 별도의 실태조사 필요

복지행정지원관

○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위기가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지원할 필요

○ 통합사례관리사 직무 열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처우개선 필요

○ 사회복지관 인력기준 준수를 위해 보건복지부 관리·감독 필요

○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 마련 필요

○ 고독사에 대한 대책 및 생애주기별 예방 정책 마련 필요

○ 고독사 통계에서의 기준 명확화 및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 시스템 구축 필요

○ 노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해 정부 역할 강화 및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복지멤버십 가입 확대에 관한 질의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국민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도록 점검하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체계 마련 필요

○ 복지부 빅데이터 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과 관련하여 중단 없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개발자 수급 계획에 관한 질의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4차 재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에 관한 질의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참여했던 기업들 관련 실적 정리 및 추후 수주업체 선정 시 히스토리 반영 필요

연금정책관

《 연금개혁 》

○ 제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 결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고령자 노동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연금급여액 삭감에 대한 우려 검토 필요

○ 국민연금 연령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에 따른 세대별 형평성 저해에 대한 우려와 기타 복지제도와의 관계성에 대한 검토 및 설명 필요

○ 지속가능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과 연금개혁의 성격을 고려한 국회 차원의 논의 기구 구성 필요

○ 연금개혁안 준비 과정에서 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한 사례가 없음에도 FGI와 무관한 출입기자단 설명회, 의원실 토론회, 토크콘서트 등을 FGI 사례로 제시한바, 투명하고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여론수렴 과정 구성 및 신뢰성·타당성을 높일 조사방법 마련 필요

○ 국민연금제도 중심의 연금개혁 추진 필요

○ 군복무·출산크레딧 사전 적용 및 일반회계 비용부담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저소득 지역가입자 및 중소기업 대상 보험료 지원 확대 필요

○ 국민연금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개혁 추진 필요

○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시하는 연금개혁 필요

○ 제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연금개혁 공론화'의 방법 및 결과의 한계를 고려한 '연금개혁 추진계획' 검토 필요

《 기초연금 》

○ 기초연금 급여액의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타당성 검토 필요

《 국민연금 》

○ 내국인-외국인 간 역차별 방지 위한 국민연금제도 운영 필요

○ 청년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동성부부 인정 판결 취지 및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민연금 적용 여부 신중 검토 필요

○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외국인 반환일시금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제도 폐지 등 정비 필요

○ 조기노령연금 수급 원인 분석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빈곤 대책 마련 필요

○ 여성의 출산크레딧 수급 기회 확대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 정부 당연직 위원 참석률 제고 필요

○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 강화 필요

○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회의 임차료 예산 절감 및 적정 규모 계상 방안 마련 필요

○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필요

○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기준 도입 등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필요

○ 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필요

○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재정안정화·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선제적인 국고 투입 방안 검토 필요

○ 국민연금공단 미수납 수탁사업인건비(약 1,414억원)에 대한 국가재정 책임 필요

○ 대표성 있는 노동자 단체 추천 위원의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포함 필요

○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의 역진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이나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마을자치연금 사업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국민연금공단 복지사업의 다변화 및 확대 방안 검토 필요

○ 노후긴급자금대부제도의 접근성 제고 등 종합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국민연금기금 적자에 대한 국고 투입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와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에 국고 투입을 집중할 필요

인구아동정책관

《 저출산 및 인구위기 대응 》

○ 최근의 출생아 수 증가 원인 및 헝가리의 성공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보고 요청

○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책에 대한 질의

○ 저출생 현상 완화를 위해 기업 등 사회 전반의 참여가 필요하며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필요, 진행상황에 대해 의원실 보고 요청

○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유례없는 대책이 필요하므로 복지부와 향후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에서 적극적으로 논의 필요

○ 인구위기 대응 방향 관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개정하는 「인구정책기본법」을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필요

○ 인구전략기획부(인구위기대응위원회) 예산심의 사항을 재정당국이 충분히 존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필요성 질의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정책의 현황에 대한 질의

《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 》

○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발굴·지원정책 마련할 필요

○ 고립·은둔 청년 시범사업 조기 확대 필요성과 이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의

○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상을 13세부터 34세 이하에서 0세부터

전주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처 필요

○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의 규모는 얼마인지 및 지원대상자로서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의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발굴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

○ 관련 법률 제정안에 대한 검토 현황과 향후 정부의 계획에 대한 질의

《 인공임신중절 관련 》

○ 국가인권위원회의 임신중지 제도 개선 관련 정책 권고에 대한 복지부 견해 및 의견 표명 계획에 대한 질의

○ 낙태죄 입법공백기,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법률 개정을 지원하고 제도를 마련할 필요

○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계획을 마련할 필요

○ 인공임신중절 관련 임상 및 상담 가이드를 업데이트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

《 모자보건사업 관련 》

○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미숙아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 및 전국 확대 필요

○ 산후조리원 이용자 증가에 따라 감염 관리 등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원 관리·감독 기능 강화 필요

○ 산후조리원 종사자 교육 강화, 실태조사 실시 및 산후조리원 평가 실시와 그 공개 필요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 및 산후조리원 평가 도입에 대한 질의

○ 국내출생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 의무화 및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한 질의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

○ 위기임산부 상담 결과 통계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필요

○ 보호출산 시 직접 양육을 하는 것에 대한 분류 필요 및 생부의 입양취소 청구 확정 시에도 보호출산을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친부의 양육 기회 박탈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

○ 위기임신 상담 시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을 포함할 필요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홍보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의 인력 충원 필요

○ UN아동권리위원회 5,6차 최종견해에서 베이비박스 금지할 것을 권고한바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상담 유형 통계 항목에 임신중지 관련 항목 포함할 필요

○ 장애가 있는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대리 신청 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는 당사자 중심의 상담 지원을 위하여「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의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를 통한 보호출산에 장애인개발원이 시행하는 의사결정 지원 방안 연계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보호출산제 관련 숙려기간 2주일로 연장할 필요

○ 신고 아동복지시설에는 인권보호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있고 학대 예방 교육도 실시되고 있으나 베이비박스 등 불법 미신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바, 그에 대한 조치 필요

《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

○ 기록물 원본에 면 표시 누락, 백지 스캔, 기록물 전산화 지침 미준수, 용역·감리업체의 선정 및 부실한 일 처리 등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 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구) 중앙입양원 및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 향후 기록물 전수 이관, 전산화의 차질 없는 이행 필요

○ 과거 한국 입양기관이 작성한 입양 관련 서류 허위 사례 등 지적 등을 감안하여, 해외입양인의 알 권리 침해가 없도록 입양인의 정확한 기록 확보 등 방안 마련 필요

○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의 기록물 원본에 면표시 누락, 백지 스캔, 기록물 전산화 지침 미준수 등 문제발생 용역업체에 비용 환수, 수사 의뢰 등을 포함하여 철저한 시정조치를 할 필요

《 아동보호자립 관련 》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특별지원시설 퇴소자를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발굴시스템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가 유기

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는바, 위기가구발굴 시스템을 통해 포착된 위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 재정비 필요

○ ‘삼성 희망디딤돌’ 사회공헌 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 운영예산 국비지원 필요

○ 아동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사용처를 점검하고, 고물가 경제위기에 급식카드 단가도 현실화될 필요

○ 현재 입소 아동 수에 따라 결정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필수 인력 인건비 지원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상담지도원, 자립전담요원 등 전문인력 배치 등 개선 필요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의 대부분이 지자체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별 격차, 특정 지자체의 부담 가중, 아동 수용 기피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지방이양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편성 필요

○ 보호대상아동을 단순히 ‘보호’하고 탈시설 시키는 기능이 아닌 향후 자립가능한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장애/경계선지능/ADHD 등 특수욕구아동 등에 대한 전문적 관리체계 필요

○ 자립준비 장애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한 부처 내 협의 필요

《 아동학대 관련 》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재학대 아동 가정방문 등 조사절차 도입 필요

○ 아동학대 조기발굴 및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형 아동학대예방 사업 진행 및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필요

○ 아동학대가정에 대한 사례관리가 경제적인 지원에만 집중되어, 반복되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관련하여 아동보호시스템을 개선할 필요

○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 예산 확보 및 쉼터를 영유아 등 연령대별 세분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특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쏠림 현상 및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 배치 방안 필요

○ 장애아동 학대사례에 대하여 아동학대·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업무분담이 명확치 않다는 현장 의견이 있음. 2019년에 학대 대응기관 협의체가 구성되었지만 2차례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회의가 개최되지 못함. 학대 대응기관 협의체를 다시 가동할 필요

○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하고 가정방문형 학대 예방 발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

○ '암수범죄'라는 아동학대의 특성을 고려, 문 뒤에 숨은 아이들, '숨겨진 정인이'를 발견하기 위해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도를 도입할 필요

○ 지자체별 인력 수요와 업무량, 여건 등을 고려해 대응인력을 추가적으로 보강할 필요

○ 아동학대 판단 전이라도 개입이 필요하다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아동보호 체계 전면 개편 이후 현재 사례관리 업무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 현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할 필요

○ 직무상 환자와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약사와 간호조무사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여 적극적인 학대 대응을 가능하게 할 필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외 다른 업무도 같이 담당하고 있는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와 대응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경력관 비중 늘려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평균 근속기간이 15개월에 불과한 상황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와 대응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계획 여부

○ 재학대아동 보호를 위하여 '원가정보호원칙'에 실질적 안전성 보장 추가 및 「가사소송법」상 가사조사절차에 준하는 조사절차 도입 검토 필요

《 기타 》

○ 2019년 UN 아동권리위원회가 수용자 자녀의 권리 보장을 권고한바, 접견 원활화 및 토요아동돌봄접견 연령의 19세 상향 검토를 위하여 법무부와 협력할 필요

○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지역별 임금격차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지역아동센터의 부족한 운영비 확보 방안 및 특성별 프로그램비 감액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2018년부터 동결된 아동수당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적 가치 보전 필요

노인정책관

《 노인복지 》

○ 다양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인정책관의 조직 확대 필요

○ 초고령사회 시대 노인을 배려하는 정책 도입 필요

○ 노인 기준 연령의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인상, 근속수당, 명절상여금과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교통비와 통신비 등 돌봄필요경비 예산 확보 필요

○ 초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 지원·육성 필요

○ 경로당 급식 확대에 필요한 양곡비 외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 5일 식사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살펴 볼 필요

○ 사회복지관 노인급식의 권고단가 명시, 필수인력 배치, 인건비 지원 근거 등 개선방안 필요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요건(경력 등) 강화 필요

○ 진료예약앱 이용 등과 관련된 노인 대상 디지털 정보역량 강화 교육 필요

《 노인 일자리 》

○ 노인일자리 확대에 따른 전담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 계획(고용안정·임

금지급기준·배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노인일자리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발생률이 증가했으나 통계 관리가 미흡한데 안전사고 관리대책과 통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노인일자리 중도포기자 감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활동역량과 연계 일자리가 일치하도록 참여자 신체능력 평가지표 등 선발기준을 마련할 필요

○ 취약노인 참여율이 높은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꾸준히 확대하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개발할 필요

○ 노인일자리 위험성 평가 예산 확보와 사업유형별 안전전담인력 배치 필요

○ 노인일자리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관리도 필요

○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부와 참여자 안전을 위한 관리방안 필요

○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꾸준한 확대와 양질의 노인일자리 보급 필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운영안내 지침서 개선 필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도 치매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노인 인권 》

○ 가정인 노인학대 행위자 중 알콜사용장애 등 심리병리적 질환자의 치료 · 재활 프로그램 필요

○ 요양원 등 노인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인학대사건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을 마련할 필요

《 장사지원사업 》

○ 초고령화 시대 화장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화장시설 확충 및 운영 확대 검토 필요

○ 편차 없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지자체 지원, 무연분묘 실태조사 계획 및 한시적 매장제도 폐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치매 관리 》

○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용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발급 업무 때문에 치매안심센터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으므로 도로교통공단과 재논의 필요

○ 치매 용어 개정,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 등 치매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치매관리사업 추진 필요

○ 치매안심병원을 급성기병원 중심으로 확대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논의 필요

○ 치매공공후견인 제도의 미활성화 원인과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성과지표 개선 등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치매 질병코드의 세분화 및 치매 관련 새로운 통계 산출 필요성 검토 등 선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치매 중증화 억제 대책 필요

《 지역사회통합돌봄 》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신속한 전문기관 지정, 의료기관 참여 제고 등 사업준비를 철저히 하고 기술지원형 지원 등 예산을 확대할 필요

○ 교육강화 등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제정법(장애인·정신질환자 포함)에 따른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우수사례를 확산할 필요

○ 통합돌봄 시범사업 모니터링·평가를 통하여 상시적인 통합돌봄법 시행 준비 체계를 검토할 필요

《 장기요양보험 》

○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 관련, 동일한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만 반영하는 현행 기준에 대해 전체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시간을 하루 최소 5시간 이상 보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근속장려금 금액 인상 등을 검토할 필요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안정적 운영 및 역할·기능 강화, 대체인력지원사업 추진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장기요양요원 지자체 처우개선수당 지급현황을 파악하고, 수당 지원사업을 계획 중인 지자체의 경우 국비와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임에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므로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전국 요양원을 대상으로 노인 격리강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가 격리강박 등 노인학대 시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전국 19개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에만 설치되어 있는 이유와 향후 설치방안에 대해 질의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대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추어 예산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

○ 지역별로 장기요양 서비스가 부재하거나 지역간 격차 및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시장실패에 대한 국가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적정서비스에 대한 기준 및 목표를 세우고 필요시 공공 요양병원 설립을 유도하거나 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민간 요양시설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방문간호 활성화 방안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 방문간호센터 간 연계성 강화 방안 검토 필요

○ 요양기관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질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 평가 및 컨설팅단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재택의료 제공 의원이 어디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기관명단 게시방안 마련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평가 결과 관련, 재택의료센터 이용 시 기존 의료기관 이용 증가의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기반사업의 연계 필요성 검토 필요

○ 장기요양 등급 심사 및 등급 판정 관련 부실심사로 인하여 혜택을 받아야 할 노인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매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적발액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현지조사 확대 및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법경찰권 부여 검토 필요

○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연도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금액차이가 커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 검토 필요

○ 방문의료 제공인력 관련 간호조무사의 교육 및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 장기요양 평가시 인건비 지출 기준 미준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반영하고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요양보호사 공급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적극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권리 보호 및 처우개선 필요

○ 장기요양보험 영리법인 확대 관련 시장 독점, 영세사업자 도산, 서비스 질 저하, 공공성 약화, 공공자금 사용의 적절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대책에 대한 검토 필요

○ 요양원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 관련 본래 취지인 서비스질 개선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계획 고지를 이전 정기평가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으로 조정할 필요

○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에 양대노총이 배제된 것에 이유 등에 대하여 질의

○ 장기요양보험 국가지원 관련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하는 방식으로 국가지원금을 축소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 “상당하는” 이라는 문구들의 의미가 모호한 바 법률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

○ 배회감지기가 필요한 치매 노인이 배회감지기를 부담 없이 대여 또는 구매할 수 있는 방안과 재정을 통한 보급 확대 계획을 마련할 필요

○ 고용노동부의 요양보호사 훈련 과정 관련 자부담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생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전국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확대 및 예산 증액, 운영 기준 개정, 역할 및 기능 강화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 필요

○ 공공요양기관 확충계획에 대해 질의

○ 공공요양시설 확충 및 관련 인력 양성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에 대한 국가책임성 제고 필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영유아 시설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관련, 실태 파악과 시설 전환을 지원하고 요양시설 확충계획 수립 시 반영할 필요

사회서비스정책관

○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누락된 사항(지역 실태파악 및 균형발전, 제공기관 확충, 전달체계 개선, 이용자 권리보호) 반영 수정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질의

○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은 돌봄 등으로 인한 고용의 단절을 방지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및 홍보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질의

○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젊은 자원봉사자도 늘릴 수 있는 케어뱅크 사업의 활성화 필요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시스템 보안 강화 및 재발방지를 위해 산하기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 기업의 참여 유도, 정부 비축농산물의 효과적 활용 등 푸드뱅크 사업의 기부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사회복지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현황에 대한 질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간 보조금 지급연령 차이 , 종사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지방이양 철회 필요

○ 사회복무요원 기본직무교육 장애인 분야 교육 확대를 통한 장애감수성 향상 필요

○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개선할 필요

○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를 활성화할 필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승진제도를 개선 검토 필요

○ 복지부 자체사업과 각 시도 복지사업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문제를 개선할 필요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수요 대비 공급의 부족을 개선할 필요

○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민간기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복지부의 관리 · 감독 필요성에 대해 질의

○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성과 표준운영지침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질의

○ 향후 사회서비스원 해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치계획에 대해 질의

○ 종합재가센터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질의

○ 사회서비스원의 주간, 야간 돌봄을 위한 추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 질의

○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 질의

장애인정책국

○ 1형 당뇨에 대한 장애인정 필요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관련하여 신규급여 편성 방법 또는 부처별 칸막이 서비스 장벽 제거 방법에 대해 검토하여 장애인 선택권 보장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필요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시범사업 기간 연장 검토 필요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시청각장애인은 별도 장애유형으로 구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 지원 관련 제정법안 발의 준비 중으로 관심 필요

○ 장애인복지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기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개정안 심사에 관심 필요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로 포함된 이후 국비지원(인력, 운영비 등) 계획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 질의

○ 2023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로 시범사업 전담인력의 낮은 급여 수준을 지적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전담인력 급여를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인력이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팀원 수준으로 인상 필요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학대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시설에 두지 않고 지역사회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대구 청암재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 상황과 자립지원 상담조사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한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지속성과 본 사업의 안착화를 위해 법률 근거 마련 필요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보완 계획에 관한 보건복지부 의견 질의

○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5개년 계획 수립 필요성에 관한 보건복지부 의견 질의

○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및 의사소통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자립지원 필요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전담인력 기준 상향화와 처우개선 필요성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 질의

○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가짜뉴스 대응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관한 질의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자립 의사가 있을 경우 가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당사자 목소리를 고려하여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 필요

○ 대구 청암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자립 및 인권실태 전수조사 필요성에 관한 보건복지부 의견 질의

○ 자립준비 장애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마련 필요

○ 광역단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복지부 의견 질의

○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간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서 신속·적극적 대처에 한계가 있음. 과거 인구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학대대응협의체 재가동하여 학대 예방 대응에 힘써주길 바람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복지부 차원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

○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권침해, 비리횡령 등 사건 발생 시 사건개요 및 처분내용 등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한 질의

○ 중앙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필요한 인력 증원, 기관운영비, 학대정보시스템 기능 및 관리 운영 개선에 대한 예산 증액 필요

○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상근 법률지원 인력 배치 필요

○ 약사와 간호조무사를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질의

○ 경기남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허위고발 등 방만운영에 대한 복지부 입장에 대한 질의

○ 베리어프리 장애인 키오스크 공공의료기관 설치 미흡,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 준비 필요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이행계획 필요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최종견해에 의거 장애인 차별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협약 관련 안건의 적극상정, 전담인력 구성,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정부차원의 개인진정 지원방안 모색 필요성

○ 협약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어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 담당해야 할 협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절차 마련 필요

○ 지난 제1차 국가보고서와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따른 최종견해 중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연속으로 권고를 받은바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전담인력 배치 등 정부 내 조정기구 설치·운영에 대한 견해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세부조항 중 우리부 소관과 관련 분야가 미이행 및 부분이행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에 대한 우리부의 이행 방안

○ 이행률 미흡한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계획 미발표 이유 및

향후 계획

○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등의 개정

○ 장애인권리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활용 및 장애인단체 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

○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설치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필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자를 향한 무분별한 비난과 협박에 대한 대책

○ 기존 자동차에 대한 주차표지 발급방식에서 사람중심 주차표지 발급방식에 대한 방안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적용방식 개선(24시간 주차 시에도 1회 부과) 필요

○ BF인증운영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필요

○ BF인증 과정에서 장애유형별 특성을 균형감 있게 반영하기 위한 방안 필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현실화 시점을 확정 필요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면적기준 일괄삭제 검토 필요

○ 장애인거주시설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행정처분 강화 필요

○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구)장애등급제에 따른 1·2급 및 3급 중복장애에서 ‘심한 장애’ 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법 개정 검토 필요

○ 장애인 중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판정자의 장애인일자리 신청 및 참여

대상 제한에 대한 개선 필요

○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수당이나 사업체지원금이 고용노동부의 유사 사업과 차이가 있으니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이 필요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 기관 확대를 위한 방안 필요

《 활동지원서비스 》

○ 장애인이 활동지원사로부터 학대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실태 보고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관련 생업지원 등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 보고 필요

○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로 인해 부정수급 낙인이 찍히는 장애인 없도록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도래자 대상 서비스 선택권 보장 필요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장애노인이 활동지원서비스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의료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복지부 입장

○ 1인 사업자의 경우 생업 지원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동지원 서비스 범위 확대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이 장애인 돌봄에 치우쳐져 있다는 비판에 대한 복지부 입장

○ 아이돌봄서비스를 활동지원과 동시간대에 이용하지 못하게 한 활동지원 지침 개선 필요

○ 활동지원 지침의 ‘특별지원급여의 지원대상’에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에 대한 활동지원을 한 종류로 추가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이용자에게 서비스 내용의 정확한 안내 등 활동지원사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장애인 이동을 지원하는 경우의 문제점과 복지부의 개선방안

○ 장애인활동지원사 표준계약서 필요성과 구체적인 서비스를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장애인활동지원 미연계 해소를 위한 가산수당 인상 계획, 활동지원급여량 확대계획, 서비스 미이용 사유 조사 결과에 대한 질의

○ 장애인활동지원사 고령화 및 지역별 격차해소 대책, 수당체계 개선, 근속·경력·교육 등에 따른 지원가산체계 방안에 대해 질의

○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미연계 해소를 위한 가산수당 인상,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등 대책에 대한 질의

○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가산수당 추가 인상 계획, 활동지원사 미연계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 중앙정부 차원의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지원계획과 지방자치단체별 24시간 지원 현황에 대한 질의

○ 23년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주민세가 면제되었는데, 그 이전 20년~22년 기부과 금액에 대한 특례 적용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 발달장애인 지원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나이제한 관련 제도개선 필요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활성화 필요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종결을 위한 전이방안 개발 필요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 서비스 확대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 서비스 본사업 전환 및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 필요

○ 발달장애인 맞춤 지원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 내실화 및 전담인력 확충 필요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발달장애인 참여 확대 및 정보 접근성 개선 필요

《 장애아동 지원 》

○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치료나 지원체계 및 제공인력 강화 필요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관련 소득기준 완화 계획 마련 필요

○ 발달지연 진단 아동 증가에 따라 공공서비스 대기시간 증가, 바우처 지원 확대 외에 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 필요

○ 정부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액과 민간 서비스 제공 단가 격차가 심화하고 있어, 바우처 지원금 현실화 및 지역별 서비스 단가 격차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장애인 의료접근성 》

○ 국립재활원에서 장애인 수면내시경 검사 가능토록 대책 마련 필요

○ 장애인 감염 취약시설 등에 대한 미래 펜데믹 준비 필요

○ 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관련 사업 신설 방안 마련

○ 장애인건강권법상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미수립에 대한 대책 필요

○ 장애인의 당뇨관리 등 만성질환 취약성 관리를 위한 정부의 건강보건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 경관급식 이용 인구 실태조사 추진 및 경관급식 장애인 영양지원 사업 필요성 검토 필요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숫자 확대 및 의료 기능 확보 필요

○ 정부는 2025년 신규예산으로 장애인전담창구를 마련할 계획을 세웠으나, 장애인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대학병원에 대한 전담창구 마련 필요

○ 장애인 건강검진 당연지정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 충족 필요

○ 장애친화산부인과 확대 필요

○ 장애인 건강검진 이용률 및 구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필요

○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인부담 완화, 편의시설 확충, 서비스 유형 개선 등 활성화 필요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치료기간 연장, 사업기관 확대 등 개선 필요

○ 대전·강원권(춘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비 지원 필요

○ 전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 지원 필요

○ 국립재활원 장애인 진료 공백 정상화 방안 마련 필요

보건의료정책관

《 의정갈등 장기화 관련 》

○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는 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 등이 사태의 해결을 막고 있으며,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대통령 사과와 장·차관의 사퇴 필요

○ 의대증원 확대 추진으로 인해 공공·지역의료 의사수 부족 및 대형병원 인력 부족 등 의료체계의 혼선을 초래하는 문제의 심각성 인정 필요

○ 응급실 뺑뺑이 심화 등으로 국민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을 정부에서 인정하고, 피해 규모 파악 및 보상 방안 검토 필요

○ 대다수 국립대병원의 진료·입원·수술 대기일수가 길어진 것으로 나타난바, 암 등 중증질환자의 치료 연기로 인한 초과사망 등 환자 피해 현황 조사 필요

○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하여 병원 경영난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선지급 추가 지원 및 상환 유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 방안 등 검토 필요

○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는 의료계, 특히 전공의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책 입안시 전공의와의 대화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

○ 공보의 대학병원 장기파견으로 인해 지역의료 공백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바, 공보의 차출 및 재배치 기준의 합리성 및 장기파견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

○ 의대증원은 의료전달체계, 수련환경개선,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완화 등 다양한 의료개혁과제의 하나로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며, 과거부터 지속된 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하여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시스템 개선 필요

○ 여야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및 운영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 여야의정 협의체에 전공의 단체, 의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전공의 미복귀 관련

- 전공의가 '25년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 대비책에 대한 질의
- 상급년차 전공의의 '사직 후 1년 내 동일 과목 응시 제한' 규정 특례 마련을 통해 완화하여 '25.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전공의 7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
- 의대생의 국시 응시율 및 전공의 복귀율이 저조한 상황인바, 전문의 양성체계 붕괴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도권·비필수과목 의료기관에 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의대 정원 조정 관련

- 25년도 정원 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25학년도 정원조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검토 필요

- 의사인력 수급추계·조정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2,000명 증원이 아니라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 의사인력 수급추계 관련

-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의사 인력추계의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두려는 정부 방안은 이번 증원 결정시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 형식적 운영 관례를 볼 때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의사단체를 참여시키기 위한 해결책 강구 필요

○ 교육부의 제한적 의대생 휴학 승인 방침(10.6.) 관련

- 의대 교육과정 5년 축소시 교육질 저하 우려 등에 대해 교육부에 확실한 의견개진 필요

- 2025년 신입생에게 수강신청 우선권 부여는 차별 우려가 있고, 동맹휴학 의사 없음에 대한 확인방안 부재 등 교육부 대책에 대한 문제 제기

○ 의대생 수업거부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신청 규모는 예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는바, 의대생 수업거부 사태 및 장학금의 합리적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할 필요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학교육분야의 평가인증기관이므로 독립성·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

○ 의과대학 군휴학자 증가로 인한 군의관 수급차질이 우려되고, 현역 대비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이 길어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공

보의·군의관 수급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의료현장 공백으로 촉발된 업무 과부하로 인하여 연구개발의 퇴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필수의료 및 의료수급 불균형 대책 》

○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분야에 우수한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

○ '26년도 전남도에 의대정원 배정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조속히 정원 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할 필요

○ 의대증원의 대안으로서 의료일원화에 기반한 의사-한의사 학제 통합 및 지역의사제와의 연계 등을 검토할 필요

○ 전공의 이탈 등의 영향으로 장기입원 환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 입원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성 사례 관리 등 종합적 관리 대책 마련 필요

○ 공공임상교수 채용 시 지원자가 저조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바. 유사 제도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의 성공 여부도 불확실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의무복무를 전제로 한 지역의사제 도입 검토 필요

○ 특정 지역·특정 진료과목의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개원의 총량제 도입 검토 필요

○ 고질적인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인력 충원이 필요한바,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 등의 개선, 고유목적사업금 활용 등 방안 검토 필요

○ 대형병원들이 수도권 지역에 경쟁적으로 분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의료 인

프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대책 마련 필요

○ 상급종합병원이 부재한 시·도(경북, 제주, 세종)를 고려하여 진료권역이 합리적으로 재설정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

○ 비대면진료의 제도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시 서울 소재 의료기관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한바,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 마련 필요

○ 비대면진료를 통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이 제한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비만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질병인지 검토하여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을 제한할 필요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상당기간 진행되어 온바, 시범사업 평가 및 법제화에 대한 입장,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활동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밝힐 필요

○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 제한에 따라 시범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택수령 범위 확대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서 해당 업체 대표가 설립한 의약품 유통업체 이용을 유인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가이드라인 개정, 가이드라인의 반복적 위반 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배제 등 조치 방안 마련 필요

○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마약류 의약품 및 비급여 진료건에 대한 처방의 감시·단속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마약류 의약품 처방시 DUR 의무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의료인력·간호정책》

○ 2021년 보건의료노조와의 노정합의를 통하여 보건의료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을 합의하였으나 이행이 미진한 것으로 보이는바, 직종별 적정인력기준의 신속한 마련 필요

○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등 의료인·간호조무사·이용사·미용사·위생사 등 중앙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중앙회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외국 의사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므로 추진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 또는 철저한 역량 검증 및 적응 절차 마련 필요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정부가 수행하도록 규정된 업무들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지 못한바, 미진한 업무 추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대리수술·유령수술로 의심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바, 대리수술, 유령수술 및 수술보조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조치할 필요

○ 감사원이 2023년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방안 미수립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필요한 경우 의료면허 취소 등을 포함한 면허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가 아닌 의료관련 법령 위반 등 중대범죄로 한정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전문의들의 세부 전공으로 인해 오히려 인력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신생아 중환자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소아 세부전문의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바, 소아 세부전문의 배치 현황을 파악하고 양성·관리 및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규제 완화(중개 플랫폼 실증특례)는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의료기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과 상반되므로, 중개 플랫폼 사업은 중지할 필요

○ 체외순환사는 심장 수술 등 필수의료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제도화되어 있지 아니한바, 제도화 방안 검토 필요

○ 진료지원간호사가 실시하는 진료지원행위에 대한 법적보호를 위하여 시범사업 실태조사 및 간호법 하위법령 조속 수립 필요

○ 진료공백으로 인한 간호사 취업난 및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간호사 수요 증대를 고려할 때 신규간호사의 신속한 채용・교육 독려 필요

○ 간호대학 교육역량 강화, 임상훈련체계 마련 및 임상간호교수제 등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내실화 및 효과적 이행을 통한 간호인력 전문성 제고 필요

○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의 '25년 정부안이 전년대비 감액된 상황인바, 예산 확대 및 신규간호사 임상교육·훈련과정 제도화에 대한 세부계획 마련 필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에 대한 질의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상한 제한 폐지 등 전면 확대 필요성과 공공병원 역할 강화 필요

○ 간호사 등 병원노동자 주4일제 도입 및 보건복지부의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필요

○ 간호사 등 병원노동자의 이직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시 중증장애인은 기피되는 현실인바, 중증환자 이용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간호인력 산정배수(4.8)의 기준이 되는 근무일수(228일)는 근무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모성권 보호 등을 위하여 배치기준 개선 필요

○ 간호법 제정 시 부대의견인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 필요

○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불법 운영 실태 점검 등 철저한 관리를 위해 민간 자원 활용 방안 검토 필요

○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 대상 대체인력지원사업 추진 필요

○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적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해 간호조무사의 직무교육 활성화 및 처우개선비 지급 등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유입 대책 마련 필요

○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검토 필요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25년 정부안이 전년대비 감액된 상황으로 사업 운영의 차질이 예상되는바, 사업의 차질없는 실시를 위한 모니터링·관리 및 지원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서 중증환자 및 취약계층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바, 취약계층에 대한 1대1 간병지원 방안 등 소외 계층이 없도

록 시범사업을 설계할 것

○ 의료기관 환자 치료 과정에서의 임상영양관리가 질병 회복 및 사망률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환자 대상의 전문적 임상영양서비스 수행을 위하여 「의료법」상 임상영양사 배치기준 마련 필요

《 보건의료정책 일반 》

○ 의료기관 진료 예약 어플(똑닥)에서 환자의 의료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고 있는바, 국민 의료정보의 수집·관리에 대한 조사·감독 및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 필요

○ 똑닥 등 특정 진료예약앱 미이용시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고, 서비스 유료화로 사실상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진료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바 진료거부 등 진료권 훼손 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리·감독 및 법적 조치 필요

○ 메디스태프의 복귀 전공의·교수 등에 대한 조롱 및 모욕 등 명예훼손 게시글 및 보안패치 프로그램 상 수사방해, 증거인멸 등의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의료기관이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실 CCTV 촬영에 관해 고지할 의무가 없어 수술실 CCTV 설치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복지지원사업 민간단체가 기부금을 받고 특정 협약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능 여부를 기재한 의료광고는 과도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 등 불법의료광고 근절 방안 마련 필요

○ 자생메디바이오센터 홈페이지 문구 중 “최고”라는 표현은 의료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표기이므로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치 필요

○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등 불법행위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불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한 기능 강화 및 인력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산과 기피의 원인으로 소송 위험이 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바, 잦은 소송 위험에서 산과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절차부터 환자 측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환자대변인 시범사업에 대하여 현재 조정제도의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실시할 필요

○ 신의료기술 관련 시장진입 절차 개선 이후 새로운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사용 시 모니터링, 환자 동의 의무화 등 안전성 대책 마련 필요

○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된 의료기술 중 다수가 여전히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바, 국민 의료 안전 보장을 위해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가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품질관리검사 중 일반 검사 관리와 영상판독 업무를 분리하는 등의 제도개선 필요

○ 현재 음압격리병실 내 소독이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향후 대규모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음압격리병실 내 무인 자동화 소독시설을 설치하도록 고시 개정 등 규정 보완 필요

○ 내시경 소독 관련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최근 5년간 2.1%가 부적정 결과를 받은바, 내시경 소독제 재사용 관련 지침 정비 및 내시경 소독 실태에 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대여 의료기구 재처리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는 병원이 상당수 존재하고 감염환자 이력관리체계가 미비하므로, 수술환자 감염 예방을 위한 대여 의료기구 감염관리 규정 제도화 필요

○ 농어촌 지역의 신규 의료사협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립인가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 의료기관 운영 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의료기관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육 부담완화 필요

○ 요양병원 중 97%가 인증마크를 획득하는 등 인증마크 남발로 실효성이 우려되므로, 인증기준 강화 및 사후관리 도입 필요

○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필수의료인력 충원 등 실질적으로 의료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 필요

○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에서 산재보험 관련 근로자 질병관리 및 건강보험 재정절약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환경의학과의 역할이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이는바, 상급종합평원 평가기준 중 직업환경의학과 기능에 대한 평가 강화 필요

○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반복적으로 환자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바,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회 구성이 의료계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현행 법률에서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환자의 투병 및 사회복귀 등 권리를 보장하고 수요자인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환자기본법」 제정 필요

○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사항이 4가지 유형으로 한정되어 있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무보고 대상·유형 등 확대방안 검토 필요

○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예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환자안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 필요

○ 최근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의사 처방 시 약국의 약 재고 현황 확인, 도매상 단계에서의 약 품절 문제 및 약국별 균등 공급 등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 필요

○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연례적으로 품절현상을 겪고 있는 감기약에 대해 성분명처방제 시범도입을 검토하며, DUR 시스템 활용 및 사후 통보절차 간소화 등 검토 필요

○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품목이 2012년 이후 변함이 없고 일부 품목의 생산 중단 사태도 발생한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판매 등록 요건 미충족 지역 등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처방이 필요한 인체용의약품과 동일성분인 동물용의약품의 인체사용 등 오남용 사례 발생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농식품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 필요

○ 의료대란 이후 장기처방이 급증하였는바, 부작용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의료대란의 여파로 대학병원에 대한 의료장비 및 약품 공급 업체의 납품 감소 및 대금 결제 지연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현황 확인 및 상생 방안 마련 필요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필요

○ 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오남용 의심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바, 식약처·지자체 및 의료현장과 협력하여 종합적 점검 필요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위원 위촉 시 양대 노총을 배제한 근거를 밝히고 향후 개선 계획 제출 필요

공공보건정책관

《 질병 정책(심뇌혈관질환) 》

○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이상지질혈증의 관리 강화 필요

○ 심부전 입원율 및 사망률 감소 대책 마련 필요

《 질병 정책(암) 》

○ 국가암검진 자궁경부암검사에 인유두종바이러스(HPV) DNA 검사를 포함하여, 자궁경부암 예방 및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 필요

○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 확대 및 비흡연 폐암환자에 대한 국가통계 마련 필요

○ 자궁체부암, 난소암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인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국립암센터 방사선 피폭 관련하여 의료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 국립암센터 신규환자 진료 축소·제한조치 해제 위한 지원 필요

○ 지방 거주 암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하여 지역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필요

《 질병 정책(기타) 》

○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증희귀질환 의료안전망기금 등 별도재원 마련 필요

○ 전체 장애인을 감염병 고위험군으로 인정할 필요

○ 기후재난 발생 시 재난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지원 관련 연구사업 등 추진 필요

○ 만성코로나19 증후군 환자의 후유증 최소화하도록 정부차원 관리 필요

○ 의료대란 관련 사회적 약자인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한센인 피해자 노후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금 증액 필요

○ 원폭 피해자 추모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 공공보건의료 》

○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기능이 약화된 국립대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장기 복무할 의료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 필요

○ 의대생 지원신청이 저조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지원대상에 한의대생 포함 필요

○ 공중보건장학제도를 공공의대와 연계하여 실효성 제고할 필요

○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사립대병원에 대한 지원 필요

○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 관련 지원방안 마련 및 평가체계 운영을 위한 별도 조직 신설 필요

○ 고위험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분만 인프라 확충 필요

○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지방의료원 》

○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부족한 의사 인력 및 의료장비 등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 필요

《 응급의료체계 》

○ 응급의료정상화를 위해 응급의료지도의사에 대한 처우개선방안 검토 필요

○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 등에서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 가능하도록 기준 개선 필요

○ 중앙응급의료센터 업무에 응급의료기관 간의 업무 조정 기능과 정보수집 권한 명시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원 지정 시 수용 거부할 수 없도록 방안 마련할 필요

○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응급실 구분시 쉬운 명칭을 사용하고, 경증환자를 위한 응급실 지정·운영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응급환자를 수용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할 필요

○ 응급실 폭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경찰청 등과 협력시스템 구축, 정기적 의료환경 안전실태 조사 실시, 보안인력 채용 등 방안 마련 필요

○ 응급실 이송 심정지환자에 대한 저체온치료 의무시행 추진 방안 검토 필요

○ 경증환자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 인상으로 경제적 약자의 응급실 문턱을 높일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중환자 사망을 줄이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수요를 파악하고, 인력 충원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피해자 파악 및 보상 방안 강구 필요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응급의료기관평가기준 완화 적용 및 지원 확대 필요

○ 의료 취약지역을 위한 ‘응급영상판독 지원사업’의 예산 확보 필요

○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기관화 논의보다 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 현행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선행 필요

○ 응급의료비미수급 대지급사업 성과지표 및 가족상환의무자 관련 규정 현

실화하고, 징수 업무 기관 이관 검토 필요

○ 노후화된 응급의료정보망 시스템 장비 교체 방안 마련 필요

○ 권역외상센터의 전원 증가와 관련하여 기능 점검 필요

《 응급이송 》

○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매뉴얼」에 닥터헬기 출동 요청자 기준을 반영하는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할 수 있도록 응급헬기 출동기준 개선 필요

○ 전국에 8개 닥터헬기만 배치되어 있어 경기북부·춘천, 강원영동,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북 등 취약지에 닥터헬기 확대 배치할 필요

○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현실화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구급차 운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GPS 기록의무화 도입, 실무매뉴얼 보강 등 제도적 보완책 강구할 필요

○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응급구조사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조치 필요

○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 필요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확대 및 관리 내실화 필요

《 생명윤리 및 연명의료 》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하고, 정책 자문, 권고 등의 기능 수행 필요성과 관련 법제화 검토 필요

○ 의과대학별 시신 기증 편차 해소를 위하여 타 대학 제공 관련 유족 동의, 시체 해부 참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필요

○ 시신 기증 과정에 대한 윤리적·법적 기준을 확립하고, 표준지침 및 통합관리시스템 마련할 필요

○ 연명의료중단 이행시기 확대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필요

○ 생애말기돌봄 관련 제도 개선, 양질의 호스피스·연명의료 환경 조성, 조력존엄사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등을 통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할 필요

《 혈액관리 》

○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 등 성희롱 관련 피해자 보호조치 및 대응체계 개선 등 조치 필요

○ 혈액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하여 헌혈추진협의회 적극 운영 및 헌혈예약 콜센터·픽업서비스 활성화 등 수급안정화 대책 마련 필요

○ 노후화된 혈액원 건물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필요

○ 대한적십자사 헌혈의 집 신설 등 인프라 확대에 따른 충분한 인력 증원 필요

○ 한마음혈액원 혈액 대량 폐기 관련 의사결정 과정 문제점 조사 및 재발방지책 마련 필요

《 장기·인체조직 이식 》

○ 공공조직은행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기관장 채용절차 진

행 필요

○ 미성년자 생체이식의 경우 이식대상자의 뇌사 및 생존자 대기등록이 저조한 상황에 대한 검토 필요

한의약정책관

○ 첩약 건강보험 상병에 관련해서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제외하고 65세 요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을 할 필요

○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과정에서 이해상충 배제 등 투명성 강화에 대한 질의

○ 첩약 시범사업 관련하여 한방병원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에 시달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 필요에 대한 질의

○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과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의 약침액 생산량, 거래내역 등 실태 확인 자료 제출 필요

○ 다이어트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황조사 및 성분 공개·고지 의무 제도 개선 관련 국민인식조사 실시 필요성 검토

○ 한의원에서 조제되는 약침이 의약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조의약품과 같이 안전성·유효성 검증 필요

○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와 정부지원 제도화 계획에 대한 질의

○ 난임 시술의 성공률 상승을 위한 한의과·의과 협진 관리방안과 이를 위한 국공립의료기관의 역할 수행 등에 관한 검토사항 및 계획에 대한 질의

○ 국공립의료기관에 한의과 설치에 대한 구체적 검토 및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건강보험정책국

《 건강보험 재정 》

○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따른 의료대란 수습 과정 및 비상진료 등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의 추가적으로 지출된 문제가 있는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비상진료에 투입된 건보 재정에 대해서는 추후 국고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에 양대노총 배제된 것에 대하여 질의

○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 법정 기준이 매년 미준수되고 있으나 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고지원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건강보험재정이 국고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나 국고지원금을 제외하면 적자인 상황이므로 이를 진정한 흑자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건보재정의 경우에도 매년 5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망치를 매년 보정을 하면서 재정전망을 실시할 필요

○ 건강보험의 세대간 형평성 및 청년세대의 기여대비 충분한 혜택 부여의

문제를 의제화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전략을 검토할 필요

○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 과다 의료이용 관리방안 마련하고 절감된 재정을 중증 진료체계에 투입하도록 수가체계 및 건보재정 개혁 필요

○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선지급 추가 지원 및 상환 유예 등 정부 지원책 검토 필요

○ 출산율 감소, 의료 개혁의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가입자 간의 공평한 부과 문제에 관하여 중장기적 재정전망을 수립하여 검토할 필요

○ 건강보험의 추가적인 지출 확대 및 재정수지 악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가체계 및 건보재정 개혁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체계 강화 필요

○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예상수입에서 실제수입으로 변경하는 등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확보하고 건보 재정의 합리적 지출을 위하여 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급여모델 도입이 필요하며 적응증별 약가제도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필요

《 건강보험제도 운영 》

○ 부산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에 대한 검토 필요

○ 10~20대 이하 만성질환자의 다제약물 복용자가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종합대책 마련 필요

○ 의료쇼핑 등 의료 과다이용자와 보험료를 내고 요양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필요

○ 자동차보험 약침 관련 인증 원외탕전실만 허용하게 된 것에 대해 심평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필요

○ 건강보험 사업장 보수총액신고 간소화와 관련 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점, 의무부담 대상인지 법령상으로 불명확하다는 점, 신고기간 단축에 따른 업무부담이 발생한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단서 및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한 개선 계획이 있는지 질의

○ 국민건강보험정보의 개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2023년 12월 건보공단의 항운노조 특수사업장 폐지 통보의 이유 등에 대해 질의

○ 금융당국의 '보험개혁 2차회의'에서 논의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정보공개 절차 합리화 관련 보험개발원의 건강보험 상병통계 빅데이터 요구절차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현행 절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

○ 행위별수가제 등을 도입하여 필수의료 저수가를 개선하고 OECD 최저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강화가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공공정책수가 선정 기준 및 공공정책수가운영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질의

○ 행위별 수가제 및 대안적 지불제도 등 지불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한 질의

○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건보재정 탕진’, ‘의사 퍼주기’,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으로 보는 시각 및 보장성 강화 지속 필요성에 대한 질의

○ 임신중단 교육·상담 수가에 대한 효과 분석 필요

○ 신생아 선별검사에 안저검사 등 눈 종합 검사, SMA(척수성근위축증)검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진료 행위유형별 및 진료과목 간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및 왜곡된 보상체계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

○ 첨단 로봇보조수술을 통하여 의료 불평등 개선 가능성, 국민 건강성 보장 강화, 해외 주요국의 급여화 사례를 고려하여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할 필요

○ 수가 인상률 조정 및 공정한 수가보상 기전 마련을 위한 의료비용패널병원 구성 계획에 관하여 질의

○ 검체검사 위·수탁기관 간 위탁검사료 할인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재 강화 및 수탁업체가 직접 검사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약물흡착방지 수액세트를 일부 재질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 상급병원 정신의료기관 격리보호실 수가는 2배 올랐으나 비강압치료 수가 인상은 미비한데, 비강압치료와 강압치료 수가 인상의 균형을 맞추도록 개선할 필요

○ 보청기 판매 또는 보험급여 청구 시 텔레코일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용자 교육에 대해 확인할 필요

○ 공익목적 임상연구제도 개선 필요

○ 신속한 맞춤 항암치료를 위해 표적항암제와 동반진단 의료기기가 동시에 허가된 이후에는 약제의 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동반진단에 대한 신속한 수가 책정을 진행하여 의료현장 도입율을 높이도록 할 필요

○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관련, 신청대상이 제한적이고 평가대상에 따라 운영체계가 다르며 자료제출 등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요양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진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하에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제도개선 필요

○ 치과 임플란트 상한금액 조정 관련, 치료재료의 특성, 의료기기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제왕절개 수술에 대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분만에서 제왕절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정책 수립이 필요

○ 노인외래정액제 구간 재조정 검토 필요

○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 노력 등 활성화 대책 필요

○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관련 다국적 기업에 대한 수혜 위주여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질의

○ 만성질환에 대한 신약이 개발되는 경우 환급형 계약을 맺거나 대체약제의 비교 약가 산정시 최고가 인정 등 약가 우대를 적용하여 신약개발을 활성화 하고, 코리아패싱에 따른 국내 환자의 신약 접근성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중가격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

○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고시와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 급여현황을 참고할 경우 국내 개발신약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퇴장방지의약품 생산 장려를 위해 기존 등재 퇴장방지의약품도 최고가와 동일하게 인상하여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신약의 혁신가치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신속한 고시 개정 필요

○ 선진국에 비해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바 제네릭 약가 현실화 추진 필요

○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를 통해 대규모 약가인하 시행을 검토중이나, 외국의 약가는 국가병 산업특성 및 정책 방향성 등이 반영된 결과로 국내 약가와 직접 비교는 불합리하며, 추가적인 약가 인하 시 수급 불안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에 대해 질의

○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비용효과성 평가결과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신약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

○ 만성질환 치료제의 신약 개발 활성화 및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사회적 부담이 큰 질환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ICER 임계값 등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며,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등의 방법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항생제 신약 도입에 대한 정부 계획 및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경제성 평가 생략 확대에 대한 대책 필요

○ 콜린 제제에 대한 무분별한 삭감으로 민원과 추가 분재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필요

○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허가-평가-협상 연계사업의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영 절차 효율화 및 신속등재를 위한 운영 절차 점검 필요

○ 약제 및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의 경우 신청대상이 제한적으로 평가대상에 따라 운영체계 등이 다르며, 자료제출 등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를 통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수급불안정이 반복되고 대체 가능한 약제가 있는 경우 급여를 정지시키거나 처방코드를 막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질의

○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의무화 및 위반시 제재 도입 필요

《 진료비 부담 경감 》

○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 진단기 등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의료기기 관련 한의사 및 한의의료기관의 활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 필요

○ 인공임신중절 건강보험 급여 적용 현황 감소에 대한 질의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관련 방문횟수 개선, 수가 개선, 가산항목 신설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는 분만정책수가로 의료현장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바 차등지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희귀질환자 유전상담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행위분류 책정 및 제도적 지원 필요

○ 희귀중증질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만성신장병환자 복막투석 활성화를 위하여 복막투석 인센티브 활성화, 복막투석 센터 활성화 등 적극적인 활성화 시책을 마련할 필요

○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니지만 성인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할 필요

○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체투여 급여화를 신속히 시행할 필요

○ 연속혈당측정기 등 일부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행위에 준하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환자 본인이 휴대하여 사용하는 바 현행 요양비 지급 적정성에 대한 개선 검토 필요

○ 19세 이상 성인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의료기기 및 소모성재료 등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패치형 인슐린 펌프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필요

○ 당원병 환자에게도 당뇨병 환자의 혈당 검사를 위해 지원하는 소모성 재료 및 당뇨관리기기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

○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치과진료 시 전신마취가 필수적이나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큰 편이므로, 비급여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에 대한 급여 적용 검토 필요

○ 수포성 박리증 관련 특수반창고나 붕대고정장치 등 급여화되지 않은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 확대 검토 필요

○ 동일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선청성/후천성으로 구분되어 일부만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된 임상적 근거 및 원인, 현재 검토 중인 질환 및 세부기준에 대해 질의

○ 입원환자 식대 수가를 현실화하고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 산정특례 적용 필요

○ 영유아 건강검진(소아과 발달선별검사) 시 동시 진료하는 경우 진찰료 50% 산정 관련 개선 필요

○ 비만 치료의 요양급여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발달지연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

○ 중증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 기간 연장 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등 신기술 보조기기의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 필요

○ 인공와우의 경우 현재 평생 1회만 급여 적용 가능한 상황인데,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ALK 양성비소세포폐암 치료제 급여확대를 통해 치료비 부담 완화 필요

○ 이식편대숙주병을 포함한 혈액암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혈액암 치료제에 대한 급여화 검토 필요

○ 만성콩팥병 환자의 치료제 선택권 보장을 위해 기존 당뇨병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필요

○ 소아 대상 희귀질환 치료제·항암제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가능 약제’ 조건을 성인까지 확대하는 검토 필요

○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인 베스레미주의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필요

○ 비대성 심근병증 질환 치료제인 신약 캄지오스에 대한 급여화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필요

○ 항생제 신약 도입에 대한 정부 계획 및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경제성 평가 생략 확대에 대한 대책 필요

○ 담도암, 식도암, 말초 T세포 림프종 등 소외암에 대한 신약 급여화 등 지원 강화방안 마련 필요

○ 환자의 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암 치료제(담도암·위암·폐암·조기 유방암·부인암 등)의 급여화 검토 필요

○ 당뇨병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 위험분담제 적용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 당뇨병치료제 관련 처방의 용이성, 환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하여 계열별 병용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간질성 폐질환 중 폐섬유화증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필요

○ 박출률 보존 심부전 치료제 급여화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

○ 소외암 환자의 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면역항암제 등 다적응증 약제에 대한 급여 제도 개선 필요

○ 포상연부육종 관련 제약사 환급 제한 기간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치료

제인 키르루다, 인라이타 조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필요

○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의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 필요

《 자격부과 및 징수 》

○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대비 받는 급여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차이가 꾸준이 벌어지고 있는 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을 원활하게 조달해 함께 사용하며, 위험 분산을 통해 사회연대를 이룰 수 있도록 공정한 부과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일정 소득 기준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외국인 일용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국내 체류 중국인에 대한 건보 수급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중국 체류 한국인의 의료보험 보장 현황을 조사한 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군필자인 재외국민의 경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요건 적용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바로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필요

○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관리료 환수와 관련하여 현장상황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환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향후 다른 팬데믹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처리방안 필요

《 요양기관 》

○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시 갑자기 큰 금액을 삭감함으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한 행정 처리 필요

○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 등 평가체계의 전반적인 개선계획 질의

《 상병수당 》

○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에 대비하여 최적의 모형 설정 및 정책효과 분석·검증을 위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하도록 할 필요

○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경우 제한적인 대상자 범위 및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바, 시범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필요

○ 상병수당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대한 복지부 보도자료의 오류를 시정하고 ILO 협약을 포함하여 상병수당 사업 전반 점검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일정이 기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되었는데, 정부가 의지를 갖고 도입시기를 다시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상병수당 급여 지급수준을 최저임금 이상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

필수의료지원관

○ 비급여 권장가격 또는 비급여 표준 수가 등 비급여 진료의 가격·범위에 대한 관리장치 및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의료쇼핑 및 도덕적 해이 발생과 같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제주도에서 현재 제주형 건강 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차의료 강화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공익참여형 민간병원의 제도화 방안 마련 필요

○ 가칭 지역우수병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프라 및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민간중소병원 노사 공동제언 검토 필요

○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기피 및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개원쏠림 현상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운영 관련 배후기관 지원강화 및 소아전문관리료 산정 관련 검토 필요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하여 민간보험사가 이를 환수해 가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비만치료제 등 국민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비급여 약품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강화 필요

○ 비급여 보고 대상기간 확대, 비급여 표준코드 명칭 사용 검토, 가격정보 제공 방식 다양화 등 비급여 보고·공개제도 개선 필요

○ 의료기술재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낮은 비급여 기술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를 검토할 필요

건강정책국

《 건강정책 일반 》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소득분위에 따른 건강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삼아야 하며, 건강불평등 완화 또는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부 계획 수립 필요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내 전담 영양사 배치 확대 필요

○ '25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전 국민이 동등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 확보 필요

○ 의사배출 급감, 일반병 입대 증가, 공보의 및 군의관 입대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대책 필요

○ 공보의 처우개선과 복무기간 단축 등 근무조건 개선에 대해 국방부 등과 논의 필요

○ 섬 지역 병원선이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 필요

○ 진료권에 기반하여 공보의 배치기준을 재검토할 필요

○ 2025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군의관이나 공보의 확보 검토 필요

○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절차 개선 필요

○ 복지부와 질병청의 비만 판정 BMI(체질량지수=몸무게(kg)/키의 제곱(m^2)) 기준을 통일할 방안 마련 필요

○ 국가 차원에서 비만 인식 개선, 교육·상담, 행동치료 등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및 부처 간 비만 기준 통일 등 논의 필요

○ 영양사 보수교육 매년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필요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었던 제1차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 이후 2년이 지난 시점까지 제2차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지 않은 바,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

○ 영양실조 방지를 위해 연령별·성별·소득분위별 종합대책 마련 필요

○ 소아·청소년·청년 등 다양한 당뇨병 유형 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나의 건강기록' 앱에서의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 유출 및 오용 방지, 개인정보 보호방안 마련 필요

《 만성질환 관리 》

○ 만성질환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 운동실천율, 건강검진율을 제고하는 등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를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할 필요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에 따른 본사업 전환 적절성 재검토 및 향후 주치의제 사업 중심으로 모형 개선 필요

○ 성과 인센티브 마련 등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모형을 개선하고, 질

병청의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과의 포괄적 연계 방안 검토 필요

○ 중증 호산구성 천식에 대한 질병코드 신설 필요

○ 만성폐쇄성폐질환 대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 필요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활성화 필요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고혈압, 당뇨와 함께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관리 필요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에 만성콩팥병 추가 필요

《 공중위생 》

○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숙박업소의 적법성 검토 의무 부과 및 미신고 숙박업 중개 시 처벌 근거를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예정인바, 이에 대한 전향적 검토 필요

○ 공유미용실 추진 관련 미용계 우려 해소방안 마련 필요

《 문신 제도화 》

○ 비의료인 문신 시술이 불법인 상황으로 인해 시술자 피해 및 이용자 안전의 문제 발생하고 있으며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할 필요

○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문신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

《 건강검진 》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출장검진 대상 확대 필요

○ 72세 여성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에 골다공증 검사 추가 도입 필요

○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 도입 필요

○ 영유아 건강검진과 진료 동시 진행 시 건강보험 50% 적용 문제 검토 필요

○ 저인산효소증 조기 발견을 위한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개선 필요

○ 폐결핵 검사 등 비효율적 검진체계 개선 필요

○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국가건강검진제도 통합 필요

《 음주폐해예방사업》

○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표기를 통한 경각심 제고 필요

○ 주류·편의점 업체들의 불법 주류광고가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바, 주류광고 규제 강화 필요

○ 청소년 보호를 위해 OTT, 유튜브 등 온라인 음주 콘텐츠에 대한 규제 마련 필요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내 음주폐해예방팀을 센터로 격상 필요

○ 주류 판매용 용기(술병)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 개정 필요

《 금연정책 》

○ 가향담배 규제 관련 실질적 방안 마련 필요

○ 국회에서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법안 추진 시 동의 필요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을 고려해 담배사업법 상 담배 정의 확대 필요

○ 전자담배기기 등에도 흡연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필요

○ 흡연행태가 연초 외에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으로 다양해진 만큼 금연지원사업도 변화할 필요

《 구강건강 》

○ 융합성 치과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지원 및 제도 마련 필요

○ 장애인 치주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 보장 필요

《 공유미용실 관련 》

○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공유미용실 허용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초대형 공유미용실 개설로 주변 영세 미용실이 어려움에 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령의 재검토 필요

《 기타 》

○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 단체 현황, 단체별 의무교육 실시 현황, 단체 및 교육별 의무교육비 금액 및 교육비 책정 근거, 의무교육으로 발생한 단체 수입 지출 관련 규정 및 지출 가능 범위, 의무교육비를 단체의 임대료 및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단체 입장에 대한 검토 필요

정신건강정책관

《 정신건강정책 일반 》

○ 보건복지부-보건의료노조 노정합의 부속합의서('21.9.) 내용 중 '정신건강 정책에 노동계 및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거버넌스 마련'과 관련, 정신건강 민관협력 거버넌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참여에 대해 질의

○ 정신질환자 절차조력 관련 법안(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된 만큼 전국 단위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함

《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선 》

○ 입원 신청권자 확대, 독립된 준사법기구(정신건강심판원) 또는 법원에 의한 입원 결정, 환자의 청문 기회 보장 등 정신질환 입원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

○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선과정에서 국회, 당사자 및 가족, 의료계, 법조계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필요

○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에 대해 질의

○ 입원적합성 심사 100% 대면조사로 전환, 보호·동의입원을 행정입원으로 통합, 정신질환자 권익옹호체계 구축 필요

《 정신의료기관 치료환경 개선 》

○ 정신의료기관 보호사 직종에 대한 자격과 업무 규정, 교육 및 훈련 등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입장

○ 급성기 병동 및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인력 기준 강화 추진 경과 제출

○ 정신응급 대응 인프라 확충 필요

○ 대학병원·종합병원 병상 부족, 지역사회 환자 관리 서비스 미비 등 정신 의료체계 개선 필요

○ 광주 천주의성요한병원 현장방문 결과, 비강박치료와 관련하여 수가 인정, 매뉴얼 개발·교육 요청이 있었음

○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관련 정신장애인 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격리강박 실태조사에 당사자를 포함하고, 구체적인 격리·강박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

○ 정신의료기관 인증 경우에만 중간 현장조사가 없으며 평가 및 인증 사후관리 강화와 평가 주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

○ 격리·강박 시행 관련 전문의 대면진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화로 격리·강박 지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의 격리 강박 수행은 적절하지 않음

《 동료지원쉼터 》

○ 일시적 정신과적 위기상황시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공간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동료지원쉼터의 안정적인 인력 고용 등을 위한 개소당 단가 확대 필요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한 자립지원이 신설됨에 따라, 정부 주도의 동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정신재활시설》

○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99개로 지역별 편차가 큰바, 만성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재활과 생활을 돕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 심리상담 신청과 초기상담을 온라인 또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지난해 서비스 대상자 규모 추계 산출근거와 다른 서비스 지원대상, 제공인력 교육 부실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이탈 가속화 우려

○ 서비스 제공기관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비대면 상담 도입 등 지역별 편차 해소방안 마련 필요

○ 10대와 20대 여성 우울증 환자 증가 등 마음건강 문제가 질환으로 심화되기 전 조기개입 및 예방이 중요하므로, 정신건강 위험군 참여율 높일 필요

○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증 및 법적 근거 부재, 지원대상 선별 문제 및 서비스 유형 쏠림 현상 우려

○ 지원대상 및 본인부담금이 매우 다양하므로,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등 각 대상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상담인력 자격 검증 및 적정 인원 확보, 제공기관의 지역 간 불균형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견해

○ 서비스 제공기관 장의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제외되어 있는데,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개선 계획

○ 상담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법제화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 이 사업은 본래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었는데 전국민으로 확대된 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질의

《 이태원참사 심리지원 》

○ 이태원참사 통합심리지원단 체계적·지속적·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시스템 구축 및 대책 마련 필요

《 안산마음건강센터 》

○ 안산마음건강센터 관련 경기도와 복지부간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운영 필요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원체계 》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증진 및 인력수급 원활화 필요

《 마약류 등 중독자 치료 지원 및 기반 구축 》

○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이유와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원 규모 질의 및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별도의 지원 필요

○ 고령화된 마약 중독 급증에 대한 예방·치료 대책과 치료보호기관 활성화 방안 필요

○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관련 사회적 합의 노력과 문체부 등 부처 간 이견 조율 상황 및 복지부의 입장 정리 필요

○ 도박 중독 청소년을 위한 상담·치료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도박방지 교육 등 전 부처 차원의 정책 마련 지원 필요

○ 젊은 층 도박 중독 환자 증가에 대한 범정부 대응 관련 보건복지부의 도박 특화 중독관리사업 강화 필요

《 자살예방정책 일반 》

○ 자살을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하고,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를 국으로 격상시켜 보건복지부 내 새로운 실 신설 필요

○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시 자살사고 또는 자살 시도를 동반한 중증 우울증 질병 코드를 신설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협조 필요

《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

○ 자살예방대책 중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방안 마련 필요

《 자살예방서비스 》

○ 자살사망자 수 대비 자살 유족의 심리부검 면담 시행률이 1%에 불과한바,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낮은 시행률에 대한 실태조사 등 방안 마련 필요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지역사회 연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바, 연계율을 제고하여 사후관리 강화 필요

보건산업정책국

《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 》

○ ‘통합의료지원사업(R&D)’ 연장 필요성 검토 필요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총사업비가 삭감되는 등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바, 대규모·장기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전 기획·준비 필요

○ 의사과학자 체계적 양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

○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의 수도권 집중 완화 필요

○ 돌봄 제공자 중심의 돌봄로봇 연구과제 확대 필요

○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지원 성과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보건산업 육성·지원 》

○ 국내 제약사와 외국계 제약사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체계 분리 필요

○ 제약 연구개발 투자유치와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하여 리베이트 근절 취지와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및 평가절차 개선 필요

○ 화장품산업 육성사업의 예산 불법 전용 재발 및 대기업 집중 지원 방지 유의 필요

첨단의료지원관

《 의료정보정책과 》

○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계획이 있는지에 관한 질의

○ ‘나의건강기록 앱’ 활성화 계획에 대한 질의

○ ‘나의건강기록 앱’ 데이터 보안 대책에 대한 질의

○ 보건의료데이터의 관리 책임 및 데이터 유출 또는 악용 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질의

○ ‘나의건강기록 앱’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

○ 건강보험청구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에 대한 질의

○ 의료기관이 제공한 환자 데이터가 유출 또는 오용된 경우 법적 책임관계에 대한 질의

○ 의료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한 주의 의무의 필요성 및 계획에 대한 질의

○ 다른 국가에서 환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거나 전송하는 유사 시스템 운영 여부 및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보안 및 보호 대책에 대한 질의

○ ‘나의건강기록 앱’이 GDPR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비교 검토 실시 여부 및 의료정보의 국외이전 가능성에 대비한 법적 대책 마련

에 대한 질의

○ 만성신장병 환자 복막투석 활성화 방안 관련, 현재 시범사업을 ‘복막투석 환자 수를 증가’할 수 있는 틀로 바꾸어 진행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

○ 공공의료데이터의 적극적 개방과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전향적인 논의와 적극적인 추진 필요

○ 생성형 AI 기술 활용 Voice 플러그인 제공을 위한 연구과제 제안

《 재생의료정책과 》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유전자세포치료 범위 확대 등 첨생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의

○ 유전자·세포치료센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

○ 유전자·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의 고비용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질의

○ 소아 희귀난치성 환자들을 위한 유전자·세포 치료 임상시험을 위한 국내 바이러스 벡터 기술 개발 및 CMO 인프라 확충 관련 정부 정책 및 입법 보완 필요

○ 유전자·세포 치료 분야 원천기술을 가진 대학병원 교수들이 고비용과 행정력 부족으로 인해서 임상시험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 예산 및 정책 현황에 관한 질의

○ 첨단재생의료 분야 기초연구에서 임상시험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

○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25년 사업 예산 증액 필요

의료개혁추진단

○ 지역의료 불균형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 필요

○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관련 일률적으로 병상을 줄이는 것은 지방의 의료격차 더 커질 수 있어 지역별 수요에 맞게 병상 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정 필요

○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적기이므로, 의료개혁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 등 정부의 의지 확인 필요

○ 의료개혁특위의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20조원+a의 재정투자 발표는 무책임한 행정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실손보험 개선 등 의료개혁 추진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오해에 대해 정부 정책 방향성 설명 필요

○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관련 지역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지방의료원·공공병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환자단체들과 소통을 통해 특례 조항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할 필요

○ 의료개혁 과제와 관련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 저출생, 국가소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

○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충분하고 현실적인 보상 필요

○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및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대책 마련 필요

○ 경증환자는 동네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지역완결적 의료 대책 마련 필요

○ 의료개혁특위 위원 위촉 시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새로고침노조 위원장을 위촉한 것은 대표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국민 여론 수렴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성 있는 단체의 추천인 선임 필요

2)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급여 》

○ 제왕절개 수술에 대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분만에서 제왕절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정책 수립이 필요

○ 의료쇼핑 및 도덕적 해이 발생과 같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진료인원 및 진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 필요

○ 다제약물 관리사업 관련 현재 시스템상 정확한 정보제공 및 타 의료기관과의 공유가 잘 되지 않고 있으므로, DUR과 연계하여 상담결과와 처방조정 내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다제약물 관리사업 관련 다학제 협업으로 효과가 입증된 병원모형을 먼저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할 필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기관이 40%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역별 참여비율에도 큰 편차가 있음.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통합병동 상한을 없애고 지역 간호사 지원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간병비 급여화를 검토할 필요

○ 간병비 지원사업 관련 시범운영 중인 통합조사시스템이 너무 오래걸려 병상을 오래 비워야하고 탈락률이 높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건보 부정수급 및 명의도용 적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건강보험증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사진이 없거나 임의변경이 가능하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다제약물 관리 사업을 건보 시범사업으로 수행해 왔는데 이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본사업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 및 노동자 건강권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 과다 의료이용 관리방안 마련하고 절감된 재정을 중증 진료체계에 투입하도록 수가체계 및 건보재정 개혁 필요

○ 건보 가입자의 스케일링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국민들의 인식 제고 및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위험분담제 관련, 의료정보의 비대칭 해소 및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

○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예산과 개인예산제 합산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의료공백 수습에 투입된 건보재정을 약가인하로 충당한다는 의혹에 대한 검토 필요

○ 의료이용 관련 지표 및 데이터를 진료권별로 상세하게 제공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약사의 환수협상계약 무효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 필요

○ 약제비 지출 합리화 및 건보재정 절감을 위하여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제 도입 필요

○ 한방의료 및 한방의약품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는바 한방약품비 현실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복귀 전공의의 피해구제 및 심리상담을 위하여 전공의 전담 상담창구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전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목록을 정비하고 자료를 보고하며 신규 비급여 항목이라도 먼저 신고하는 단계적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금연치료지원사업 관련 참여율·이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상담의 전문성 강화 및 금연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재설계 필요

○ 10~20대 이하 만성질환자의 다제약물 복용자가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종합대책 마련 필요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이 아닌 지역 일차의료, 공공의료 지원을 확대할 필요

○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수가인상 방안 검토 필요

○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관련, 필수의료 관련 약제 적정 약가 기준 마련 및 약가 현실화를 검토할 필요

○ 해외출국 시 의료기기 대여 요양비 환수 관련 폐지방안을 검토할 필요

《 진료비 부담 경감 》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제도 관련, 환자들의 관련 문의가 원활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중증난치질환 관련 명확한 지정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할 필요

○ 우울증 환자에 대한 스프라바도 치료, 전기경련치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기능적 장애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에 대한 급여기준액을 상향하는 등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 필요

○ 지르코니아 임플란트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 필요

○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의 급여화 필요

○ 중증 호산구성 천식의 산정특례 질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질의

○ 포상연부육종 관련 제약사 환급 제한 기간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치료제인 키르루다, 인라이타 병용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필요

《 건강검진 및 증진, 시범사업 》

○ 폐암 국가 암검진 대상자 확대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검진항목 개선 필요

○ 암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층의 수검률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건강검진 항목에 3대 실명질환인 황반변성·녹내장·당뇨병성 망막병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암검진 관련 건보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검진율의 큰 차이가 있는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검진율 제고를 위한 역할이 필요하며, 암검진 수검률과 사망률 간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

○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필수장비 확충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출장건강검진 범위를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및 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수검률을 높이고 건강검진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

○ 검진 시 흉부엑스선 촬영 결과 관련 검진결과서에 정상이어도 폐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부가설명을 기입할 필요

○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질환에 골다공증 추가 필요

○ 저인산효소증, 희귀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영유아 구강검진 및 문진표 개선 필요

○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이 감소추세에 있는바 수검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 해외 주요국의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출 비중을 확대할 필요

○ 건강바우처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

○ 노년기 질병 조기발견, 만성질환 및 근골격계 관리, 합병증 예방 등에 중

점을 둔 노인특화 건강검진 제도 도입 필요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관련 선정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관련 2026년 본 사업 시행 예정에 따른 적극적 역할 필요

○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경우 낮은 수당액으로 인한 사업실적 저조, 긴 대기기간 등의 문제가 있었는바, 시범사업 대상 범위 확대, 급여수준 인상, 대기기간 단축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요양기관 》

○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율 제고, 환수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특사경 도입 및 관련 인원 증원 등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

○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시 갑자기 큰 금액을 삭감함으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한 행정 처리 필요

○ 건강보험료 체납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환수 방안 마련 필요

○ 산소치료 의료기기에 대한 정기 점검 강화, 준요양기관에 대한 등록,허가기준 등 관리감독 강화 및 요양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감독 체계 마련 필요

○ 내시경 소독제 재사용 및 폐기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내시경 소독 실태

관리를 강화할 필요

○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관리료 환수와 관련하여 현장상황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환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향후 다른 팬데믹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처리방안 필요

○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율 저조 문제에 대한 제재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아동발달센터 개설 의료기관 관련 현지조사 추진 필요

《 자격부과 및 징수 》

○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관련 악용사례 방지를 위하여 피부양자 혜택 상한을 두고 상호주의를 도입하며 제재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 필요

○ 무허가 아킬레스건이 수입되어 환자에게 이식된 사건들과 관련하여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소송중인데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보법 개정을 통해 인체조직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근거를 마련하도록 추진할 필요

○ 지역가입자의 과도한 재산보험료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건강보험료에 대한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 전환 검토 필요

○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적발 강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 운영, 별도 조직 설치 등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일정 소득 기준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외국인 일용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공단 빅데이터와 복지데이터를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 시 해지일시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개선 필요

○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포괄적인 예금 압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국민연금 체납 징수업무 매뉴얼을 개선하고 건강보험공단 경영평가 징수율 평가에 체납액 비율을 가중치로 곱하는 경영평가 산식을 개선할 필요

○ 건강보험료 과오납 및 환급체계 개선 필요

○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및 납부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결손처분 제도 개선 필요

○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 관련 분할납부 제도 개선, 결손처분 대상 소득 및 재산 상한선을 올리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장기요양 》

○ 요양보호사 성희롱 피해자 유급휴가비 지원 사업 등 인권보호 관련 사업 실효성 제고 및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하여 인권보호매뉴얼 제작 및 교육, 장기요양기관 평가항목에 관련내용 추가, 수급자와의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시간을 하루 최소 5시간 이상 보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근속장려금 금액 인상 등을 검토할 필요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지조사 실시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신속한 수사 및 부당 청구액 환수를 위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 필요

○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질평가, 재택임종 지원 위한 제도 등 마련 필요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률 저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치매노인에 대한 실종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배회감지기 급여이용 활성화 및 신규 배회감지기 급여제품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장기요양 평가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여부를 평가결과에 반영하고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건보공단 임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관련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관행, 강압적인 조사 관행 등에 대한 개선 검토 필요

○ 치매전문교육 시 요양보호사에게 교육비를 받고 있는 것의 적절성 등에 대해 질의

《 기관운영, 재정 》

○ 의료대란 대응 과정에서의 건보재정 지출 및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 및 재정 건전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질의

○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현재 건보재정으로 지출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재정으로 지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질의

○ 비상진료 지원을 위한 적정수준의 보상을 위하여 건보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가체계 개편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보료 인상 검토 필요

○ 적립금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운용인력 자격기준 상향, 성과주의 보수체계 도입, 투자의 다각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운용기구 독립화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

○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하여 정책수가 등 수가체계 개편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의대정원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관계 추계에 대한 분석 필요

○ 건보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정부지원금을 수입으로 인식하는 현행 당기수지 계산 방식을 개선할 필요

○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본인부담금 불법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정황이 있는바 이에 대한 조사 필요

○ 검체검사료 할인 관행이 신종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건보재정 부정수급 등에 해당하여 환수조치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잉급여 기준을 조정하고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며, 조직진단을 통해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국고지원 지원시기 정례화 필요

○ 퇴직자와 재직자가 공모하여 사업을 수주하는 등 공단출신에게 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는 특혜의혹에 대한 질의

○ 임직원 성비위 범죄 관련 처분 강화를 위한 징계강화 등 제도개선방안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 마련 필요

○ 건강보험재정 횡령 관련 공단 인사규정에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할 필요

○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관련 항소심 대응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식약처의 담배 유해성 물질 지정 관련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

○ 예산 불용과다에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방지를 위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강화 및 대책마련 필요

○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민간보험사 개방에 대하여 정보제공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공익에 반하거나 제3자 이익 침해, 개인 식별 우려가 있는 정보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보완대책 마련 필요

○ 일산병원 의료손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의료공백 및 진료수준 회복시까지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필요

○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근절을 위하여 제재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고객센터를 조속히 소속기관화 하여 고객센터 상담사에 대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필요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관련 포인트 적립 방식 개선, 사용처 확대 및 한도액 상향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서울요양원 노인학대 의심사건 관련 예방대책 마련 필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이사 임명 대상 기관에 해당함에도 이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계획에 대해 질의

○ 일산병원의 적자 문제 관련, 영업수익 적자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 및 운영방식을 도출하는 등 재정분야 연구와 정책 개선을 연계할 필요

○ 건보공단은 납부대행기관으로 1개 기관만 지정하여 운영중이나 이 경우 전산시스템에 문제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질의

3) 국민연금공단

《 연금개혁 》

○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재정안정화를 위한 선제적인 국고 투입 방안 검토 필요

○ 연령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에 따른 세대 간 형평성 저해 우려 및 청년세대 대상 크레딧제도 확대 검토 필요

○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소득계층별 수급액 감소 우려 검토 필요

○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를 통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필요

○ 출산크레딧 사전 적용 및 일반회계 비용부담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돌봄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돌봄크레딧제도 도입 검토 필요

○ 연금개혁 관련 설문조사의 신뢰성·타당성 제고 위한 문항 구성 및 조사방법 마련 필요

○ 제5차 종합운영계획과 ‘연금개혁 추진계획(2024년 9월)’ 간 일관성 유지 필요

○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 등 국민연금제도 및 연금개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 필요

《 보험료·가입·급여 관리 》

○ 저소득 지역가입자 및 청년 대상 보험료 지원 확대 필요

○ 육아휴직 납부예외자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부담 완화 방안 마련 필요

○ 제3자의 행위로 장애·유족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 구상금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근로자 피해 구제 방안 마련 필요

○ 내국인-외국인 간 역차별 방지 위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제도 운영 필요

○ 1국민-1연금 위한 배우자 간 소득 분할 가입방식 도입 검토 필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성별 연금격차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독려 방안 마련 필요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를 고려한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 기준 및 급여감액률 하향 검토 필요

○ 연기노령연금 수급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가능성 사전 안내 방안 마련 필요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제도 폐지 검토 필요

○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폐지 및 공무원연금과의 형평 제고 등을 통한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중증장애인의 기대수명을 고려한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특례 마련 필요

○ 정년 및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간 격차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기초연금 급여액의 국민연금 연계감액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반환일시금 지급 관련 분할연금 수급권자 권리 보호를 위한 통지제도 및 제4차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분할방식 변경 및 최저 혼인기간 단축 등 분할연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망인에 대한 양육책임 미이행자에 대한 수급권 제한 검토 필요

○ 상속인의 급여 미청구 문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반환일시금 수급자의 연금수급권 취득 방안 검토 필요

○ 급여환수제도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기금운용 》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당사자 및 소송가액 등 재검토 필요

○ 인수 후 과도한 구조조정 또는 가맹계약 부당해지 등 반노동·비윤리적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강제동원 일본기업, 석탄채굴·발전산업, 대량살상무기산업 등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 시행 및 투자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대체투자를 포함한 모든 자산군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침 준수와 관련 정보의 공시 및 대체투자 사전실사·사후관리 강화 방안 필요

○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직 처우 개선 필요

○ 위탁운용사 선정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 기준의 적용을 강화하면서 평가요소에 반드시 포함하고, 선정위원회 회의록·녹취록 작성 등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회사 기업운영 내실화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방안 마련 필요

○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에 대한 책임 있는 투자 비중 확보 방안 검토 필요

○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및 2단계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전략 상 유연한 위험관리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기업 간 합병 등 경영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손해 발생 방지 위한 적극적

의결권 행사 등 주주활동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위탁·복지사업 》

○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청풍리조트 이용률 제고 및 고객만족도·청렴도 조사방법 개선 등을 통한 적자 문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국민연금공단 복지사업의 다변화 및 확대 방안 검토 필요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관련 서류 발급비용 지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노후준비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노인 및 발달장애인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기초연금 부정수급조사 실효성 제고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요청권 신설 방안 검토 필요

○ 노후긴급자금대부제도의 접근성 제고 등 종합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인력 확대 및 종합조사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장애 인정 범위 및 장애 재판정 시 대면조사 또는 직접진단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기관 운영 》

○ 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필요

○ 공단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 2인을 포함하여야 하는 정관 위반사항 관련 조치 방안 마련 필요

○ 국민연금 홍보활동의 특정 지역 편중 문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해외사무소 국외여비 과다집행 및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부실 문제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기금운용직의 재취업 기준 및 이해충돌 방지 조치 강화 필요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계속 준수 필요

○ 파면 또는 해임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 기준 마련 필요

○ 마을자치연금 사업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공단의 '직장 내 갑질' 근절 위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반영 및 징계양정 재검토 등 감사제도 쇄신 방안 마련 필요

○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지사 설립 필요성 검토 필요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척수성근위축증(SMA) 환자가 급여를 받으려면 18세 이전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록을 제출해야 하여 현행 법령상 환자명부 및 진료기록 보관 연한이 10년에 불과하여 관련 기록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재심사 기준이 짧게 설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한시적 승인 방안 마련, 발병나이 제한 완화, 재심사 기간 변경, 처방용량 제한 개선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전립선 암 치료제 등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토부가 인증 원외탕전실 약침이 아니어도 무균,멸균을 입증하면 수가를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심평원이 인증된 원외탕전실만 인정하겠다고 한 이유와 특혜 의혹에 대해 질의

○ 자동차 보험 약침 급여화 관련 안전성과 형평성 모두 만족하는 약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 공익목적 임상연구의 경우 승인률이 매우 높고 일부 의료기관에 집중되고 있으며, 외부 지원을 받은 연구에도 적용되고 있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적 목적 활용여부 확인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검체검사 위·수탁 기관간 할인 관행 관련 상황파악 및 실태조사 필요

○ 의약품 투여 내역 확인 서비스에 대한 참여율 확대를 위해 사전동의절차 개선 등 방안 마련 필요

○ 전문병원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충족하기 어려운 바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면제제도 개선안 및 보완책 마련 필요

○ 담도암, 식도암, 말초 T세포 림프종 등 소외암에 대한 신약 급여화 등 지원 강화방안 마련 필요

○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풀리기 문제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여 마련할 필요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 관련 상환의무자 범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 관련,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기관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지불능력이 있는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한 상환율을 높이고 제도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

○ 환자경험평가 관련 평가대상 확대, 평가방법 개선, 인지도 제고 및 결과활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한약국 제조 첩약 관련 자동차보험 첩약급여 탕전실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 개선 필요

○ 통증 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부신피질호르몬제 신경차단술 관련 부적절한 진료 후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 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심평원의 병원 평가자료에 따르면 지방소재 병원 중에도 사망률이 낮고 진료비가 저렴한 병원이 많으나 관련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병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진료비 심사 시 진료비가 낮은 병원의 삭감률이 더 높게 나타난 바, 병원별 사망률 및 진료비 정보를 공개하고 진료비 심사체계를 개편할 필요

○ 병원평가통합포털 시스템 관련, 21개 의료 질 평가지표와 결과를 공개하고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 등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 의약품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마약류 의약품 처방전 작성시 및 직접조제시 DUR 시스템을 통한 점검을 의무화 필요

○ DUR 시스템을 통한 중복점검시 사용기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우울증 환자에 대한 스프라바토 치료, 전기경련치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최근 6년간 병원이 국민에게 과다청구한 진료비가 1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는바,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하여 과다청구가 많은 병원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진료비 확인제도 홍보 강화 등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관련, 간호사 구인이 어려운 의료취약지의 현실을 반영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2009년부터 시행중인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모형을 재정비하고 본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 필요

○ 재택의료 시범사업들에 대해 환자가 쉽게 제공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기관 명단 추가 게시 등 홍보 필요

○ 의료이용 관련 지표 및 데이터를 진료권별로 상세하게 제공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의료기관의 DUR 점검 후 처방변경률과 부적절 약물사용평가와의 연계 필요

○ 희귀질환인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환자를 위하여 사전심사 요건을 없애고, 선 치료 및 후 심의 및 급여기준 미부합시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민간보험사 개방 등에 대해 신중할 필요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수가인상, 타 직역과의 다학제 팀 구성 등 참여율 제고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효과성이 입증되지않은 치매외 콜린제제 처방을 억제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해 질의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관련 의료기관간 진료비용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려운 전문용어가 나열되어 있어 이용이 쉽지 않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관련 본인부담금 비율 개선 및 만성호흡기질환 등 대상 확대 검토 필요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관련 참여의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홍보를 활성화하고 본사업 전환 등 체계적 관리 필요

○ 특수의료장비 등 관련 성능 등 품질과 연계한 수가 도입 및 품질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 약제비 지출 합리화 및 건보재정 절감을 위하여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제 도입 필요

○ 한방의료 및 한방의약품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는바 한방약품비 현실화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만성신장병환자 복막투석 활성화를 위하여 복막투석 인센티브 활성화, 복막투석 센터 활성화, 도관삽입수술 수가 현실화 등 적극적인 활성화 시책을 마련할 필요

○ 신속한 맞춤 항암치료를 위해 표적항암제와 동반진단 의료기기가 동시에 허가된 이후에는 약제의 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동반진단에 대한 신속한 수가 책정을 진행하여 의료현장 도입율을 높이도록 할 필요

○ 요양병원 노인 대상 항정신성의약품 오남용 관련 기관방문 심사, 집중 심사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에크모 치료 급여 삭감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소아 고난도 수술, 수가 세부

분류 등 수가체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가치점수 및 수가환산지수 차등 적용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

○ 선별집중심사제도 관련 불분명한 삭감 기준, 일관적이지 않은 심사기준, 무리한 자료제출요청 등의 문제가 있는 바 사전 예방적 심사의 성격에 걸맞은 선별집중심사 제도 운영 필요

○ 대리수술·유령수술 관련 사례감지 시스템 개발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태를 파악할 필요

○ 한약사 조제 한약 관련 심평원의 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심사가 반려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을 개선하고 한약국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검체검사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을 위하여 심평원이 검사료를 수탁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급성 희귀질환인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심의제를 운영할 필요

○ 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을 위해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필요

○ 심평원의 광고 및 홍보와 관련하여 공익성을 제고하고 실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홍보가 추진되도록 할 필요

○ 심평원의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데이터를 자사 의약품에 한하여 제약사에 공급하여 수급불안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관련, 신청대상이 제한적이고 평가대상에 따라 운영체계가 다르며 자료제출 등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요양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진료의 자

율권을 보장하고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하에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제도개선 필요

○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확보,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을 위해서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필요

○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관련, 유연한 인하율 설정을 통해 제도시행 효과 및 적절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필요

○ 자가골수 무릎주사의 건강보험 급여 규모와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검토 필요

○ 담도암 치료제인 임핀지에 대한 급여화 필요

○ 요양기관의 거짓·부당한 급여청구 규모 축소 방안 마련 및 요양기관의 자체점검을 통한 자율점검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중증 아토피피부염을 위한 치료제 간 교차투여에 대하여 급여 적용을 검토할 필요

○ 난임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미미한 상황인바 난임 여성 지원을 위한 경구용 유산방지제 등에 대한 급여화 방안 마련 필요

○ 행정직 및 전산직의 경우 여성 고위직 비율이 낮게 나타나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성별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인 에브리스디건조시럽의 처방 용량을 최대 64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혈우병 치료제인 헴리브라에 대해 원외처방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처방의 용이성, 환자의 선택권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당뇨 치료제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간 계열별 병용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무분별한 초고가의약품 처방은 환자 건강악화 및 건보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초고가의약품 처방행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선별등재나 급여기준에 포함되지 못하는 일부 환자의 약제비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효과 불분명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등재의 재검토 필요

○ 희귀질환, 암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지원 정책 추진 필요

○ 진료비 심사지침 개선 과정에서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적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할 필요

○ 전문심사 청구건수 증가 및 전산심사 적용 품목의 전산심사 적용률을 고려하여 전산심사 영역 확대 및 전문심사 인력 확충 필요

○ 의료과다이용(의료쇼핑)에 따라 건보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마약류 의약품, 방사선 피폭량 과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검토 절차 보완 필요

○ 공직자윤리법상 유관단체 취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실장급 퇴직자에 대해서도 로펌 등에 대한 재취업 관련 정보유출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

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의심 의료기관에 대하여 현지심사 강화 및 제재 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자동차보험 심사조정위원회에 학계 및 정책전문가,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하는 등 인적 구성을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위하여 심사 사례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유하도록 할 필요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이나 심사 절차의 당사자가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실제 영향을 받는 건보공단 및 교통사고 피해자는 배제되어 있는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실태 점검 및 불공정리스크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이사 임명 대상 기관에 해당함에도 이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계획에 대해 질의

○ 암환자 치료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의 차등화로 급여접근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중증·희귀질환 환자 치료제 신속한 급여 적용 필요

○ 레베르 시신경병증 치료제인 락손의 급여화 노력 필요

○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중립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

○ 약침액 안전성 관련 국토부 협의체 결과가 나오기 전 유예기간 부여 검토 필요

○ 시신경척추염의 경우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필요시 허가초과 약제가 아닌 정식허가를 받은 치료제를 통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여기준 개선 필요

○ 간질성 폐질환 중 폐섬유화증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필요

○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 및 평가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할 필요

○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는바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 의료기관에 의료인력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 셈블릭스 치료 관련 급여비용의 삭감 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질의

○ 환자경험평가에 대한 인지도 및 응답률 개선, 조사방법 개선, 병원평가 반영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연계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고가의약품 급여 등재 확대 및 향후 계획 검토 필요

○ 비상의료체계 중 과도한 수가 삭감을 지양하고 벤탈 수술에 대한 합리적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사하도록 할 필요

○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와 함께 대여 의료기구 감염관리 규정을 제도화하고 임대업자 준수사항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 》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총사업비가 삭감되는 등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바, 대규모·장기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전 기획·준비 필요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R&D) 확대 위한 제2기 사업 추진 필요

○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R&D) 사업 실효성 제고 위한 실사용자 의견 반영 평가위원 참여 필요

○ 의사과학자의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학부과정부터 양성사업을 확대하고, 전일제 박사과정의 대학 기관부담금을 낮추며, 지방 의과대학 참여 확대 필요

○ 연구중심병원 기술이전 성과 및 기술이전 후 사업화 성과 향상 필요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보건산업 육성·지원 》

○ 고령층 증가 및 실버시장 확대를 반영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속적 지원 필요

○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바이오벤처 신규투자 확대, 펀드 조성, 인재 양성 등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속적 지원 필요

○ 외국인환자 유치 진료과목 다변화 및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제도

재검토 필요

○ 의료기기산업 육성 위한 국산 의료기기 사용 비중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디지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중국·베트남 등 해외 의료진출 지원사업의 성과 향상 방안 마련 필요

○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여부 분석 절차의 고도화 방안 마련 필요

○ 자회사 코리아메디컬홀딩스(Korea Medical Holdings) 청산 절차의 조속한 완료 필요

○ 혁신 신약에 대한 적정가치 보상 위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화장품분야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확대 방안 및 중국·미국 등 주요 수출 시장 규제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기타 》

○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의 타당성·신뢰성 확보 필요

○ 공공·지방의료분야 사전예비타당성 조사 연구 기능 강화 필요

○ 원장 등 임직원의 불요불급한 국외출장 자제 필요

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일자리 지원 》

○ 노인일자리가 노인 소득 보전, 건강 증진, 노인들 간 소통에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일자리 확대 필요

○ 빈곤층 노인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 필요

○ 신노년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근무조건이 탄력적인 일자리 개발 필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거나, 2회 이상 참여한 인원에 대한 데이터 수집 필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경륜과 지혜가 우리 사회에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참여자 만족도, 사회 전체적인 수요 공급, 생산성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아이돌봄 노인일자리 확대 필요

○ 종사자 1인당 교육수료시간이 부족하고, 경력과 분야별 구분 없이 신규 담당자 대상 단일 과정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

○ 매년 사업량과 교육예산이 연계되도록 교육예산 신설 필요

○ ‘일자리가 가장 좋은 복지’이므로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 필요

○ 고학력 고령자가 전문성을 살려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일자리 창출 필요

○ 시장형 사업단 신규 설립 및 사업단 수익 확대를 위해 사업비 인상 필요

○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한 활동비 인상 및 참여 시간 연장 필요

○ 경로당 일자리 참여 경로당에 미등록 경로당도 배제되지 않도록 참여기관 선정 과정에서 충실하게 안내 필요

○ 어르신 식사 준비를 돕기 위한 경로당 일자리 사업 확충 필요

○ 폐지수집 노인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계획, 일자리연계 및 미참여 어르신들에 대한 참여 활성화 방안 등 검토 필요

○ 최저 생계 생활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익활동형 일자리 활동비의 개선 필요

○ 공익활동형 일자리와의 차별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질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노인일자리 참여자 보호 》

○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상해·사망 사고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상해보험 등 지원대책 마련 필요

○ 노인일자리법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수행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안전사고 예방 역량 강화, 위험성 평가 및 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 및 단계적 실행계획 필요

○ 안전사고 예방, 현장조사 강화, 사고의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소득보장과 노동권 보장의 내용을 담은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필요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중도탈락 사유 중 30%가 건강악화로 신청자의 건

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및 중도탈락자의 의료기관 연계 지원 필요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에 대한 안전, 디지털 등 핵심 분야 교육 확대 및 종사자 직무교육 확대 필요

《 기타 》

○ 노인들의 교육수준, 건강수준, 능력, 의지에 맞는 일자리프로그램 기획 및 기획을 위한 부서 활성화 필요

○ 섬세하고 다층화된 노인 정책 대상 설정과 양질의 노인 일자리 개발 필요

○ 노인일자리법에 따라 증가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력 증원 필요

○ 시니어클럽이 없는 시군구에 시니어클럽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차원에서 복지부 및 지자체와의 협의 필요

○ 노인일자리시스템 ISP 구축 및 정책홍보 강화 필요

○ 민간일자리 취업을 목표로 하는 노인일자리 개발 해외 사례 연구 필요

7)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

○ 공공요금 감면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수급자가 편하게 공공요금 감면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이도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 자격이 있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 복지서비스의 수급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및 미추진된 과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 질의

○ 복지멤버십 가입율 제고 및 시스템 개선 필요

○ 차세대 3·4차 재추진 시 정보화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당부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태 관련 업체 선정 중요성 강조, 감사원 감사 결과 재발방지 대책 질의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참여한 컨소시엄 3사와 소송현황 질의, 향후 정보화 사업추진 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우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참여했던 기업들 관련 실적 정리 및 추후 수주업체 선정 시 히스토리 반영 필요

《 바우처 사업 관련 》

○ 바우처 결제 건수 증가에 비례하여 적발 금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부정수급 적발 담당 인력이 여전히 부족함,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하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잘 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정인력을 확보할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 생업 사용 불가에 대하여 부정수급조사도 중요하지만 부처와 소통을 통해 예방활동도 필요

○ 장애인 개인예산제 바우처 시스템 개선 필요

○ 부정수급 공익제보의 경우 현장조사를 나가지만 FDS시스템은 현장조사율이

1%임. 시스템 활용 및 개선할 필요

○ 바우처 결제방식 다양화를 위해 실시간 앱 카드 등의 다른 결제방식 고려할 필요

○ 바우처 부정수급 철저히 관리하여 복지재정 누수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아동 관련 》

○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시스템 운영 예산 확보 및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필요

○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의 신청 처리율 제고 및 가입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상 부적절한 용어에 대한 개선 필요

○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현장점검 실효성 강화 필요

《 기타 》

○ 정보시스템별로 근거가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제도설계나 정책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관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 결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노력 필요

○ 의료요양돌봄 사업 관련 '26년 본사업을 앞두고 있으므로 정보시스템 구축 경험이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이 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필요

○ 가명정보 활용기반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사업 운영 등 데이터 활용 기반 노력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의료정보보호센터가 제공하는 '민간 의료기관 의료정보 침해 및 예방을 위한 정보공유' 서비스의 신청 기관이 저조한데, 의료기관이 보안정보 공유

에서 재외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청렴도 개선 노력이 낮은 것으로 보임. 직원들의 청렴도가 중요하므로 청렴도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

○ 종합청렴도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변화 필요

○ 종합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사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 필요

○ 의료기관 보안관련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적극적 노력과 의원의 의료법 개정 시 적극지원 필요

○ 다문화가족, 이민가정들의 정보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포털 다국어 서비스 제공 확대 필요

○ 종합청렴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 마련 필요

8)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 본격 시행을 위한 교육 등 사전준비 필요

○ 찾아가는 아동안전교육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 필요

○ 요양보호사 교육강사 보수교육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경계선지능인 육성 및 전문가양성 프로그램 구축 필요

○ 의료인면허재교부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교육대상 확대 필요

9)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건강증진사업 》

○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정확한 산출을 통해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조직 및 인력을 강화하고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노인건강관리사업·연구가 통합적·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건강수명 격차 관련 연구와 정책 제안에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영양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1인가구 영양관리 프로그램 시범운영 성과개선 및 점검, 청년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 전략 마련 및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 확장 등 장기적 유지방안 모색을 통해 청년 1인가구의 영양불균형 문제 해결 필요

○ 금연길라잡이, 오늘건강-어르신건강관리, 채움건강 모바일앱 접근성 인증 획득하는 등 대국민 관련 업무를 추진할 시 장애인을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 건강수명 연장과 기대수명과의 격차 해소,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사전예방,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 필요

○ 공공형 디지털 헬스케어의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인프라 확장 및 3개년 기준 차세대 공공형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계획 수립 및 추진 필요

○ 비의료 경계에 있는 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공공 중심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료취약

지역 대상 사업 확대를 염두에 두고 평가 및 기술 지원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건축단가의 현실화 노력 필요

○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사업이 균특회계 자율계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 밀리지 않도록 관리 필요

《 금연정책 》

○ 청소년 흡연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 필요

○ 만 3~5세 유아대상 흡연위해예방사업이 성인 흡연율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과를 점검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생 대상 금연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닌지 등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온라인 담배 판매 모니터링 취지에 부합하도록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근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담배 정의 확대 필요

○ 무인점포 담배 판매 규제를 위한 현황 파악 및 담배사업법 개정 필요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도 흡연 경고그림·문구 표시해 흡연 폐해 정보 전달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향후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안 개정에 협력 당부

《 음주예방 및 절주사업 》

○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주류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음주를 조장할 수 있는 인터넷 콘텐츠 등 새로운 매체와 관련하여 면밀한 모니터링 및 선제적 예방 등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필요

○ 청소년 접근이 쉬운 이모티콘이 음주를 미화하여 노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마련 필요

○ 술병 경고문구에 '지나친' 등과 같은 단어 사용은 경각심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암 경고 문구 관련 개정 검토 필요

○ 음주예방도 금연사업처럼 센터로 격상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유튜브 등 OTT 플랫폼을 통한 음주장면의 규제 근거가 없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 정비 필요

○ 보건복지부·건강증진개발원의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연령 제한 및 경고 표시 등이 추가되었으나, 강제성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TV 방송 규제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 '해외직구', '온라인상 주류판매허용' 관련 논의가 계속되는 등 현행 법령에서 정한 주류광고의 구체적 범위와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법령 적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국민건강증진법」상 경품 제공 표시 금지, 「주세법」에서는 일정 정도 허용)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책, 규제가 일관되고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주류광고 위반 적발에 대한 행정처분이 약한 측면이 있는바, 강화 필요

○ 음주운전 등 인식개선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중요한 사업으로, 음주폐해예방사업의 성과 지표 개선,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인식 개선, 절주사업의 국가 차원의 노력,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 등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

○ 주세 중 일부를 절주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 진행 필요

10) 국립암센터

○ 최근 발생한 근로자 방사선 피폭 사건 관련 피폭된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및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 필요

○ 총액인건비와 정원에 대한 규제 완화, 별도의 관리체계 적용 등을 통하여 전문의를 확충하여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할 필요

○ 암정복추진 연구개발사업 활성화 및 연구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립암센터에 위탁근거 마련하고, 해당 시스템의 고도화 및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필요

○ 국립암센터를 '암 전문 상급병원'으로 지정하거나, '정책가산 수가' 신설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에 상응하는 지원 필요

○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암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술병에 있는 암 경고 문구를 담배 경고문구와 같이 간결·명료하게 구체화하고 수정할 필요

○ 지방의료원 등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입원형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필요

11) 대한적십자사

○ 의연금 모집 배분의 공정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호지원기관으로서의 대한적십자사 역할 확대 필요

○ 헌혈기념품 상품권 계약 관련 피해 발생 시 손실보상 가능하도록 지급보증보험 가입 업체와 계약하도록 대책 마련 필요

○ 혈액원 직원 대상 성희롱·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및 피해자 보호조치 방안 마련 필요

○ 부산혈액원 이전·신축 적극 추진 필요

○ 혈액 수급의 안정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혈액원 노후시설 및 장비 개선, 인력 확충, 혈액사업장 관리 강화, 수혈자 맞춤형 혈액 공급사업, 헌혈추진협의회 적극 운영, 헌혈예약 콜센터·픽업서비스 활성화 등 추진할 필요

○ 헌혈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등록헌혈 제고하고, 30세 이상 연령층 및 여성 헌혈 증진할 필요

○ 상주·통영·거창 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 적극 추진 필요

○ 혈액원 등 건물 노후화 관련 예산 마련, 스프링클러 조기 설치 필요

○ 헌혈버스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 필요

○ 지역별 헌혈 편차 줄이기 위하여 우수지역 사례 모니터링 및 공유 필요

○ 헌혈포스터 제작 관련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 점검시스템 구축 필요

○ 원료혈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추가 분산공간 마련 필요

○ 적십자병원 결원 발생 및 전문의 구인난 관련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성별 구성비 개선,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마련 필요

○ 이용률이 저조한 콘도회원권 관리 방안 마련하고, 향후 유사 자산 매입 시 철저한 검증절차 거치도록 시스템 구축 필요

○ 원폭피해자 복지사업 준비금은 원폭피해자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적절한 사용계획 수립할 필요

1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CBT 도입률이 약 35%에 불과하여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시험의 질 제고를 위해서 조속한 CBT 도입이 필요하며, 연구사업과 문항관리사업 등 선결 과제에 대한 예산 및 운영 지원 필요

○ 올해 의사 실기시험 응시인원 감소로 인한 내년 의사 실기시험 시행 대책 마련 필요

○ 의대생 2천명 증원에 대비하여 시험 실시 준비를 철저히 하고 평가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타당하게 평가할 필요

○ 다른 국가시험 관리기관에 비해 국시원은 출연금 지원이 전혀 없고 운영재정의 72%가 응시수수료로 의존하고 있는바, 국가시험 안정화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 또는 응시수수료 인상 필요

○ 의사 실기시험 및 요양보호사 응시인원 급감에 따라 기관의 재정 악화가 발생하고 있는바,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 필요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컴퓨터시험으로 전환하면서 연 4회 시행에서 연중 상시시험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시험방식 변경에 맞추어 부정행위 처분기준 개선 필요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26개 직종의 부정행위 처분기준은 개별법에 따라 상이하므로 직종별 부정행위 처분기준을 형평성에 맞도록 개선 필요

○ 의사 등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 문제 비중 확대 필요

○ 응시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시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인 국가자격시험 난이도 검증절차 강화 필요

○ 매년 발생하는 국가시험 출제 및 채점 오류에 대한 개선 필요

○ 외부 출제장 운영으로 시설 임차비용 발생과 함께 출제작업에 대한 보안 취약이 우려되는바, 출제센터 추가 확보 필요

○ 국가시험 문항 질적 향상을 위한 멀티미디어 문항 출제 확대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국고 지원 필요

○ 물가상승률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인상하여 기관운영 안정화 필요

○ 간호사 국가시험 선진화를 위한 CBT 도입 관련 국고 지원 필요

13) 한국장애인개발원

《 BF인증 》

○ BF인증 민간확대 및 인증운영기관 역할 활성화 필요

○ BF인증 심의위원 구성 시 장애유형별 참여 다양화 필요

○ BF인증 운영기관 제대로 된 사후관리 운영 필요

○ BF인증 운영기관으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세움터 연계 필요

《 편의증진 》

○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필요

○ 장애인 접근성 보장 강화 필요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 우선구매 판촉물에 대한 개선 및 생산시설의 관리 강화 필요

○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를 위한 품목 다양화 및 우선구매 비율 달성 방안 마련 필요

《 장애인일자리 및 직업재활 》

○ 최중증 장애인의 노동권 등 보장을 위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

○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사업 확대 필요

○ 훈련수당 및 사업체 지원금 개선 필요

○ 중도포기자 등 관리 필요

○ 장기요양등급 참여제한 개선 필요

○ 고령장애인 참여자를 위한 맞춤 직무 개발 및 일자리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장애인식개선 》

○ 장애인식개선교육 수준별, 분야별 맞춤 교육 지원 필요

○ 장애인식개선 미이수기관에 대한 조치 필요

○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향상 노력 필요

○ 장애차별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확대 필요

《 장애아동·고령·여성장애인 》

○ 장애아동을 위한 동력보조장치 관련 시범사업 필요

○ 고령장애 실태조사 필요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단가의 균형 조정 필요

○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발달장애인 》

○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강화 필요

○ 발달장애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책 마련 필요

○ 공공후견인 연계 지연해소 방안 마련 필요

○ 개인별지원계획 내실화 필요

○ 최중증 통합돌봄 사업 활성화 필요

○ 발달센터 운영위원회 참여 구성 확대 및 이해하기 쉬운 자료제공 필요

《 정신장애인 》

○ 정신장애인 주거전환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연구 필요

《 기관운영 》

○ 고용형태 개선 필요

○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기타 》

○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시범사업에 장애인 소외 개선 필요

○ 개발원 고유 기능인 정책연구 기능 강화 필요

○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 불법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필요

○ 맞춤형 재난 훈련 확대 필요

1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외국인근로자 이동진료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지방균형 필요

1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 개인정보 유출 》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기관의 후속 조치사항 질의

○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 납부 방안 마련 필요

○ 실시간 알림서비스 도입 시기 및 관련 예산 확보 여부 질의

○ 정보보안업무 담당 관리인력 확보 및 전문성 제고 노력 필요

《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의무설치 》

○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설치현황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의무부담 여부 질의

○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역할 분담 질의

《 기부식품등제공사업 》

○ 소비기한 경과로 폐기되는 기부식품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수도권에 치중된 지역별 기부물품 배분편차 해소방안 마련 필요

○ 푸드뱅크 기부수량이 감소한 사유 질의

《 사회복지자원봉사육성지원 》

○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를 제한하는 관련 법률 존재 여부

및 성범죄자 자원봉사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파악 여부 질의

16) 국립중앙의료원

《 신축 이전 》

○ 필수의료 기능을 할 수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만들기 위해 신축이전 시 병상 수 확대 및 공사비 현실화 필요

《 공공의료 확충 》

○ 필수의료·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가 중앙의료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크므로 적어도 상급종합병원 지원에 상응하는 적절한 지원과 역할 부여 필요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이 감염병 의료 대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

○ 공공병원들이 낮은 급여로 인해 인력 수급 곤란하므로 정부의 인건비 등 지원 필요

○ 코로나19 시기 중앙감염병병원 역할 수행에 대한 회복기 지원 확대 필요

《 기관 운영 》

○ 국립중앙의료원 내 정책통계지원센터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인력 확충 및 안정적인 예산 확보방안 마련하고, 데이터 품질 관리와 통합적 활용 체계 구축 추진 필요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의 정보 정확도 개선 필요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에 따라 필수의료장비 구비 등 법적기준 충족을 위한 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장애인건강검진 지원사업 관련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상담 대기 기간 증가에 대한 개선 필요

○ 응급의료정보망 구축 및 유지관리, 노후 서버 교체 관련 예산 지원 필요

○ 행려환자와 무보험 외국인 응급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종료 관련 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 필요

○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상황실 인력 부족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필요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기관화 논의보다 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우선 추진 필요

○ 응급영상판독 지원사업 예산 확보 및 사업 참여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위해 총액인건비·정원 규제 완화 정책 지원 필요

○ 의료분쟁 관련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책 마련 필요

1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기술재평가 》

○ 선진입-후평가 제도관련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

으며, 평가유예 기술 사용 시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 시행과 기술 사용에 따른 부작용 보고 체계 마련 필요

○ 올 초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연장 계획 발표 후 해당 방안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바, 구체적인 실시 계획 필요

- 그 사이 유예 기간이 만료된 기술들이 발생하여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도 함께 필요

- 비침습적 의료기술의 경우 임상문헌을 임성시험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필요

○ 출산 시 사용하는 무통주사 및 페인버스터에 관한 의료기술재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재평가 소위원회 전문가 의견과 최종 연구보고서 결과가 다르므로, 중립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필요

○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그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바, 의료기술재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기관운영 등 》

○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중추적 보건의료기관으로서 고민할 필요

1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최대 120일인 조정절차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할 필요

○ 대구, 울산 전남, 전북, 세종 등 지역의 조정신청 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의원급, 성형외과, 피부과 등 종별·진료과목별 조정개시율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14일로 규정된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참여 기간 연장 필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인적 역량을 확보할 필요

○ 의료인과 환자의 정보비대칭 심화문제에 따른 환자대변인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자동개시 적용 범위 확대 등 의료사고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MOU 체결 등 신체감정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대불재원을 정기적으로 징수하는 등 의료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 검토 필요

○ 대불금 장기 미상환 중인 구상금의 실효성 있는 회수방안을 마련할 필요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범위를 중증 소아, 중증 응급수술 등으로 확대할 필요

19)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뇌사추정자와 이식대기자의 적합성 검사를 수행하는 진단검사의학과의원(KODA Lab)의 임상병리사 인력 증원 및 처우 개선 필요

○ 안구 기증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장기기증 자기결정권 존중 관련 법 개정, 장기기증희망등록 제도 보완 등을 통한 기증률 개선 및 기증자 유가족 예우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지자체 간 장기기증 제도 운영 편차 보완 및 기증자 추모공원 건립 적극 추진 필요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홍보비 대폭 증액 및 대상별 체계적·전략적 홍보전략 수립으로 적극적인 홍보 추진 필요

○ 운전면허 발급 시 기증희망등록 의사 확인 관련 법률 개정에 협조 요청

20) 한국한의약진흥원

《 원외탕전실 인증제도 》

○ 원외탕전 인증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우수한약 시범사업 》

○ 우수한약 시범사업의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필요

《 국립 한의약임상연구센터 》

○ 국가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하기 위한 국립 한의약임상연구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조제한약, 한약제제 제도 개선 》

○ 조제한약, 한약제제 제도 개선을 통한 한의약산업 육성방안 마련 필요

2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의료기관 인증 》

○ 정신의료기관 대상 평가 거부 및 정신병원 인증제의 중간현장조사 미시행 등 제도 개선 필요

○ 정신의료기관 평가 인센티브 및 패널티 강화 필요

○ 인증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 및 적신호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내부조사위원 확대를 통한 조사결과 신뢰성 제고 필요

○ 법적 인력기준 준수 관련 사항의 인증기준 반영 필요

○ PA 간호사 관련 인력 인증기준 마련 필요

○ 병원 내 CCTV 설치 관련 내용 인증기준 반영 필요

○ 비경구영양수액(TPN) 정맥주사 투약 행위에 대한 임상실무지침의 인증기준 반영 필요

○ 비경구영양제제 투입 관련 내용 인증기준 반영 필요

○ 기관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가 의료계 위주로 폐쇄적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

《 환자 안전 》

○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고 의무 대상 확대 필요

○ '환자안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필요

○ 환자안전 전담인력 제도 강화를 위해 연속적 부재기간 및 겸임 업무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환자안전 전담인력 확충 방안 마련 필요

○ 환자안전사고의 원인분석을 통한 유사사례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환자안전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중앙환자안전센터 운영 내실화 및 역량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지역환자안전센터 확대 지정 및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환자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필요

22) 한국공공조직은행

○ 2022년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점검 필요

○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및 이식재 폐기 최소화 노력 지속

○ 인체조직 기증 관련 의무기록 열람 권한 조정 필요

23) 아동권리보장원

《 입양 관련 》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여 해외

입양을 지양할 수 있는 관련 연구 추진 필요

○ 내년부터 입양기관과 함께 하던 입양정보 제공서비스를 아동권리보장원이 진행하게 되는 만큼 충실한 역할 수행 필요

○ 입양 정보공개진행 통보서와 정보공개청구 결과 통보서에 대한 공문서 확증을 위하여 관련 서식 개선 필요

○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와 상관없이 입양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므로, 사망 또는 의료적 목적 등 사유에 대한 해석을 구체화할 필요

○ 입양정보의 공개가 친생부모의 동의여부에 달려있는 등 친생부모 정보에 대한 과잉 보호 문제의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자체 매뉴얼을 통하여 현재 등기우편으로 진행되고 있는 친생부모 동의절차 방식에서 유선전화나 문자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동의절차 구현을 위한 근거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입양인의 친생부모 노령화로 신속한 정보공개 절차 이루어질 필요

○ 입양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개편되는 입양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방안 검토 필요

○ 입양인 당사자가 요청한 입양정보공개청구 관련 제안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 필요

○ 정보공개청구가 적절하게 등록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절차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필요

○ 정보공개제도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입양기록물 관리를 위한 적극적 제도 개선 노력 필요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오류사항 보고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입양기록물 관련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백지스캔을 진행한 용역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 논의 필요

○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논란에 대한 문제 내역 및 복지부 감사결과에 따른 이행·보완 계획 수립 필요

○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 데이터 오류 확인사항 보고」 용역 보고서 작성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 필요

○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대하여 1) 기록물 원본에 면 표시 누락, 2) 백지스캔, 3) 데이터 구축 부실(다년간 데이터 업로드 누락), 4) 사업 수행 업체가 10년간 같은 업체였던바, 업체 평가 기준 미비 등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시정 필요

○ 입양기록물 관련 2018년 감리보고서부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견한 데이터 이상에 대한 시정처리 노력 필요

○ 입양기록물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유관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 필요

○ 입양기록물 관련하여 누락된 데이터 보완 및 향후 관리 방안 검토 필요

○ 2025년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입양기록물 이관 사업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2025년도 개정 입양법 시행에 따른 입양기록물 이관 과정에서의 정확한 입양 기록 확보 노력 필요

○ 입양기록물 원본 이관을 위한 사전 준비로 입양기록물 보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중인바, 입양기록물 영구 보존을 위한 장기 보존시설 확보 및 기록물 이관, 전수조사, 실물 이관 비용 등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 노력 필요

○ 2025년 법 시행을 대비하여 입양기록물 관리 부실 의혹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양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기록물 전산화를 위한 연구용역 업무에 관련 유경험자 인력 배치 필요

○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기록물 누락 데이터를 보강하고 외장하드가 없는 기록에 대한 파악 필요

《 아동학대 관련 》

○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행복e음시스템으로 사건 관리 시 가해자를 사례관리대상자(보호자·성인)로 분류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용어를 아동의 시각에서 숙고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아동학대 범죄 범위를 보호자에서 제3자인 타인까지 확대 필요

○ 아동학대사망사건 모니터링 업무 과정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침에만 의존하는 등 미비점 개선 필요

○ 아동학대·예방 관련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통계의 매월 집계, 당해 연도 내 집계 등 필요

○ 아동학대 중대 사망사건 분석팀 설치를 위해 추진한 노력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 수립 필요

○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과 더불어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검토 필요

○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역 간 입소율 편차,쉼터 부족 문제 해결 및 체계적 배치 방안 검토 필요

○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고 영유아 등 아동 특성을 고려한 지원 강화 필요

○ 실효성 있는 현장대응을 위한 아동학대 분리조치 강화 필요

○ 지자체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에 대한 권고기준(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에 따라 대응인력을 조속히 충원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 조치 등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필요

○ 아동학대 판단에 관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 간 이견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바, 아동학대 판단 전이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례관리를 강화할 필요

○ 재학대 아동 보호조치 개선 및 부모 대상 서비스 강화 등 재학대 사례관리 강화 필요

○ 재학대 아동 사례 관리 매뉴얼상 가정방문 관리가 원칙임에도 전화로 관리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바, 관리 강화 필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건수가 2021년 2만 3천건에서 2023년 1만 2천건으로 감소한바, 이를 높일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방안 검토 필요

《 보호종료아동 등 자립지원 관련 》

○ 위기발굴시스템에서 감지되는 자립준비청년의 위기 징후를 자립지원체계에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자립준비청년들이 시설 퇴소 후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 강화 필요

○ 온라인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대상 경제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방문 등 프로그램 개발 노력 필요

○ 자립준비청년이 금전피해로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되어 사례관리 중인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자립준비청년 금전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검토 필요

○ 디딤씨앗통장 만기 미수령 계좌 안내 대책 마련 및 홍보 강화 필요

○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자립준비 지원 필요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의 예산, 담당인력 및 지원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필요

《 아동권리 및 보호체계 관련 》

○ 영상물, 사진 등 디지털 영역에서 아동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공자 포상 등을 통한 아동권리 인식 확산 노력 필요

○ 온라인 매체를 통한 아동인권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아동학대와 병행하여 검토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 필요

○ 가정형 보호 활성화 및 양육시설의 기능전환을 위한 권역별 또는 시도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관련 논의 필요

○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를 활성화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영향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과 예산 확보하고, 지원 조직 확대 등 검토 필요

○ 지역아동센터 휴폐업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 방안 검토 및 센터 내 안전사고 발생 등에 관한 통계 관리 등 안정적 돌봄 환경 구축 필요

○ 일반·전문위탁가정 지원에 대한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양육지원금 현실화 노력 필요

○ 전문위탁가정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방안 검토 필요

○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장애여성 지원서비스 안내와 상담원의 장애인식교육 운영 지원 노력 필요

○ 장애가 있는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대리 신청 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사결정지원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상담 지원 필요

○ 다양한 집단의 필요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위기임신 상담 지원 대상을 유형별로 분류·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정부가 아동초기보호체계 구축, 시설 기능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정형 보호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서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등 시설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어 있는바, 실제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정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구조 전환 검토 필요

○ 중앙에 한 곳만 존재하는 아동권리보장원과 기초자치단체 및 현장시설을 매개할 광역 거점전달체계 필요

24)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자활성공률 하락에 대한 개선 필요 》

○ 자활성공률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자활사례관리 운영 개선 필요

○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필요 (취약청년 포함)

○ 자활급여 대상자 확대 예산 증액 필요

○ 자활급여 물가 인상률 반영 필요

○ 자활성공 시 인센티브 지급 방안

○ 시장형사업단 비중을 상향 조정 필요

○ 자활사업 질적 제도개선 병행 필요

○ 자활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자활사례관리사 전국 배치 필요

○ 자활참여자 이력관리, 재참여 원인 등 파악 필요

○ 청년자립도전사업단 활성화 방안

《 자활기업 활성화에 대한 개선 필요 》

○ 자활 우선구매 실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한 개선 대책 필요

○ 자활기업 업종 발굴 및 업종 다양화를 통한 대책 필요

○ 자활기업 우선구매제도 의무 구매 비율 설정 필요

○ 자활기업 우선구매제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개선책 요구

《 기관운영 등 》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제2대 원장 임명 관련 공모, 재공모 등 심사과정 외압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25)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응급상황 대비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사전 동의체계 구축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 '나의건강기록앱' 가족 열람기능 관련하여 고령자 등으로 확대 필요

○ 영상정보 전송을 위해 본인 동의 절차 등 번거로운 절차 개선 및 사전 동의 방안 강구 관련 질의

○ 영상공유 시범사업 추진 시 영상 표준화 미흡한 병원 등 의료현장에 실질적 적용 한계 우려

26) 중앙사회서비스원

○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거점기관(2곳)의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에 대한 조치 필요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율 감소 및 지역격차 발생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현행 품질평가 시, 일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장평가 및 미흡기관(D/F등급)의 사후관리의 확대 필요

○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 수행 강화 필요

○ 주말·야간돌봄, 민간기피 서비스 확대 등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역할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해산을 막기 위한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적극적 역할 부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재설립 필요

○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종합재가센터 확대 운영 필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역별 격차 발생에 따른 개선 필요

○ 중앙사회서비스원 임직원 1/3의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개선 필요

○ 중앙사회서비스원 장애인 직원 고용 추진 필요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 최근 EU와 중국 등 국제사회의 규제 완화 동향에 따라 일본산 식품 수입 제한조치 해제 또는 완화 요구가 예상되는바,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및 신속 대응을 위해 별도 정원으로 일본 식약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필요

○ 해마다 행정소송과 심판 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승소율은 낮아지고 있음. 행정처분 전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소송 제기를 줄이고 행정처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

소비자위해예방국

○ 최근 생분해성 향상을 위해 종이 빨대와 종이컵에 사용되는 코팅제(수용성 아크릴 에멀젼 포함)는 기본적으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나노 크기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보다 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종이 빨대·컵에 사용되는 코팅제 현황을 파악하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재에서 기인하는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시험법 및 안전관리 방안 검토 필요

○ 식품용 페트병의 물리적 재활용 등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인체 유해성을 검증하고, 미세플라스틱특별법 제정에 협조할 필요

○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연구와 다양한 식품군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품 내 미세플라스틱 허용기준 검토 필요

○ 2023년 6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2025년 6월부터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는바, 경인청에 무균시험실을 구축하고 시험비 지원 시범사업 등을 검토할 필요

○ 문신용 염료에 대해 최소한 화장품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직접 제조하는 액상형 담배를 포함하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규제를 위해「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 확대 및 선제적 대비를 위한 검토 필요

식품안전정책국

《 HACCP(해썹) 관련 》

○ HACCP 인증업체의 반복적인 법 위반, 인증 취소 후 재인증을 받고 다시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는바, HACCP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 방안과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식품업체를 위해 스마트 HACCP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HACCP 신규 의무적용업체 및 자율적용업체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영세한 HACCP 인증업체가 재인증 시 지원 대책을 마련하며,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인력의 추가확보 필요

○ HACCP 현장평가 면제 업체 및 현장평가 결과 부적합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음.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HACCP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표시·광고 관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하는 숙취해소제품은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숙취해소제품에 이러한 문구가 없는 실정인바, 모니터링 후 조치 필요

○ 2025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제품은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받아 해당 내용을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는데, 일반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와는 달리 숙취해소제품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심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설탕 대체제인 말티톨이 함유된 무당(제로슈거) 강조표시 제품에 대해 혈당지수를 표기하거나 제품 뒷면에 경고문구를 추가하는 등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막쿠르트와 같이 일반 음료로 오인 가능한 주류협업제품에 대해 주류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14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주류임을 표시하게 하는 등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인삼·홍삼, 흑염소를 사용한 제품의 원료 함량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인삼·홍삼 엑기스 제품의 경우 4년근, 6년근 등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연근제 표시와 관련하여 소비자 관점

에서 영업자들이 관련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

○ 소비자에게 디카페인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알리는 조치와 디카페인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재조정할 필요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중에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닭의 외부 방목이 제한되는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특별방역기간 동안 생산된 방사 사육 달걀의 표시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만드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버터맥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중소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후속 조치 필요

○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하거나 홍보하기 위해서는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가 완료된 광고에 대해서 단순 매체 변경 또는 일부를 발췌하여 동일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다시 수수료를 지불하고 최소 심의기간(7일)을 기다려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급행심의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바, 제도를 개선할 필요

○ 기능성표시식품의 경우 기능성 원료의 30% 이상을 함유하도록 하고 있을 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과학적 근거를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전문 배우들이 의사, 약사 등으로 위장하여 영상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광고한 업체가 있으므로,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하고 불법 광고 행위의 근절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품목별 단계적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조속히 결정하여 GMO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

○ 2026년까지 GMO 완전표시제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임. 전향적인 자세로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할 필요

○ 식품 등의 표시를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할 때 해당 QR코드의 위치를 찾기 어려우므로 식별을 위한 위치 안내 촉각돌기를 표시할 필요

○ 식품 QR 표시 사업의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 방안 마련 필요

《 위생·안전관리 관련 》

○ 생맥주 거품을 모았다가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적용을 검토하고 내년 여름이 되기 전 맥주 생산 및 판매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사전 안전관리 점검 필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공간을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음식점에 반려동물을 출입시키는 것은 불법임.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의 출입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위생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 필요

○ 창고형 매장의 경우 취급하는 물품이 다양하고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므로 반품되는 식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점검 필요

○ 위해식품 회수율 제고를 위해 제품의 출고량 대비 회수량을 공개하고, 위해식품 판정 및 회수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

○ 커피는 대중적인 기호식품이자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만큼 커피 프랜차이즈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감독 필요

○ 치킨, 마라탕, 탕후루 등 프랜차이즈 상위 10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6%나 증가한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속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책임감 있게 위생지도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식품업체들이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부당광고하고 있음에도 식품안전정보원은 부정·불량식품 신고 접수 시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만 분류하여 접수하고 있는바, 기능성표시식품에 관한 정보를 신고항목의 필수 정보로 수집하는 등 신고 체계를 보완할 필요

○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하여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법률 제20347호, 2025. 2. 21. 시행)이 개정됨. 이에 상시 급식인원 100명 이상일 때 영양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산업체 집단급식소에 한하여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허용하는 규모를 배치기준과 동일하게 100명 미만으로 한정할 필요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영업현장 규제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시간 단축(매년 6시간 → 3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 향상이라는 법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과 같이 연 6시간 유지 필요

○ 회수 1등급 대상인 무등록·무신고 제품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에 대한 단속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AI와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기타 》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업계와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보상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접수가 총 6,342건에 달하는바,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와 제품별 현황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모니터링 및 분석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

○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홍보하고, 해외의 식이보충제로 기능성·안전성이 입증된 전문의약품 성분 천연물 원료인 경우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원료로 사용·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특수의료용도식품은 품목제조신고로 전환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되 의사·임상영양사 등 전문인력으로 자격을 한정할 필요

○ 최근 2년간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5성급 특급호텔에서 개최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으므로, 향후 행사 준비와 진행에 대해 충분한 검토 필요

식품기준기획관

○ 지속적으로 이상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하여 제외국의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재평가 결과를 보고할 필요

○ 기후변화 등으로 낙동강 유역에서 연례적으로 녹조 발생이 심화되고 있어 낙동강 유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농수산물을 수거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

○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

○ 202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 감미료에 대해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등의 잠재적인 영향이 장기적으로 있는 것으로 발표한바, 아동·임산부에 대한 감미료의 기준을 보수적으로 검토할 필요

○ 비당류 감미료 사용 제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국민건강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감미료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외국의 여러 논문에서 대체당류에 대한 다양한 부작용을 언급하고 있어 대체당류의 안전성과 기준을 검토하여 적절히 조치할 필요

수입식품안전정책국

《 수입식품 안전관리 》

○ 중국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주재소를 설치하여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

한 위생관리 수행 필요

○ 수입 김치 HACCP 인증업소에 대한 현장점검 체계를 보완하고 인증단계에서 적합 판정 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었는지 보고 필요

○ 식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리해야 할 해외제조업소가 늘어나 수입 전(前) 단계의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료 수출업소 등 국외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현지 실사를 강화할 필요

○ 중국산 수입김치에 대한 통관 전, 통관, 유통단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

○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 가동 시 모니터링 등 계속해서 철저히 관리할 필요

○ 회수되지 못한 부적합 식품들이 국민 밥상에 올라감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보다 빠르게 진행하여 많은 물량이 유통되기 전에 부적합한 식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5년간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를 한 수입 김치 회수율이 낮아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바,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

○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상당수가 위해성분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바, 위해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 및 점검 방안 마련 필요

○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기획검사를 정례화하여 마약류 함유

해외직구식품의 검사, 정보제공 및 실태조사 등 의무 규정화를 검토할 필요

○ 해외직구식품 구매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위해성분 검출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구매·검사 확대가 필요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의약성분 함유 해외직구식품의 실질적인 차단 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파피씨드 함유 해외직구식품과 같이 동일 회사의 유사제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등 해외직구식품의 규모와 증가세를 고려하여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 필요

《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

○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수산가공품 등 검사 강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홍보, 방사능 장비 운영 등 국민 염려가 없도록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필요

○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하여 가짜뉴스가 횡행하던 시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대로 된 반박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함.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것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비전인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므로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일본산 가공식품은 후쿠시마산 원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방사능 검출률이 일본 후생노동성과 식약처가 다르므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

식품소비안전국

《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

○ 최근 유행하는 식품(탕후루와 요아정 등)이 어린이 기호식품 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규제가 미미함. 기호식품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 지정 기준과 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수립할 필요

○ 타르색소를 사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관련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표시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의원실에서 조사한 103개 젤리제품 중 2개의 제품에서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바, 관련 내용을 조사·검토할 필요

《 급식 안전관리 관련 》

○ 급식 안전관리에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이 없도록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조속한 전국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식생활안전관리원의 내실 있는 급식 안전관리와 식생활 정책지원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사업비도 추가로 확보할 필요

○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영양사 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반영하고, 면허수당(기본급의 5%)은 기본급과 분리하여 지급할 필요

《 농·축·수산물 안전 관련 》

○ 2019년 모든 농작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제도(PLS)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부적합 농약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유통구조를 감안하여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 필요

○ 2023년 기준 프랜차이즈와 개별영업자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률은 거의 대등함에도 프랜차이즈의 위생등급제 신청이 훨씬 더 많음. 전체 음식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별영업자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기타 》

○ 2023년 기준 프랜차이즈와 개별영업자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률은 거의 대등함에도 프랜차이즈의 위생등급제 신청이 훨씬 더 많음. 전체 음식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별영업자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하루 권고량 2배 이상의 고카페인 음료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하는 중고등학생 비율이 지난 4년간 약 4배 증가한바, 편의점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이용하는 브랜드카페까지 ‘고카페인 음료 섭취주의 문구표시 캠페인’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원 필요

○ 요아정(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업체)처럼 소비자가 토핑을 선택하여 세트메뉴를 선택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섭취하는 당류, 열량(칼로리) 등 영양성분 함량을 알 수 없어 제도 개선 필요

○ 코스트코 등 식육판매업체, 기타 식품판매업체에서 구입한 제품에서 이물이 발견되어 소비자가 판매업체에 신고한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소에서 이물 발생을 보고할 수 있도록 판매업체에 대한 이물 통보제도 마련 필요

의약품안전국

《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관련 》

○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사전 GMP 현장실사 적체로 인한 수입품 목허가·등록 절차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된 GMP 평가 정책 개편안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

○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적합판정 취소 후 적합판정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

《 임상시험 관련 》

○ 임상시험 중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USAR) 의심사례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해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임상시험 절차준수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김안과병원의 셀트리온 CT-P42의 임상시험 수행 관련, 해당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투약주기, 대상자의 정보공개 민원처리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

○ 임상시험계획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자료의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

○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위하여 공정한 원가 검증 절차

를 마련하고 타당성이 확인된 원가에 대한 비용 청구를 인정할 필요

○ 임상시험 대상자가 동의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식약처 차원의 확인 절차제도를 보완할 필요

《 의약품 허가 관련 》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임신중지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허가를 검토할 필요

○ 고가 중증질환 의약품에 대한 허가 지원을 위해 혁신제품 지정과 심사를 신속히 실시할 필요

○ 지방청별 의약품·의약외품의 허가(신고) 기간 차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완 요구 시에는 사유를 적시하도록 명확한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

《 의약품 공급 관련 》

○ 어린이 필수의약품의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현재 부처별로 개별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리가 부족하므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성분명 처방에 대해 논의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공급중단에 대응할 필요

○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수급 불안을 방지·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의약품 안정공급 모니터링에 심평원의 공급자료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해 위탁제조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공

공재 성격의 의약품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수입국 다변화,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자급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

○ 희귀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약가 부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할 필요

○ 식약처 누리집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재개일자가 공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급중단 보고를 더욱 빠르게 하며, 공급 부족 보고를 의무화할 필요

《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

○ 동물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조합 C 인자를 이용한 엔도톡신시험법(투구게 대체 엔도톡신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

○ 식약처가 개발 등을 지원하여 OECD에 등재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

○ 동물대체시험법의 촉진을 위하여 관계부처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기타 》

○ 스테로이드 의약품의 불법 유통·판매를 단속하고 예방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복지부·식약처가 전문의약품 관리와 의사 의료행위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연계 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필요

○ 관세청과 협의하여 의약품 해외직구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해외 직구를 통한 의약품 구매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점자 표시 의무화와 점자 표시 대상 항목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

○ 의약품 유사 포장으로 인한 조제 오류 및 투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품 유사 포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기준을 마련할 필요

○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 관련, 임상재평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립할 필요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할 필요

마약안전기획관

《 마약류 예방교육 및 재활 관련 》

○ 마약류 사범의 재범 방지에 효과적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적용을 확대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중독재활센터인 '함께한걸음센터'의 인력 운영을 개선할 필요

○ 수요와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함께한걸음센터 추가 설치와 중독자에게 24시간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센터 운영 검토 필요

○ 마약류 중독자 재활은 장기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므로 함께한걸음센터뿐만 아니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56개 보건소 네트워크 등을 활용

할 필요

○ 마약류 중독자 재활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늦어진 이유와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보수교육을 도입하면서 기존 위촉강사에 대해서는 참여 유예기간을 부여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

○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별로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를 배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 마약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인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의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추어 제도 시행 초기부터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할 필요

○ 남한으로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

○ 마약중독자 재활을 위한 입소형 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입소형 시설의 신설 및 성별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법을 검토할 필요

○ 급증하는 마약류 사범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재활 및 치료·예방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류사범 중 재활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중도에 퇴소한 사람들의 퇴소 사유를 파악할 필요

○ 마약 동아리 사건 이후, 대학생 관련하여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대학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만든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메타버스가 오히려 마약 구매 루트를 알려주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우려 사항을 개선할 필요

○ 지난해 여러 부처가 메타버스 활용 문제로 메타버스 사업을 철수한바, 마약예방 메타버스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

《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관련 》

○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를 위한 의료현장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처방이 빈번한 의사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해 경찰·지자체 등과 기획점검을 실시할 필요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처방 중지 등의 행정조치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즉각적으로 처방을 제한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잔여 의료용 마약류 폐기량 입력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의료기관들은 잔여량이 감시망을 벗어나 오남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철저하게 지도·단속할 필요

○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강보험 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필요

○ 마약류 오남용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1회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일회성인 경우도 처방내역에 따라 선별하여 처방의사에게 오남용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

○ 폐업한 의료기관의 마약류 재고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과다처방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

○ 마약류 오남용 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

○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건

보공단·심평원과 협력하여 소아·청소년 등의 메틸페니데이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마약류 의료쇼핑을 방지하고 중복·과다 처방으로 인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되는 성분을 확대할 필요

○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성분 확대 관련,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처방소프트웨어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처방량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개정할 필요

○ 실효성 있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약국을 확대하고 예산을 확보할 필요

○ 마약류 성분이 의심되는 제품을 수거·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 차단 조치를 실시할 필요

○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 광고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범부처 차원의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

《 마약류 지정 관련 》

○ 유럽연합마약청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할 필요

○ 프로포폴 대체재로 활용되고 있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불법 유통 및 취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자일라진에 대한 마약류 재지정을 검토할 필요

《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관련 》

○ 정신질환자 등이 편리하게 향정신성약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불법적인 마약 사용과 별도의 법체계를 만들거나 규율 내용을 분리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

○ 마약류 사범의 양형을 강화하는 대법원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필요

○ 연구개발 목적의 사일로시빈 취급승인이 규정상 가능한지 설명하고, 품목허가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필요

○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할 때, 관련 내역을 보건복지부로 통보할 필요

○ 국방부가 군 병사에 대한 마약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협의할 필요

《 대마 관리 관련 》

○ 의료용 헴프(대마)의 합법적 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과 경북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임시허가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

○ 합법적으로 재배되는 대마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불시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

《 기타 》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인력 증원이 충분하지 않고 함께한걸음센터의 인력이 전국 센터별 업무 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치되어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인력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간사 기관으로서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중독센터 운영 및 전문가 양성 등 복지부와 식약처 간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관련 업무의 중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

○ 현재의 마약류 중독자 사후관리는 현장에서 실효성을 지적받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대한 권한이 있는 부처에서 일관성 있고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검토할 필요

○ 마약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중독자와 청소년 등의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고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노력할 필요

○ 젊은 층의 마약류 중독이 급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

바이오생약국

《 바이오의약품 관련 》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

○ 필수 예방접종 백신의 자급률이 아직 30%를 넘기지 못하고 있어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규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과정에서 필요한 생산원료(세포) 안전성 분석 업무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필요

○ 성장호르몬 주사의 오남용 및 이상사례 증가에 대하여 과대광고 단속 등 식약처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백신 멸균 주사침 결함 발생 관련, 이상사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철저하게 사후관리할 필요

○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포진 백신의 대중광고 허용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

○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해외직구 사이트 차단, 온라인 불법 유통 점검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할 필요

○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오남용 우려 등을 담은 소비자 안내가 필요하고, 유럽 규제기관의 비만치료제와 자살·자해 위험 간 인과성 검토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치매 치료제인 레켐비주(레카네맙) 허가 검토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치지 않은 사유 및 미국과 유럽의약품청의 안전성 우려를 검토할 필요

○ 바이오의약품 신약 허가 혁신을 위한 허가 조직 시스템 마련을 검토할 필요

《 화장품 관련 》

○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와 피해사례를 통합관리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화장품의 부당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근절방안을 마련할 필요

○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침 및 마이크로니들 등을 활용한 미용기기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주요국에서 활용 중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은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안전성 평가자료 개발·보급 등을 지원할 필요

○ 이너케어젤 등을 화장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유도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법으로 화장품을 사용하도록 광고하는 영업자를 처벌하는 등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

○ 2022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없이 운영된 화장품 리필 매장에서 위생 문제 등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화장품 리필 매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의무 규제를 개선할 필요

《 의약외품 관련 》

○ 반복적으로 생리용품의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치아미백제의 거짓·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할 필요

○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이 의약외품으로 오인되어 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

《 기타 》

○ 원외탕전실에서 첩약 등의 품목을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의료기기안전국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관련 》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국내에 도입하기 위하여 검토과정의 효율화, 개발지원 및 인력 확보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 및 안정적 수급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의료기기 품목갱신 및 GMP 인증제도 개선 관련 》

○ 의료기기 품목갱신 시 이전 유효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제출자료에 대한 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심사 시, 중복 GMP 현장 심사 개선을 위해 제조의뢰자 중심 GMP 심사로 개편하고, 심사 지연 해소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기타 》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인 PCL의 임상자료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필요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로 인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 발생 시 피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공제)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과도한 가격 변동은 소비자의 가격 신뢰도 하락과 환자의 접근성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선할 필요

○「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을 앞두고 하위규정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신규 제도로 인한 산업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대책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즉시 진입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식약처의 허가 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의 잠재적 위험성 등급별로 교육방식을 차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차단 관련,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안전성 검사 인력확충 계획과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인력 중 전문성을 갖춘 심사인력을 강화하고 심평원의 심사내용을 식약처가 공유·활용하는 등 안전성·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

○ 수술용 대여 의료기구 관리 강화를 위해 임대업자 준수사항 규정을 보완할 필요

감사담당관

○ 직장 내 괴롭힘·갑질 사건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조직문화 개선, 예방 교육,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차관급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부문에서 2년 연속 4등급을 받았으며, 외부·내부 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인식 경험인 청렴체감도 분야는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았음.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 필요

규제과학혁신단

○ 「규제과학 인재양성교육 통합플랫폼」 구축은 개별 교육이 아닌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에 해당하는 규제과학혁신 분야의 교육만으로 한정하여 진행할 필요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 식약처의 WHO WLA 등재에 따라 국내 제약업체 해외진출을 활성화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협력을 지속할 필요

사이버조사팀

○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식·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 점검할 필요

○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게시물을 적발하여 방심위에 차단 요청하여도 실제 차단이 안되거나 재심의 요청 시 중복 신고로 차단 요청이 각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가 유의미하게 줄지 않는 이유와 수사의뢰 결정 기준에 대하여 제출할 필요

○ 정부 차원에서의 식품 등의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바, 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업계가 자율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필요

○ 마약류 불법유통 사이트의 차단 일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사와의 협력할 필요

○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부당광고 관리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

○ 쿠팡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및 불법판매 방치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 고발 등을 검토할 필요

○ 온라인 판매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유해제품에 대하여는 직접 사이트 차단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불법 마약류 유통을 즉각 차단하기 위해 적발부터

차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활교육 대상자 중 중도 퇴소 인원이 많은데, 퇴소 이유 파악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전 국민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사업에 대하여 단순 양적 수치 확대가 아닌 적절한 목표를 수립하고 연내 달성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

○ 대국민 마약류 예방교육 관련, 검증된 표준교재 및 전문성 있는 마약 예방 전문강사 인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고, 예방교육 사이트 이용자 수가 저조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

3)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파미(Pharmee)라는 약 배송 관련 기업과 공식적으로 MOU를 맺거나 업무 위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내용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필요

라. 질병관리청 소관

1)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대응 》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에 대하여 급여 등재를 확정한바 제약사와 협의하여 치료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라게브리오는 급여 등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치료제 수요 충족 계획이 충분하지 않아 물량 확보 계획과 그 전까지의 치료제 비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필요

○ 2020년 10월 코로나19 증후군 질병코드 신설 이후 27만여명의 환자가 진단을 받았으나 실효성 있는 환자 지원 체계가 부재한 상황으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유증 대응 방안 필요

○ 현재 코로나 예방접종 권고대상이 65세 이상과 일부 고위험군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 대상 확대 필요

○ 독감의 경우 80% 접종률을 토대로 매년 1,000만도즈 이상의 백신을 준비하는 만큼 코로나19 백신도 중증화 예방을 위한 접종률 관리와 충분한 백신 물량 확보 필요

○ 최근 3년간 65세이상 고위험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평균 40.9%로 코로나19 백신의 낮은 접종률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저조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제고 및 백신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폐기물량 절감을 위한 노력 필요

○ 올해 7월 코로나19 입원환자가 5배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바 앞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수요를 정확

하게 예측하여 반복적으로 국민들이 감염병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 필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

○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 9만 9,461건 중 보상·지원한 사례는 2만 4,781건이고 인용률이 25.1%로 지난 10년간 다른 백신의 피해구제 비율 49.8%의 절반에 해당함. 백신에 대한 국가 정책을 신뢰한 국민 보호를 위하여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이행과 피해보상 기준에 대하여 적극적인 판단 필요

○ 인과성 질환 확대, 각종 위로금 등 피해보상 및 지원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근본 대책으로 미흡하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 마련 필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 중 보상 및 지원 인정비율이 낮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강화 필요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이 의심되고 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 등에 보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필요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4-2 사례들 중 불합리한 판단 사례가 있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통한 재검토 필요

○ 코로나19 접종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주장해 왔으나 여전히 근본적 대책이 미흡해 보임. 다음 팬데믹을 대비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특별법 제정 또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 마련 등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국가예방접종 》

○ 2023년 대상포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897억원으로 추정되고, 미국 영국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대상포진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있는바 대상포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고령층에 대한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포함 필요

○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지원되는 무료 독감백신은 일반 독감 백신으로 고령층 독감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전문가들은 고면역원성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변경 필요

○ 국가예방접종 사업 중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하고 있는 HPV 2·4가에 비하여 예방범위가 넓은 HPV 9가(가다실) 국가예방접종 도입 필요

○ 국가예방접종사업에 HPV 남아 접종 확대 필요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어린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초고령사회에 맞춰 성인 예방접종 패키지 도입 등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사업 개선 필요

○ 수두 백신 2차접종(부스터샷) 등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접종에 대한 이상반응 관리 체계 개선 필요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는 산후조리원의 신생아들 사이에 집단감염 사례가 빈번하고 독감보다 사망률이 높으며 우리나라는 어린이집 등 집단 양육의 특성이 있어 영유아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도입 필요

○ 백신 접종 시 이상반응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 필요

○ 고가의 백신에 대해 가격을 통제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식 등 국가예방접종 지원방식 변경 검토 및 예방접종 도입 소요시간을 단축할 도입체계 개선 대책 필요

○ RS바이러스는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고령자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같은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고 국내 발병 현황이 과소 집계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RSV 발병 추세 파악 및 RSV 백신 도입 필요

○ 국민에게 백신 선택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백신 접종의 장점뿐만 아니라 후유증,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전달 필요

《 백신개발 》

○ 21개 국가예방접종 백신 중 순수 국내 제조 가능한 것은 6개에 불과하고 2023년 11월 장티푸스 등의 백신 공급중단 사례에서 보듯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자급화 필요

○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을 통한 기술 개발에 대해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마련 필요

○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확보된 성과들이 연구 역량 강화 및 넥스트 팬데믹 대응 등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향후 팬데믹 대비 》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지연 및 의료대응체계 구축 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 등 개선 필요

○ 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이 지연되고

계속되는 이월과 불용으로 집행률이 2.2%에 불과하므로 예산 집행 정상화를 위한 계획 수립 필요

○ 넥스트팬데믹 대비 하수기반 감시체계의 고도화 및 WHO가 선정한 질병X, 고위험군 병원체들을 하수기반 감염병 관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 필요

○ 넥스트팬데믹 대비 강력한 위험군으로 선정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비 계획 필요

《 생물테러 대비 》

○ 북한의 오물풍선이 생화학무기로 활용될 수 있어 미국의 탄저 대응 시나리오를 통한 백신물량 확보처럼 탄저백신 비축 및 관련 예산 확보 필요

○ 북한은 두창을 비롯한 세균, 바이러스 등 오물풍선을 이용한 생물테러 가능성이 있어 바이오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두창백신의 안정적 비축 및 관련 예산 확보 필요

○ 생물테러를 대비하여 두창백신의 충분한 확보와 원활한 3세대 백신 개발을 위해 2025년도 예산 증액 필요

○ 탄저균 등의 생물학전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정량의 탄저백신 비축 필요

○ 유효기간이 만료된 물량에 따라 2024년 두창백신 구입 계획을 마련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최신 세대의 두창백신으로 전환 필요

《 항생제내성 및 의료감염 대응 》

○ 항생제 내성률이 OECD 평균보다 높고 다제내성균의 내성률도 증가하고 있어 다제내성균 감염증 관리를 위해 다인실 위주 입원 환경과 간호 인력

이 부족한 우리나라 의료환경의 현실 등을 반영하여 환경과 인력, 항생제 사용 행태 등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필요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년~2027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관련감염 대응체계 추진 현황 점검 및 계획 수립 필요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신고 건수가 2019년 1만 5,369건에서 지난해 3만 8,40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CRE 사망신고 건수가 2019년 203건에서 지난해 63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올 상반기에도 439건이 신고된 바 증가원인 파악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강화 필요

○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미설치 의료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 2024년 항생제 내성 관리에 사용되는 예산이 17억원에 불과하므로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예산의 추가 확보 필요

○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되면 입원 기간의 장기화, 사망률 증가 및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하므로 항생제 내성균 확산 억제를 위한 과학적인 감시체계 강화를 위하여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에 요양병원 등 만성기 병원 참여 확대 및 요양병원 등에서의 요로감염 항생제 관리 강화 필요

《 만성질환 대응 》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건강 불균형 해소 사업이 2025년 3단계임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재원 마련이 어려운 여건으로 예산 확보 필요

○ 국가건강검진 항목 근거평가가 완료된 나이 관련 황반변성(안저검사), 치주

질환(파노라마검사)이 신규 검진 항목 도입이 결정되지 않은바 황반변성은 65세 이상 인구에서 실명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질병이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파노라마 검사가 필요한 바 검진 비용의 적합성과 효율성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검진 적용 확대 검토 필요

○ 평상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면 질병 부담뿐만 아니라 감염병 유행에도 중요한 대비 전략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 만성질환 및 질병 부담 감시·관리 체계의 구축 예산 확보 필요

○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으로 명시된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40.9%로 성인 5명 중 2명이고 2023년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료받는 환자 수가 304만명이며,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복합 만성질환 환자 수는 140만명에 이르고 있어 이상지질혈증의 높은 유병률 및 증가 추세 개선을 위한 복합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최근 10년간 호흡기 알레르기질환의 연도별 1인당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4명 중 1명은 10세 미만 아동이며 65세 이상 고령환자는 14.5%에서 18.6%로 증가하는 등 미래세대와 약자들의 환경성 질환 증가에 따른 진료비 부담 및 만성질환 대책 마련 필요

《 희귀질환자 지원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소득재산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하는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비 지출로 인한 부담은 성인과 소아간 구분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 성인 및 소아 구별 없이 동일한 소득 기준 적용 필요

○ 희귀 난치성 질환은 희귀질환으로 지정 받기전까지 환자와 가족들이 보호받지 못하여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큰바 신규 희귀질환 발굴·지정 및 미

진단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강화 필요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진료 접근성 강화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환자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 희귀질환은 대부분(70~80%) 유전성 질환으로 진단서비스는 제한적이므로 조기진단 및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한 전문적 유전상담 서비스 도입 필요

○ 중증 호산구성 천식의 사회경제적 부담, 환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및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질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증 호산구성 천식의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하여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최적화된 치료 환경 구축 필요

○ 희귀질환은 질환의 희소성으로 진단방랑이 발생하고 있으며 조기진단으로 적기에 치료될 경우 예후가 좋아지기 때문에 조기진단이 중요한데, 최근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운영 기간이 약 5개월 정도로 짧고 진단 대상질환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기간을 연중 확대하는 등 지원 강화 필요

○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등 특례를 지원하는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핵심 조건인데 동일한 질환임에도 선천성과 후천성의 구분에 따라 일부만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 산정특례제도 개선 필요

○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은 폐동맥 고혈압 중에서도 치료가 어렵고 환자수가 200명 미만으로 추산되는 희귀질환으로 증상이 유사한 폐동맥 고혈압은 지난해 기준 환자수가 약 2,000명 수준으로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어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나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은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필요

《 성매개 감염병 대응 》

○ 2024년 1월 1일부터 성매개 감염병 중 하나인 매독이 전수감시대상 3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국내 매독 발생 신고와 관련된 매독 감염자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역학관계 파악을 위한 선제적 조치와 대응 필요

○ 4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단순포진바이러스의 경우 늘어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 발생빈도가 상위권(2위)에 속해 있으며 피부와 피부의 광범위한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는데 예방에 관한 홍보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홍보예산 확보 필요

○ 신규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취약군 HIV 선별검사 및 PrEP(pre-exposure prophylaxis: 노출전 예방요법) 시범 지원 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 의료기관 상담 간호사 대상 지원 필요

○ HIV 신규 발생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HIV 예방정책에 대한 계획 및 이행 필요

《 기후변화 대응 》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 최소화, 신종 감염성 질환 대비와 기후변화에 따라 국내에서 증가가 예상되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감시망 강화 등 기후변화 대응 감염병 관리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 감염병 관리 R&D 예산증액 필요

○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와 환경성 질환 진료 인원 4명 중 1명은 10세 미만 아동이고 60대 이상 고령환자의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경우 취약계층부터 위험해질 것이므로 실질적인 국민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종감염병 발생과 확산에

대한 기후 위기 대응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온열질환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 필요

○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예산이 '23년 13억 9,400만원 대비 '24년에 73% 삭감된 3억 7,500만원으로 모기 관련 질병 관리가 우려되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질병 감시 및 예방 대책 강화 필요

○ 온열질환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기반 온열질환 감시체계에서 나오는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에서 파악한 자료간 온열질환자 수가 상이한바 온열질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력하여 예방의 관점에서 위험요인을 찾아낼 수 있는 체계적 대책 마련 필요

《 기타 》

○ 모기 매개체 감염병인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들은 모기를 통해 감염되므로 방역이 중요하며 WHO는 방역 수단으로 화학살충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 매개체관리방법 I.V.M(Integrated Vector Management)을 제안하고 있음. 그 주요내용으로 생물학적 방제, 물리적 방제, 화학적 방제가 있는데, 해충 발생 전 예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생물학적 방제와 물리적 방제를 통해 유충 서식지를 원천적으로 박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친환경적인 유충 방제 대책 필요

○ 노숙인 결핵시설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어 최소운영비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예산 확보 필요

○ 국립검역소 인력 및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우려되므로 긴급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추가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 필요

○ 영국은 위험을 만든 당사자나 계약이나 법적 의무가 있는 목격자가 요(要)구호자에 대해 구조하지 않고 방관하는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한바 우리나라도 심폐소생술 확대 및 제도화 방안 마련 필요

○ 퇴행성 뇌질환인 크로이츠펠츠-야콥병(CJD: Creutzfeldt-Jakob disease) 환자는 매년 약 60여명 수준으로 발생하며, 지난해와 올해 환자 부검을 통한 확진 사례가 없으므로, 부검을 통한 변종 CJD 발생 유무를 확인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CJD 환자 부검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예산지원 확대 등 정책적 노력 필요

○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42.8%를 차지, 노인 진료비 부담을 낮출 노인건강연구와 민간연구소의 지원 및 네크워킹을 위한 국가차원의 법정 국립노화연구소 설립 검토 필요

○ C형간염 검진 확대, C형 간염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과 C형 간염 퇴치를 위한 장기적 계획 마련 필요

○ 5,8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원인 미상의 비감염성 질환 집단발병 대응체계는 미흡한 수준으로 비감염성 질환이라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발병 시 감시와 역학조사 체계 구축 필요

○ 백일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유행 양상 및 역학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감시 네트워크 신설과 강화된 방역체계가 요구되며 실시간으로 감염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는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다른 호흡기 감염병과 유사하여 제대로 진단되지 않아 국내 발병 현황이 과소 집계되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발병 추세 파악과 향후 RSV 백신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망률, 질병부담, 치료기간 등 백신 필요성 판단을 위한 검토 필요

○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 필요

○ 소아희귀난치성 안질환, 소아백혈병, 소아암 등에 대한 대안인 세포유전자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문제 진단과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 강화 필요

○ 2024년도 백일해 2급 감염병 발생인원이 2만명으로 작년 292명 대비 약 69배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백일해 유행 상황이 발생한바 급증한 백일해 감염병 관리 대책 필요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목적으로 지난 3년간 기본조사설계비 등으로 96억 6,800만원을 편성했으나 매년 집행되지 않아 국립심뇌혈관센터 관련 철저한 사업 관리와 예산 집행 개선 필요

○ 성조숙증이 2014년 9만 6,733명에서 2023년 25만 1,599명으로 급증하고 있는바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각종 질환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 필요

2) 대한결핵협회

《 결핵 관리(예방, 진단, 치료 등) 》

○ 2022년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결핵발생률이 26년간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해 오다가 2022년 2위로 하락했으나 심각한 수준이고 취약계층 돌봄시설 종사자의 잠복결핵 감염률이 40.8%에 육박하고 있으며 2024년 및 2025년 잠복결핵 감염 검진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 책정과 결핵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젊은 세대의 잠복결핵 현황 및 전북·전남 지역 노인 결핵 신환자 발생률이 높은 이유를 분석하고 결핵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대책 마련 필요

○ 돌봄시설 등 집단종사자의 잠복결핵검진 예산 삭감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및 결핵 예방·치료 대책 마련 필요

○ 최근 대한결핵협회 자체예산 및 정부출연금 축소로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 목표인 2027년까지 결핵 발생률 10만 명당 20명 이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추가적인 정책 강화, 협회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결핵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다제내성결핵 환자수가 2021년 317명에서 2023년 551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다제내성결핵은 치료가 어려워 다제내성 결핵 예방을 위한 추가 재정 확보, 다제내성결핵 환자수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크리스마스 씰 모금 및 홍보 》

○ 대한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 씰 재원을 통해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결핵 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나 씰 판매의 변동성으로 인하여 재정 안정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크리스마스 씰 모금 축소에 따라 자체예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 및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활동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서면)

《 기타 》

○ 대한결핵협회 사이버연수원 해킹으로 의무교육 대상자 1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7.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가. 보건복지부 소관

1) 보건복지부

(1) 기획조정실·인사과·감사담당관

○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의 간호조무직 및 의료기술직 등 소수직렬의 하위 직급 편중현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의 경우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28% 사업이 미흡판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정밀한 진단 및 전략적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위원회 위원 구성시 노동자 대표를 전국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의 추천인을 선임할 것

○ 보건복지부 소속기관들이 성비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최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징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질의

○ 보건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할 것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공공 모바일앱 일부가 앱 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아

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므로 앱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도록 개선할 것

○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해 의료기관 보안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

○ 권익위에서 통보받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징계처분 관련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 복지정책관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직원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 내년 기준 중위소득 책정 시 산정 방식 원칙 준수 및 임기 내 생계급여 선정 기준 35% 상향할 것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택연금 월지급금 반영 제외 등 방안을 검토할 것

○ 청년층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수급 해소방안을 검토할 것

○ 비수급 빈곤층 지원을 위한 완충적 복지제도를 검토할 것

○ 복지시각지대에 대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소득이나 재산 기준 완화를 검토할 것

○ 자활사업의 탈수급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열악한 지역에 지원이 확대되도록 할 것

○ 근로능력평가 비용 지원과 평가 결과 이유 공개할 것

○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을 재검토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마련할 것

(3) 복지행정지원관

○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위기가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지원할 것

○ 통합사례관리사 직무 열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처우개선 할 것

○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 마련할 것

○ 고독사 대책 및 생애주기별 예방 정책 마련할 것

○ 고독사 통계에서의 고독사 여부 판단기준을 명확화하고 중앙과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할 것

○ 사회복지관 인력기준 준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자체 모니터링 및 인력기준 준수 권고 조치할 것

○ 노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해 정부 역할 강화 및 지원 방안 마련할 것

○ 복지멤버십 가입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중단 없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개발자 수급 계획을 마련할 것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4차 재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참여했던 기업들 관련 실적을 정리하고, 추후 수주업체 선정 시 히스토리를 반영 할 것

(4) 연금정책관

《 연금개혁 》

○ 제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 결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고령자 노동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연금급여액 삭감 우려를 검토할 것

○ 국민연금 연령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에 따른 세대별 형평성 저해에 대한 우려와 기타 복지제도와의 관계성을 검토하고 홍보할 것

○ 지속가능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과 연금개혁의 성격을 고려한 국회 차원의 논의 기구 구성에 참여할 것

○ 연금개혁안 준비 과정에서 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한 사례가 없음에도 FGI와 무관한 출입기자단 설명회, 의원실 토론회, 토크콘서트 등을 FGI 사례로 제시한바, 투명하고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여론수렴 과정을 구성하고 신뢰성·타당성을 높일 조사방법을 마련할 것

○ 국민연금제도 중심의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

○ 군복무·출산크레딧 사전에 적용하고, 일반회계 비용부담을 확대할 것

○ 저소득 지역가입자 및 중소기업 대상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연금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

○ 연금개혁 추진 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시할 것

○ 제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연금개혁 공론화’의 방법 및 결과의 한계를 고려하여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검토할 것

《 기초연금 》

○ 기초연금 급여액의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타당성을 검토할 것

《 국민연금 》

○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있어 내국인-외국인 간 역차별을 방지할 것

○ 청년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

○ 건강보험 피부양자 동성부부 인정 판결 취지 및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연금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

○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할 것

○ 외국인 반환일시금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제도 폐지 등 정비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조기노령연금 수급 원인을 분석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빈곤 대책을 마련할 것

○ 여성의 출산크레딧 수급 기회를 확대할 것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 정부 당연직 위원 참석률을 제고할 것

○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할 것

○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회의 임차료 예산을 절감하고, 적정 규모를 계상할 것

○ 국민연금기금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국내주식에 투자할 것

○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기준 도입 등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

○ 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할 것

○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재정안정화·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선제적인 국고 투입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민연금공단 미수납 수탁사업인건비(약 1,414억원)에 대한 국가재정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것

○ 대표성 있는 노동자 단체 추천 위원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포함할 것

○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의 역진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이나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추가 지원할 것

○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확대할 것

○ 국민연금공단 복지사업을 다변화·확대할 것

○ 노후긴급자금대부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연금기금 적자에 대한 국고 투입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와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에 국고 투입을 집중할 것

(5) 인구아동정책관

《 저출산 및 인구위기 대응 》

○ 저출생 완화를 위해 기업 등 사회 전반의 참여 및 정부 차원의 혁신적인 지원 필요, 검토하여 의원실에 보고할 것

○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유례없는 대책이 필요하므로 복지부와 향후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

○ 인구위기 대응 방향 관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개정하는 「인구정책기본법」을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 》

○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발굴·지원정책 마련할 것

○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상을 13세부터 34세 이하에서 0세부터 전주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가족돌봄아동이 현행 보호체계에서 잘 발굴·지원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인공임신중절 관련 》

○ 안전한 임신중지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하여 검토할 것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 여성건강·자기결정권과 태아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법·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

○ 성·피임 및 임신중절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강화하고 개정된 법률에 의거, 임신중절 관련 보건의료적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

《 모자보건사업 관련 》

○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할 것,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본사업 전환 및 전국 확대할 것

○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이용자 증가 추세 감안하여 산후조리원 관리·감독강화에 노력할 것

○ 저출생 시대 적절한 산후 돌봄 정책 마련할 것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

○ 위기임산부 상담 결과 통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

○ 보호출산 시 직접 양육을 하는 것에 대한 분류 및 생부의 입양취소 청구 확정 시에도 보호출산을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친부의 양육 기회 박탈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 임신 중단에 대한 상담 내용도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할 것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홍보 예산 확보 및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의 인력 충원 필요성을 검토할 것

○ UN 아동권리위원회 5,6차 최종견해에서 베이비박스 금지할 것 권고한 바, 유엔 7차 심의 앞두고 당사국으로서 대응방안 보고할 것

○ 상담 유형 통계 항목에 임신중지 관련 항목 포함할 것

○ 장애가 있는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대리 신청 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는 당사자 중심의 상담 지원을 위하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의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를 통한 보호출산에 장애인개발원이 시행하는 의사결정 지원 방안 연계 등 방안을 검토할 것

○ 보호출산제 관련 숙려기간을 2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신고 아동복지시설에는 인권보호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있고 학대 예방 교육도 실시되고 있으나 베이비박스 등 불법 미신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바, 그에 대하여 조치할 것

《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

○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부실 문제를 정확히 규명하고, 입양기록물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기록물 원본에 면 표시 누락, 백지 스캔, 기록물 전산화 지침 미준수, 용역·감리업체의 선정 및 부실한 일 처리 등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 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 (구) 중앙입양원 및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할 것

○ 향후 기록물 전수 이관, 전산화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

○ 과거 한국 입양기관이 작성한 입양 관련 서류 허위 사례 등 지적 등을 감안하여, 해외입양인의 알 권리 침해가 없도록 입양인의 정확한 기록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의 기록물 원본에 면표시 누락, 백지 스캔, 기록물

전산화 지침 미준수 등 문제발생 용역업체에 비용 환수, 수사 의뢰 등을 포함하여 철저한 시정조치를 할 것

《 아동보호자립 관련 》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특별지원시설 퇴소자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위기가구발굴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위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삼성 희망디딤돌' 사회공헌 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 운영예산 국비 지원을 검토할 것

○ 아동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점검 및 급식카드 단가 현실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현재 30인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종사자 배치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상담지도원, 자립전담요원 등 전담인력 배치를 고려할 것

○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관되어 있는 아동복지시설 예산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보호대상아동들이 향후 자립 가능한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치료를 받거나 최소한의 전문적 초기진단을 받을 전문적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할 것

《 아동학대 관련 》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재학대 아동 가정방문 등 조사절차를 도입할 것

○ 현재 지자체 공무원의 지자체 공무원이 위기 의심 아동 가정을 방문조사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위기 예측 모형을 고도화하여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할 것

○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개정 등 아동학대 사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아동학대 사망사건 조사기구 마련과 관련한 향후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

○ 아동학대가정에 대한 사례관리가 경제적인 지원에만 집중되어, 반복되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관련된 아동보호시스템을 개선할 것

○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 예산 확보 및 쉼터를 영유아 등 연령대별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특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쏠림 현상 및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 배치 방안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장애-아동 간 협력적 대응을 위해 학대 대응기관 협의체를 다시 가동하는 등 연계를 강화할 것

○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

○ 가정방문형 학대 예방 발굴 사업을 진행할 것

○ 지자체별 인력 수요와 업무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대응 인력을 추가적으로 보강할 것

○ 아동학대 판단 전이라도 개입이 필요한 경우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 아동보호 체계 개편 이후 사례관리 업무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직무상 환자와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약사 및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할 것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와 대응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재학대아동 보호를 위하여 '원가정보호원칙'에 실질적 안전성 보장 추가 및 「가사소송법」상 가사조사절차에 준하는 조사절차 도입을 검토할 것

《 기타 》

○ 2019년 UN 아동권리위원회가 수용자 자녀의 권리 보장을 권고한바, 접견 원활화 및 토요아동돌봄접견 연령의 19세 상향 검토를 위하여 법무부와 협력할 것

○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지역별 임금격차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아동센터의 부족한 운영비 확보 방안 및 특성별 프로그램비 감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018년부터 동결된 아동수당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적 가치를 보전하도록 노력할 것

(6) 노인정책관

《 노인복지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각종 수당 및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교통비와 통신비 등 예산을 확보할 것

○ 초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을 지원·육성할 것

○ 경로당 급식 확대에 필요한 양곡비 외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 5일 식사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것

○ 다양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인정책관의 조직 확대를 검토할 것

○ 노인 기준 연령의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것

○ 진료예약앱 이용 등과 관련된 노인 대상 디지털 정보역량 강화 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

《 노인인권 》

○ 가정인 노인학대 행위자 중 알콜사용장애 등 심리병리적 질환자의 치료 ·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 요양원 등 노인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인학대사건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을 마련할 것

《 노인일자리 》

○ 취약노인 참여율이 높은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꾸준히 확대하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개발할 것

○ 노인일자리 종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운영안내 지침서의 개선을 모색할 것

○ 노인일자리 확대에 따른 전담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 계획(고용안정·임금지급기준·배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노인일자리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발생률이 증가했으나 통계 관리가 미흡한데 안전사고 관리대책과 통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노인일자리 중도포기자 감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활동역량과 연계 일자리가 일치하도록 참여자 신체능력 평가지표 등 선발기준을 마련할 것

○ 노인일자리 위험성 평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유형별 안전전담인력 배치할 것

《 치매 관리 》

○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용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발급 업무 때문에 치매안심센터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으므로 도로교통공단과 재논의 할 것

○ 치매 용어 개정,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 등 치매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할 것

○ 치매공공후견인 제도의 미활성화 원인과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성과지표 개선 등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치매 질병코드의 세분화 및 치매 관련 새로운 통계 산출 필요성 검토 등 선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치매 중증화 억제 대책을 수립할 것

《 지역사회통합돌봄 》

○ 교육강화 등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제정법(장애인 등 포함)에 따른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우수사례를 확산할 것

○ 통합돌봄 시범사업 모니터링·평가를 통하여 상시적인 통합돌봄법 시행 준비 체계를 검토할 것

《 장기요양보험 》

○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 관련, 동일한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만 반영하는 현행 기준에 대해 전체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시간을 하루 최소 5시간 이상 보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근속장려금 금액 인상 등을 검토할 것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안정적 운영 및 역할·기능 강화, 대체인력지원사업 추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장기요양요원 지자체 처우개선수당 지급현황을 파악하고, 수당 지원사업을 계획 중인 지자체의 경우 국비와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임에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므로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전국 요양원을 대상으로 노인 격리강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가 격리강박 등 노인학대 시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별로 장기요양 서비스가 부재하거나 지역간 격차 및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시장실패에 대한 국가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적정서비스에 대한 기준 및 목표를 세우고 필요시 공공 요양병원 설립을 유도하거나 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민간 요양시설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

○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방문간호 활성화 방안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 방문간호센터 간 연계성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요양기관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질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 평가 및 컨설팅단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재택의료 제공 의원이 어디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기관명단 게시방안 마련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평가 결과 관련, 재택의료센터 이용 시 기존 의료기관 이용 증가의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기반사업의 연계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장기요양 등급 심사 및 등급 판정 관련 부실심사로 인하여 혜택을 받아야 할 노인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매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적발액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현지조사 확대 및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연도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내는 금액차이가 커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방문의료 제공인력 관련 간호조무사의 교육·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 장기요양 평가시 인건비 지출 기준 미준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반영하고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요양보호사 공급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적극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권리 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장기요양보험 영리법인 확대 관련 시장 독점, 영세사업자 도산, 서비스 질 저하, 공공성 약화, 공공자금 사용의 적절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대책에 대해 검토할 것

○ 요양원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 관련 본래 취지인 서비스질 개선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계획 고지를 이전 정기평가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으로 조정할 것

○ 장기요양보험 국가지원 관련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하는 방식으로 국가지원금을 축소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 “상당하는” 이라는 문구들의 의미가 모호한 바 법률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

○ 배회감지기가 필요한 치매 노인이 배회감지기를 부담 없이 대여 또는 구매할 수 있는 방안과 재정을 통한 보급 확대 계획을 마련할 것

○ 고용노동부의 요양보호사 훈련 과정 관련 자부담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생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전국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확대 및 예산 증액, 운영 기준 개정,

역할 및 기능 강화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요양시설 확충 및 관련 인력 양성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제고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영유아 시설의 노인요양시설 전환 관련, 실태 파악과 시설 전환을 지원하고 요양시설 확충계획 수립 시 반영할 것

(7) 사회서비스정책관

○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누락된 사항(지역 실태파악 및 균형발전, 제공기관 확충, 전달체계 개선, 이용자 권리보호) 반영 수정안 마련할 것

○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및 홍보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젊은 자원봉사자도 늘릴 수 있는 케어뱅크 사업을 활성화할 것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시스템 보안 강화 및 재발방지를 위해 산하기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 기업의 참여 유도, 정부 비축농산물의 효과적 활용 등 푸드뱅크 사업의 기부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지방이양 철회 검토할 것

○ 사회복무요원 기본직무교육 장애인 분야 교육 확대 위해 노력할 것

○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준수율을 개선할 것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를 대면회의 개최 및 심의안건의 확대 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일정 경력이 도달하면 당연 승진하는 제도에 대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검토할 것

○ 사회복지현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대체인력 지원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대체인력 종사자의 정원이 향상되도록 할 것

○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민간 기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복지부의 관리 · 감독을 강화할 것

○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도록 독려하고 표준운영지침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지역 여건에 맞게 종합재가센터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사회서비스원의 주간, 야간 돌봄 등 민간기피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8) 장애인정책국

○ 1형 당뇨에 대한 장애인정기준 신설할 것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관련하여 신규급여 편성 방법 또는 부처별 칸막이 서비스 장벽 제거 방법에 대해 검토하여 장애인 선택권 보장 및 예산집행 효율성을 제고할 것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 일정에 맞는 개편을 할 것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로 포함된 이후 국비지원(인력, 운영비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2026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때 전담 인력 급여를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인력이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팀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학대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시설에 두지 않고 지역사회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대구 청암재단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할 것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 상황과 자립지원 상담조사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과 의사소통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자립 의사가 있을 경우 가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자립준비 장애청소년 자립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 등 학대대응협의체를 재가동하여 학대예방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인력증원, 기관운영비, 학대정보시스템 개선, 상근 법률지원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을 증액할 것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약사 및 간호조무사 포함 방안을 검토할 것

○ 베리어프리 장애인 키오스크 공공의료기관 설치 미흡,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 준비 방안을 마련할 것.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할 것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최종견해에 의거 장애인차별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방안을 마련할 것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협약 관련 안건의 적극상정, 전담인력 구성,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정부차원의 개인진정 지원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협약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어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 담당해야 할 협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를 마련할 것

○ 지난 제1차 국가보고서와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따른 최종견해 중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연속으로 권고를 받은바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방안 마련할 것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전담인력 배치 등 정부 내 조정기구 설치·운영에 대한 견해 방안 마련할 것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세부조항 중 우리부 소관과 관련 분야가 미이행 및 부분이행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에 대한 우리부의 이행 방안 마련할 것

○ 이행률 미흡한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계획 미발표 이유 및 향후 계획 마련할 것

○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등의 개정 마련할 것

○ 장애인권리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활용 및 장애인단체 협의체 구성 등 마련할 것

○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설치 실태조사방안 검토할 것

○ 기존 자동차에 대한 주차표지 발급방식에서 사람중심 주차표지 발급방식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것

○ BF인증운영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현실화(인상)할 것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면적 기준 일괄 삭제 검토할 것

○ 장애인거주시설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 강화방안 마련할 것

○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 3급 단일 장애인을 포함할 수 있는 단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 중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판정자도 장애인일자리에 신청 및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수당이나 사업체지원금을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사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 기관 확대를 위해 기관평가 개선 또는 교육지원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활동지원서비스 》

○ 학대 예방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관련 생업지원 등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 보고할 것

○ 관련 단체, 부처, 전문가 등과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생업 중에도 이동이나 신변처리 지원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세부 지침 마련할 것

○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65세 도래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방식 검토하여 개선 방안 마련할 것

○ 서비스 수급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수급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 마련할 것

○ 활동지원급여 중 방문간호를 통해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등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 관련 단체, 부처, 전문가 등과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생업 중에도 이동이나 신변처리 지원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세부 지침 마련할 것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장애인 돌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사회생활 지원을 통한 장애인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 내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아이돌봄서비스를 활동지원과 동시간대에 이용하지 못하게 한 지침을 개선할 것

○ 활동지원 지침의 '특별지원급여의 지원대상'에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에 대한 활동지원을 한 종류로 추가할 것

○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이용자에게 서비스 내용의 정확한 안내 등 활동지원사 권리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할 것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장애인 이동을 지원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위반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활동지원기관에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할 것

○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산급여 급여량을 확대하였으며, 전반적 활동지원 급여량 확대 관련하여 재정 당국과 협의할 것

○ 장애인활동지원사 고령화 및 지역별 격차해소 대책, 수당체계 개선, 근속·경력·교육 등에 따른 지원가산체계 방안을 마련할 것

○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미연계 해소를 위한 가산수당 인상,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가산수당 추가 인상 계획, 활동지원사 미연계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중앙정부 차원의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지원계획과 지방자치단체별 24시간 지원 현황을 확인할 것

○ 대법원 판례는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에서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된다고 해석하여 특례 적용은 신중히 검토할 것

《 발달장애인 지원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나이제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종결을 위한 전이방안을 마련할 것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 서비스 확대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 서비스 본사업 전환 및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것

○ 발달장애인 맞춤 지원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 내실화 및 전담인력을 확충할 것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발달장애인 참여 확대 및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것

《 장애아동 지원 》

○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소득기준 개선을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서비스 단가 관리, 지역별 서비스 단가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 의료접근성 》

○ 국립재활원에서 장애인 수면내시경 검사 가능토록 대책 마련할 것

○ 장애인 감염 취약시설 등에 대한 미래 펜데믹 대응 방안 마련할 것

○ 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관련 사업 신설 방안 마련할 것

○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마련할 것

○ 경관급식 이용 인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경관급식 장애인 영양지원 사업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및 의료적 기능 확보 계획을 마련할 것

○ 장애인 전담창구 설치 대상을 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한정하지 않고 장애인 의료이용 수요, 이용 현황을 고려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 건강검진 당연지정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 충족 방안 마련할 것

○ 장애친화산부인과 확대 방안 마련할 것

○ 장애인 건강검진 이용률 및 구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및 참여를 검토할 것

○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인부담 완화, 편의시설 확충, 서비스 유형 개선 등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연령에 따른 치료기간 연장, 개선수가 적용기관 확대 등 개선방안 마련할 것

○ 대전·강원권(춘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전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 지원할 것

○ 국립재활원 장애인 진료 공백 정상화 방안 마련할 것

(9) 보건의료정책관

《 의정갈등 장기화 관련 》

○ 의대증원 확대 추진으로 인한 공공·지역의료 및 대형병원 인력 부족, 공보의 장기 파견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병원 경영난 해소 방안 마련 및 응급실 뺑뺑이, 중증질환자 진단·치료·수술 연기 등에 따른 국민의 피해 상황 점검·보상 방안을 검토할 것

○ 여야의정협의체에 전공의 단체, 의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전공의의 ‘사직 후 1년 내 동일 과목 응시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 마련 등 조속한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2025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 정책 입안 시 전공의와의 대화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할 것

○ 의과대학 군휴학자 증가로 인한 군의관 수급차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

○ 의사 인력추계 의사결정구조에 대하여 의료계로부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의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의대생 휴학의 제한적 승인, 국가장학금의 합리적 지원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자율성 보장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할 것

○ 의료현장 공백에 따른 업무 과부하로 연구개발이 퇴보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필수의료 및 의료수급 불균형 대책 》

○ 지역·필수·공공의료분야에 우수한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것

○ 2026학년도에 전남지역 의대정원 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의대증원의 대안으로서 의사-한의사 학제 통합 방안을 검토할 것

○ 장기입원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악성 사례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별·진료과목별 의료인력 편차 해소를 위하여 개원의 총량제, 의무복무를 전제로 한 지역의사제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의료기관의 인력 충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대형병원 분원 설립으로 인한 의료 인프라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상급종합병원이 부재한 시·도를 고려하여 진료권역이 합리적으로 재설정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시 지역 의료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및 플랫폼 영업과의 연계 행위에 대해 위법 여부 검토 및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 비대면진료를 통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할 것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재택수령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시 현재 권고사항인 DUR 점검을 의무화할 것

《 의료인력·간호정책》

○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적정인력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것

○ 보건의료인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보건의료인 중앙회에 적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외국의사 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에 대하여 추진 여부 및 구체적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업무별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미진한 업무 추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대리수술, 유령수술 등 수술보조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조치할 것

○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하여는 의료면허 취소를 포함한 면허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여 마련할 것

○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관련 법령 위반 등 중대범죄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전문의 세부 전공이 현장 인력부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소아 세부전문의 배치 현황을 파악하고 양성·관리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중개 플랫폼 실증특례의 중지 필요성에 대해 관련 부처와 논의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

○ 체외순환사 자격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간호법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진료지원간호사 수요 증대 등을 고려한 신규 간호사의 신속한 채용 및 교육을 독려할 것

○ 간호대학 실습교육 예산 확대 및 신규간호사 임상교육·훈련과정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인력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산정배수(4.8)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며, 중증환자 이용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활성화 및 처우개선,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등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유입 대책을 마련할 것

○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 대상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할 것

○ 간병 급여화를 위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시행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할 것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서 중증환자 및 취약계층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범사업을 설계할 것

○ 「의료법」에 임상영양사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 보건의료정책 일반 》

○ 의료기관 진료 예약 어플(똑닥)의 환자의 의료정보 수집·관리 현황 및 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개선할 것

○ 진료예약앱 관련 진료거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

○ 메디스태프 운영상 위법 사항을 점검하고 수사방해, 증거인멸 등의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수술실 CCTV 촬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설치·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할 것

○ 복지지원사업 민간단체가 기부금을 받고 특정 협약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할 것

○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광고 금지 규정 마련 등 의료광고 관리를 개선할 것

○ 자생메디바이오센터 홈페이지 문구의 의료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조치할 것

○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해결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

○ 잦은 소송의 위험에서 산과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할 것

○ 환자대변인 제도 시행시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할 것

○ 신의료기술 관련 시장진입 절차 개선 이후 새로운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사용 시 안전성 관련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의 의료 안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중 영상판독 업무 분리 등에 대해 검토하고 종합적인 품질관리검사 제도 개선책을 모색할 것

○ 음압격리병실 내 소독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것

○ 내시경 소독제 재사용 관련 지침 정비 방안을 강구하고, 내시경 소독 실태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수술환자 감염 예방을 위한 대여 의료기구 감염관리 규정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것

○ 농어촌 지역의 신규 의료사협 설립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

○ 의료기관이 이수하여야 할 법정 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요양병원 인증기준 강화 및 사후관리 도입을 검토할 것

○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금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의료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강구할 것

○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직업환경의학과 역할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선을 검토할 것

○ 의료기관 평가인증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고 발생시 철저한 현장조사와 인증 유지 여부와의 연계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정관 및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환자 권리 보장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방안을 검토할 것

○ 「환자안전법」상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고, ‘환자안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해 부처간 역할 및 협력체계 명확화, DUR 시스템 활용, 사후 통보절차 간소화, 감기약의 성분명 처방제 시범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 요건 미충족 지역 등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동물용의약품 인체사용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장기처방 급증, 의료장비 및 약품 공급업체 대금 결제 지연 등 현황을 파악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

○ 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 현황에 대하여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노동계 위원 위촉시 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것

(10) 공공보건정책관

《 질병 정책(심뇌혈관질환) 》

○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이상지질혈증의 관리 강화할 것

○ 심부전 입원율 및 사망률 감소 대책 마련할 것

《 질병 정책(암) 》

○ 국가암검진 자궁경부암검사에 인유두종바이러스(HPV) DNA 검사를 포함하여, 자궁경부암 예방 및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할 것

○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 확대 및 비흡연 폐암환자에 대한 국가통계 마련할 것

○ 자궁체부암, 난소암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인암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국립암센터 방사선 피폭 관련하여 의료현장의 안전관리 강화할 것

○ 국립암센터 신규환자 진료 축소·제한조치 해제 위하여지원할 것

○ 지방 거주 암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하여 지역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할 것

《 질병 정책(기타) 》

○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증희귀질환 의료안전망기금 등 별도 재원 마련할 것

○ 전체 장애인을 감염병 고위험군으로 인정할 것

○ 기후재난 발생 시 재난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지원 관련 연구사업 등 추진할 것

○ 만성코로나19 증후군 환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도록 정부차원에서 관리할 것

○ 의료대란 관련 사회적 약자인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할 것

○ 한센인 피해자 노후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금 증액할 것

○ 원폭 피해자 추모사업 조속히 추진할 것

《 공공보건의료 》

○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기능이 약화된 국립대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할 것

○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장기 복무할 의료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할 것

○ 의대생 지원신청이 저조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지원대상에 한의대생 포함할 것

○ 공중보건장학제도를 공공의대와 연계하여 실효성 제고할 것

○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사립대병원 지원할 것

○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 관련 지원방안 마련하고, 평가체계 운영을 위한 별도 조직 신설할 것

○ 고위험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분만 인프라 확충할 것

○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구축할 것

《 지방의료원 》

○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부족한 의사 인력 및 의료장비 등 확충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할 것

○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할 것

《 응급의료체계 》

○ 응급의료정상화를 위해 응급의료지도의사에 대한 처우개선방안 검토할 것

○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 등에서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것

○ 중앙응급의료센터 업무에 응급의료기관 간의 업무 조정 기능과 정보수집 권한 명시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원 지정 시 수용 거부할 수 없도록 방안 마련할 것

○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응급실 구분시 쉬운 명칭을 사용하고, 경증환자를 위한 응급실 지정·운영하는 방안 마련할 것

○ 응급환자를 수용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할 것

○ 응급실 폭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경찰청 등과 협력시스템 구축, 정기적 의료환경 안전실태 조사 실시, 보안인력 채용 등 방안 마련할 것

○ 응급실 이송 심정지환자에 대한 저체온치료 의무시행 추진 방안 검토할 것

○ 경증환자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 인상으로 경제적 약자의 응급실 문턱을 높일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할 것

○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중환자 사망을 줄이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수요를 파악하고, 인력 충원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할 것

○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피해자 파악하고 보상 방안 강구할 것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응급의료기관평가기준 완화 적용 및 지원 확대할 것

○ 의료 취약지역을 위한 '응급영상판독 지원사업'의 예산 확보할 것

○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기관화 논의보다 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 현행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선행 검토할 것

○ 응급의료비미수급 대지급사업 성과지표 및 가족상환의무자 관련 규정 현실화하고, 징수 업무 기관 이관 검토할 것

○ 노후화된 응급의료정보망 시스템 장비 교체 방안 마련할 것

○ 권역외상센터의 전원 증가와 관련하여 기능 점검할 것

《 응급이송 》

○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매뉴얼」에 닥터헬기 출동 요청자 기준을 반영하는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할 수 있도록 응급헬기 출동기준 개선할 것

○ 전국에 8개 닥터헬기만 배치되어 있어 경기북부·춘천, 강원영동,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북 등 취약지에 닥터헬기 확대 배치할 것

○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현실화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 구급차 운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GPS 기록의무화 도입, 실무매뉴얼 보강 등 제도적 보완책 강구할 것

○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응급구조사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조치할 것

○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할 것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확대 및 관리 내실화할 것

《 생명윤리 및 연명의료 》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하고, 정책 자문, 권고 등의 기능 수행 필요성과 관련 법제화 검토할 것

○ 의과대학별 시신 기증 편차 해소를 위하여 타 대학 제공 관련 유족 동의, 시체 해부 참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할 것

○ 시신 기증 과정에 대한 윤리적·법적 기준을 확립하고, 표준지침 및 통합 관리시스템 마련할 것

○ 연명의료중단 이행시기 확대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할 것

○ 생애말기돌봄 관련 제도 개선, 양질의 호스피스·연명의료 환경 조성, 조력존엄사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등을 통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할 것

《 혈액관리 》

○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 등 성희롱 관련 피해자 보호조치 및 대응체계 개선 등 조치할 것

○ 혈액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하여 헌혈추진협의회 적극 운영 및 헌혈

예약 콜센터·픽업서비스 활성화 등 수급안정화 대책 마련할 것

○ 노후화된 혈액원 건물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할 것

○ 대한적십자사 헌혈의 집 신설 등 인프라 확대에 따른 충분한 인력 증원할 것

○ 한마음혈액원 혈액 대량 폐기 관련 의사결정 과정 문제점 조사 및 재발 방지책 마련할 것

《 장기·인체조직 이식 》

○ 공공조직은행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기관장 채용절차 진행할 것

○ 미성년자 생체이식의 경우 이식대상자의 뇌사 및 생존자 대기등록이 저조한 상황에 대한 검토할 것

(11) 한의약정책관

○ 첩약 건강보험 상병에 관련해서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제외하고 65세 요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 검토할 것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 등 연구 시 이해상충 배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 할 것

○ 첩약 시범사업 관련하여 한방병원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에 시달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할 것

○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과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인증받은 원외탕전실

의 약침액 생산량, 거래내역 등 자료를 제출할 것

○ 다이어트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황조사 및 성분 공개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 한의원에서 조제되는 약침의 생산과정에서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약침의 허가제 전환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개설을 위해 노력할 것

○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와 정부지원 제도화 계획 마련할 것

○ 난임 시술의 성공률 상승을 위한 한의과·의과 협진 필요성 검토와 이를 위한 국공립의료기관의 역할 수행 등에 관하여 검토할 것

(12) 건강보험정책국

《 건강보험 재정 》

○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따른 의료대란 수습 과정 및 비상진료 등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의 추가적으로 지출된 문제가 있는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비상진료에 투입된 건보 재정에 대해서는 추후 국고로 이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 법정 기준이 매년 미준수되고 있으나 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고지원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건강보험재정이 국고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나 국고지원금을 제외하면 적자인 상황이므로 이를 진정한 흑자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건보재정의 경우에도 매년 5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망치를 매년 보정을 하면서 재정전망을 실시할 필요것

○ 건강보험의 세대간 형평성 및 청년세대의 기여대비 충분한 혜택 부여의 문제를 의제화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전략을 검토할 것

○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 과다 의료이용 관리방안 마련하고 절감된 재정을 중증 진료체계에 투입하도록 수가체계 및 건보재정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

○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선지급 추가 지원 및 상환 유예 등 정부 지원책 에 대해 검토할 것

○ 출산율 감소, 의료 개혁의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가입자 간의 공평한 부과 문제에 관하여 중장기적 재정전망을 수립하여 검토할 것

○ 건강보험의 추가적인 지출 확대 및 재정수지 악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가체계 및 건보재정 개혁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체계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예상수입에서 실제수입으로 변경하는 등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 보청기 판매 또는 보험급여 청구 시 텔레코일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용자 교육에 대해 확인할 것

○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확보하고 건보 재정의 합리적 지출을 위하여

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급여모델 도입이 필요하며 적응증별 약가제도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것

《 건강보험제도 운영 》

○ 부산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에 대해 검토할 것

○ 10~20대 이하 만성질환자의 다제약물 복용자가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 의료쇼핑 등 의료 과다이용자와 보험료를 내고 요양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자동차보험 약침 관련 인증 원외탕전실만 허용하게 된 것에 대해 심평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

○ 건강보험 사업장 보수총액신고 간소화와 관련 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점, 의무부담 대상인지 법령상으로 불명확하다는 점, 신고기간 단축에 따른 업무부담이 발생한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단서 및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것

○ 금융당국의 '보험개혁 2차회의'에서 논의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정보공개 절차 합리화 관련 보험개발원의 건강보험 상병통계 빅데이터 요구절차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현행 절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

○ 행위별수가제 등을 도입하여 필수의료 저수가를 개선하고 OECD 최저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강화가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임신중단 교육·상담 수가 효과 분석 등을 시행할 것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관련 방문횟수 개선, 수가 개선, 가산항목 신설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는 분만정책수가로 의료현장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바 차등지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연속혈당측정기 등 일부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행위에 준하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환자 본인이 휴대하여 사용하는 바 현행 요양비 지급 적정성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것

○ 검체검사 위·수탁기관 간 위탁검사료 할인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재 강화 및 수탁업체가 직접 검사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약물흡착방지 수액세트를 일부 재질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상급병원 정신의료기관 격리보호실 수가는 2배 올랐으나 비강압치료 수가 인상은 미비한데, 비강압치료와 강압치료 수가 인상의 균형을 맞추도록 개선할 것

○ 공익목적 임상연구제도를 개선할 것

○ 신속한 맞춤 항암치료를 위해 표적항암제와 동반진단 의료기기가 동시에 허가된 이후에는 약제의 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동반진단에 대한 신속한 수가 책정을 진행하여 의료현장 도입율을 높이도록 할 것

○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관련, 신청대상이 제한적이고 평가대상에 따라 운영체계가 다르며 자료제출 등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요양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진료의 자

율권을 보장하고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하에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 치과 임플란트 상한금액 조정 관련, 치료재료의 특성, 의료기기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제왕절개 수술에 대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분만에서 제왕절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정책 수립 방안을 마련할 것

○ 노인외래정액제 구간 재조정을 검토할 것

○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 노력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만성질환에 대한 신약이 개발되는 경우 환급형 계약을 맺거나 대체약제의 비교 약가 산정시 최고가 인정 등 약가 우대를 적용하여 신약개발을 활성화 하고, 코리아패싱에 따른 국내 환자의 신약 접근성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중가격제 도입 등을 검토할 것

○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고시와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 급여현황을 참고할 경우 국내 개발신약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퇴장방지의약품 생산 장려를 위해 기존 등재 퇴장방지의약품도 최고가와 동일하게 인상하여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할 것

○ 신약의 혁신가치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신속한 고시 개정을 검토할 것

○ 선진국에 비해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바 제네릭 약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비용효과성 평가결과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신약 접근성을 개선할 것

○ 만성질환 치료제의 신약 개발 활성화 및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검토할 것

○ 사회적 부담이 큰 질환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ICER 임계값 등을 상향 조정 등 필요하며,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등의 방법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항생제 신약 도입에 대한 정부 계획 및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경제성 평가 생략 확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콜린 제제에 대한 무분별한 삭감으로 민원과 추가 분재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허가-평가-협상 연계사업의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영 절차 효율화 및 신속등재를 위한 운영절차를 점검할 것

○ 약제 및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의 경우 신청대상이 제한적으로 평가대상에 따라 운영체계 등이 다르며, 자료제출 등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를 통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의무화 및 위반시 제재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 진료비 부담 경감 》

○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 진단기 등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의료기기 관련 한의사 및 한의의료기관의 활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할 것

○ 신생아 선별검사에 안저검사 등 눈 종합 검사, SMA(척수성근위축증)검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희귀질환자 유전상담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행위분류 책정 및 제도적 지원을 마련할 것

○ 희귀중증질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만성신장병환자 복막투석 활성화를 위하여 복막투석 인센티브 활성화, 복막투석 센터 활성화 등 적극적인 활성화 시책을 마련할 것

○ 첨단 로봇보조수술을 통하여 의료 불평등 개선 가능성, 국민 건강성 보장 강화, 해외 주요국의 급여화 사례를 고려하여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할 것

○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니지만 성인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할 것

○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체투여 급여화에 대해 검토할 것

○ 19세 이상 성인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의료기기 및 소모성재료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검토할 것

○ 패치형 인슐린 펌프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할 것

○ 당원병 환자에게도 당뇨병 환자의 혈당 검사를 위해 지원하는 소모성 재료 및 당뇨관리기기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치과진료 시 전신마취가 필수적이나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큰 편이므로, 비급여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에 대한 급여 적용을 검토할 것

○ 수포성 박리증 관련 특수반창고나 붕대고정장치 등 급여화되지 않은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 확대를 검토할 것

○ 입원환자 식대 수가를 현실화하고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 산정특례 적용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영유아 건강검진(소아과 발달선별검사) 시 동시 진료하는 경우 진찰료 50% 산정 관련 개선할 것

○ 비만 치료의 요양급여 인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 발달지연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할 것

○ 중증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 기간 연장 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등 신기술 보조기기의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를 검토할 것

○ 인공와우의 경우 현재 평생 1회만 급여 적용 가능한 상황인데,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ALK 양성비소세포폐암 치료제 급여확대를 통해 치료비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할 것

○ 이식편대숙주병을 포함한 혈액암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혈액암 치료제에 대한 급여화를 검토할 것

○ 만성콩팥병 환자의 치료제 선택권 보장을 위해 기존 당뇨병 약제의 급여 기준 확대를 검토할 것

○ 소아 대상 희귀질환 치료제·항암제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가능 약제' 조건을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인 베스레미주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할 것

○ 비대성 심근병증 질환 치료제인 신약 캄지오스에 대한 급여화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담도암, 식도암, 말초 T세포 림프종 등 소외암에 대한 신약 급여화 등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환자의 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암 치료제(담도암·위암·폐암·조기 유방암·부인암 등)의 급여화를 검토할 것

○ 당뇨병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 위험분담제 적용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당뇨병치료제 관련 처방의 용이성, 환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하여 계열별 병용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간질성 폐질환 중 폐섬유화증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할 것

○ 소외암 환자의 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면역항암제 등 다적응증 약제에 대한 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포상연부육종 관련 제약사 환급 제한 기간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치료제인 키르루다, 인라이타 조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검토할 것

○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의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 필요방안을 마련할 것

《 자격부과 및 징수 》

○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대비 받는 급여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차이가 꾸준이 벌어지고 있는 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을 원활하게 조달해 함께 사용하며, 위험 분산을 통해 사회연대를 이룰 수 있도록 공정한 부과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일정 소득 기준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외국인 일용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내 체류 중국인에 대한 건보 수급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중국 체류 한국인의 의료보험 보장 현황을 조사한 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군필자인 재외국민의 경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요건 적용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바로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관리료 환수와 관련하여 현장상황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환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향후 다른 팬데믹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

《 상병수당 》

○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에 대비하여 최적의 모형 설정 및 정책효과 분석·검증을 위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하도록 할 것

○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경우 제한적인 대상자 범위 및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바, 시범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상병수당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대한 복지부 보도자료의 오류를 시정하고 ILO 협약을 포함하여 상병수당 사업 전반 점검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일정이 기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되었는데, 정부가 의지를 갖고 도입시기를 다시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상병수당 급여 지급수준을 최저임금 이상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

(13) 필수의료지원관

○ 비급여 권장가격 또는 비급여 표준 수가 등 비급여 진료의 가격·범위에 대한 관리장치 및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

○ 의료쇼핑 및 도덕적 해이 발생과 같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제주도에서 현재 제주형 건강 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차의료 강화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공익참여형 민간병원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가칭 지역우수병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프라 및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민간중소병원 노사 공동제언을 검토할 것

○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기피 및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개원쏠림에 대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운영 관련 배후기관 지원강화 및 소아전문관리료 산정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할 것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하여 민간보험사가 이를 환수해 가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비만치료제 등 국민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비급여 약품에 정부의 관리를 강화할 것

○ 비급여 보고 대상기간 확대, 비급여 표준코드 명칭 사용 검토, 가격정보 제공 방식 다양화 등 비급여 보고·공개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의료기술재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낮은 비급여 기술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에 대해 검토할 것

(14) 건강정책국

《 건강정책 일반 》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노력할 것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으로 영양사를 배치하고 방문영양서비스를 강화할 것

○ '25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예산을 확보할 것

○ 의사배출 급감, 일반병 입대 증가, 공보의 및 군의관 입대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대책을 마련할 것

○ 공보의 처우개선과 복무기간 단축 등 근무조건 개선에 대해 국방부 등과 논의할 것

○ 섬 지역 병원선이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할 것

○ 진료권에 기반하여 공보의 배치기준을 재검토할 것

○ 내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군의관이나 공보의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개정 시 의견수렴 절차를 반영할 것

○ 복지부와 질병청의 비만 판정 BMI(체질량지수=몸무게(kg)/키의 제곱(m^2)) 기준을 통일할 것

○ 국가 차원에서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 영양사 보수교육 매년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할 것

○ 제2차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 마련할 것

○ 영양실조 방지를 위해 연령별·성별·소득분위별 종합대책 마련할 것

○ 소아·청소년·청년 등 다양한 당뇨병 유형 환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나의 건강기록' 앱에서의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 유출 및 오용 방지,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 만성질환 관리 》

○ 만성질환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 운동실천율, 건강검진율

을 제고하는 등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를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할 것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 결과가 적절한지 확인하여 본 사업 전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향후 주치의제 사업 중심으로 모형을 개선할 것

○ 성과 인센티브 마련 등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모형을 개선하고, 질병청의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과의 포괄적 연계 방안을 검토할 것

○ 중증 호산구성 천식에 대한 질병코드를 신설할 것

○ 기존 고혈압, 당뇨병 외에 만성폐쇄성폐질환 대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

○ 만성폐쇄성폐질환 대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케어코디네이터의 고용을 활성화할 것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고혈압, 당뇨와 함께 이상지질혈증에 대하여도 관리할 것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에 만성콩팥병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중위생 》

○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숙박업소의 적법성 검토 의무 부과 및 미신고 숙박업 중개 시 처벌 근거를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예정인바, 이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 공유미용실 관련 거대자본이 골목미용실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하여 관련 단체와 대화하여 검토할 것

《 문신 제도화 》

○ 문신 제도화 관련 이해관계자 이견 조정 및 의료계 갈등에 대해 국회와 협조할 것

○ 문신 제도화 관련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고 현장의견 수렴할 것

《 건강검진 》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출장검진 대상 확대를 검토할 것

○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 도입을 검토할 것

○ 영유아 건강검진과 진료 동시 진행 시 건강보험 50% 적용의 문제점을 검토할 것

○ 국가건강검진 중 골다공증 검사 대상자에 72세 여성까지 확대를 검토할 것

○ 저인산효소증 조기 발견을 위한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개선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 폐결핵 검사 등 비효율적 국가건강검진 체계 개선을 위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국가건강검진제도의 통합을 검토할 것

《 음주폐해예방사업 》

○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경고문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온라인상의 불법 주류 광고 규제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청소년 보호를 위해 OTT, 유튜브 등 온라인 음주 콘텐츠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내 음주폐해예방팀을 센터로 격상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주류 용기(술병)에 표기하고 있는 과음에 대한 경고 문구 개정을 검토할 것

《 금연정책 》

○ 가향담배 규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법안 국회 발의 시 협조할 것

○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전자담배기기의 흡연 경고그림·문구 표시 관련 법 개정에 협력할 것

○ 흡연 행태가 연초 외에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으로 다양해진 만큼 금연지원사업의 변화를 모색할 것

《 구강건강 》

○ 융합형 치과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지원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장애인 치주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

《 공유미용실 관련 》

○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공유미용실 허용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대형 공유미용실로 주변 영세 미용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련 단체의 우려와 관련하여 충분히 소통할 것

《 기타 》

○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 단체 현황, 단체별 의무교육 실시 현황, 단체

및 교육별 의무교육비 금액 및 교육비 책정 근거, 의무교육으로 발생한 단체 수입 지출 관련 규정 및 지출 가능 범위, 의무교육비를 단체의 임대료 및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단체 입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정리할 것

(15) 정신건강정책관

《 정신건강정책 일반 》

○ 심도 있고 면밀한 정신건강정책 수립 논의 등을 위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활용할 것

○ 정신질환자 절차조력 관련한 법안(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된 만큼 사업의 전국 단위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

○ 국립정신병원 정신과전문의의 정원 충원률이 낮은바, 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선 》

○ 사법입원제도를 포함한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

○ 입원적합성심사를 대면조사로 전환, 현행 보호입원과 동의입원 제도를 재검토하여 비자의입원을 행정입원 제도로 통일, 정신질환자 권익옹호체계 구축 등 방안 마련할 것

○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시 국회, 당사자 및 가족, 의료계, 법조계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것

《 정신의료기관 치료환경 개선 》

○ 정신의료기관 보호사 직종에 대한 자격과 업무 규정, 교육 및 훈련 등 개선 방안 마련할 것

○ 급성기 병동 및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인력 기준 강화 추진 경과 제출할 것

○ 정신응급 대응 인프라를 확충할 것

○ 대학병원·종합병원 병상 부족, 지역사회 환자관리 서비스 미비 등 정신의료 체계 개선할 것

○ 정신의료기관의 비강압치료 매뉴얼 개발·교육, 수가 보상 등 비강압치료 도입 방안을 강구할 것

○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관련 정신장애인 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격리강박 실태조사에 당사자를 포함하고, 구체적인 격리·강박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 정신의료기관의 중간 현장조사 실시 및 평가 주기 명확화 등과 같은 평가 및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 격리·강박 시행 관련 전문의 대면진료 과정을 명시하는 관계법령이나 규칙 등 개정과 수행인력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동료지원쉼터 》

○ 일시적 정신과적 위기상황시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공간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동료지원쉼터 개소당 단가 확대 등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정부 주도 동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정신재활시설》

○ 만성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재활과 생활을 돕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 심리상담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별 편차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마음건강 문제가 질환으로 심화되기 전 조기개입 및 예방이 중요하므로 정신건강 위험군의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 심리상담 인력 자격, 지원대상자 기준, 서비스 유형 쏠림 등에 대해 검토할 것

○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 지원대상자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 심리상담 인력 자격 및 적정 인원 확보, 제공기관의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에 대한 기준을 검토할 것

○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비의료행위로서 심리상담의 법제화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원체계 》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증진 및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노력할 것

《 마약류 등 중독자 치료지원 및 기반구축 》

○ 마약 중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보건복지부)와 한걸음센터(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운영 중복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것

《 자살예방정책 일반 》

○ 자살을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하고,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를 국으로 격상시켜 보건복지부 내 새로운 실을 신설할 것

○ 통계청의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시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를 동반한 중증 우울증 질병 코드를 신설하도록 협조할 것

《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

○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 등 자살유발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자살예방서비스 》

○ 심리부검 면담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낮은 면담 시행률에 대한 실태조사 등 자살 유족의 심리부검 면담 시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지역사회 연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6) 보건산업정책국

《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 》

○ ‘통합의료지원사업(R&D)’ 연장 필요성을 검토할 것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총사업비가 삭감되는 등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바, 대규모·장기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사전 기획·준비를 철저히 할 것

○ 의사과학자 체계적 양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것

○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것

○ 돌봄 제공자 중심의 돌봄로봇 연구과제를 확대할 것

○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률을 제고할 것

○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지원 성과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산업 육성·지원 》

○ 국내 제약사와 외국계 제약사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체계를 분리할 것

○ 제약 연구개발 투자유치와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하여 리베이트 근절 취지와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및 평가절차를 개선할 것

○ 화장품산업 육성사업의 예산 불법 전용 재발 및 대기업 집중 지원 방지에 유의할 것

(17) 첨단의료지원관

《 의료정보정책과 》

○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모색할 것

○ 만성신장병 환자 복막투석 시범사업을 '복막투석환자 수를 증가'할 수 있는 틀로 바꾸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

○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하여 제도 보완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Voice 플러그인 개발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할 것

《 재생의료정책과 》

○ 유전자·세포치료센터 추진 계획을 모색할 것

○ 유전자·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의 고비용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소아 희귀난치성 환자들을 위한 유전자·세포 치료 임상시험을 위한 국내 바이러스 벡터 기술 개발 및 CMO 인프라 확충 관련 정부 정책 및 입법 보완 방안 마련할 것

○ 유전자·세포 치료 분야 원천기술을 가진 대학병원 교수들이 고비용과 행정력 부족으로 인해서 임상시험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첨단재생의료 분야 기초연구에서 임상시험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

○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25년 사업 예산 증액 필요성을 검토할 것

(18) 의료개혁추진단

○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할 것

○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 지역별 수요에 맞게 병상 수를 조정하는 방식을 마련할 것

○ 의료개혁 관련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

○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 등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의료민영화 여부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

○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관련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지방의료원 및 공공병원의 적극적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

○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제정 시 환자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조항을 마련할 것

○ 의료개혁 추진시 저출생 및 국가소멸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

○ 응급환자 진료 의료진에 대한 충분하고 현실적인 보상을 실시할 것

○ 경증환자의 1차 의료기관 이용 제고 등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시 노동계 현장 조직률이 높은 노동조합의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급여 》

○ 제왕절개 수술에 대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분만에서 제왕절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정책 수립을 추진할 것

○ 의료쇼핑 및 도덕적 해이 발생과 같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진료인원 및 진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것

○ 다제약물 관리사업 관련 현재 시스템상 정확한 정보제공 및 타 의료기관과의 공유가 잘 되지 않고 있으므로, DUR과 연계하여 상담결과와 처방조정 내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다제약물 관리사업 관련 다학제 협업으로 효과가 입증된 병원모형을 먼저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할 것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기관이 40%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역별 참여비율에도 큰 편차가 있음.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간호사 부족문

제를 해결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참여율을 제고할 것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통합병동 상한을 없애고 지역 간호사 지원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간병비 급여화를 검토할 것

○ 간병비 지원사업 관련 시범운영 중인 통합조사시스템이 너무 오래걸려 병상을 오래 비워야하고 탈락률이 높으므로 개선방안 마련할 것

○ 건보 부정수급 및 명의도용 적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건강보험증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사진이 없거나 임의변경이 가능하므로 개선방안 마련할 것

○ 다제약물 관리 사업을 건보 시범사업으로 수행해 왔는데 이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본사업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안을 검토할 것

○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 및 노동자 건강권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할 것

○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 과다 의료이용 관리방안 마련하고 절감된 재정을 중증 진료체계에 투입하도록 수가체계 및 건보재정을 개혁할 것

○ 건보 가입자의 스케일링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국민들의 인식 제고 및 대책을 마련할 것

○ 위험분담제 관련, 의료정보의 비대칭 해소 및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할 것

○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예산과 개인예산제 합산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의료공백 수습에 투입된 건보재정을 약가인하로 충당한다는 의혹에 대해

검토할 것

○ 의료이용 관련 지표 및 데이터를 진료권별로 상세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약사의 환수협상계약 무효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

○ 약제비 지출 합리화 및 건보재정 절감을 위하여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할 것

○ 한방의료 및 한방의약품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는바 한방약품비 현실화 등 개선방안 마련할 것

○ 복귀 전공의의 피해구제 및 심리상담을 위하여 전공의 전담 상담창구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전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목록을 정비하고 자료를 보고하며 신규 비급여 항목이라도 먼저 신고하는 단계적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금연치료지원사업 관련 참여율·이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상담의 전문성 강화 및 금연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설계할 것

○ 10~20대 이하 만성질환자의 다제약물 복용자가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이 아닌 지역 일차의료,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상급종합병원 수가인상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관련, 필수의료 관련 약제 적정 약가 기준 마련 및 약가 현실화를 검토할 것

○ 해외출국 시 의료기기 대여 요양비 환수 관련 폐지방안을 검토할 것

《 진료비 부담 경감 》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제도 관련, 환자들의 관련 문의가 원활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중증난치질환 관련 명확한 지정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할 것

○ 우울증 환자에 대한 스프라바토 치료, 전기경련치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기능적 장애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에 대한 급여기준액을 상향하는 등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를 확대할 것

○ 지르코니아 임플란트의 급여 적용 확대에 대하여 검토할 것

○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의 급여화할 것

○ 포상연부육종 치료제인 키르루다, 인라이타 병용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 할 것

《 건강검진 및 증진, 시범사업 》

○ 폐암 국가 암검진 대상자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 검진항목을 개선할 것

○ 암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층의 수검률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건강검진 항목에 3대 실명질환인 황반변성·녹내장·당뇨병성 망막병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암검진 관련 건보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검진율의 큰 차이가 있는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검진율 제고를 위한 역할이 필요하며, 암검진 수검률과 사망률 간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연구할 것

○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필수장비 확충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출장건강검진 범위를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및 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수검률을 높이고 건강검진 접근성을 제고할 것

○ 검진 시 흉부엑스선 촬영 결과 관련 검진결과서에 정상이어도 폐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부가설명을 기입할 것

○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질환에 골다공증 추가를 검토할 것

○ 저인산효소증, 희귀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영유아 구강검진 및 문진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이 감소추세에 있는바 수검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 주요국의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출 비중을 확대할 것

○ 노년기 질병 조기발견, 만성질환 및 근골격계 관리, 합병증 예방 등에 중

점을 둔 노인특화 건강검진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관련 선정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할 것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경우 낮은 수당액으로 인한 사업실적 저조, 긴 대기기간 등의 문제가 있었는바, 시범사업 대상 범위 확대, 급여수준 인상, 대기기간 단축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요양기관 》

○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율 제고, 환수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특사경 도입 및 관련 인원 증원 등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 건강보험료 체납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환수 방안 마련을 마련할 것

○ 산소치료 의료기기에 대한 정기 점검 강화, 준요양기관에 대한 등록,허가 기준 등 관리감독 강화 및 요양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

○ 내시경 소독제 재사용 및 폐기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내시경 소독 실태 관리를 강화할 것

○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율 저조 문제에 대한 제재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아동발달센터 개설 의료기관 관련 현지조사를 추진할 것

《 자격부과 및 징수 》

○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관련 악용사례 방지를 위하여 피부양자 혜택 상한을 두고 상호주의를 도입하며 제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무허가 아킬레스건이 수입되어 환자에게 이식된 사건들과 관련하여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소송중인데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보법 개정을 통해 인체조직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근거를 마련하도록 추진할 것

○ 지역가입자의 과도한 재산보험료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할 것

○ 건강보험료에 대한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 전환을 검토할 것

○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적발 강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 운영, 별도 조직 설치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일정 소득 기준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외국인 일용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공단 빅데이터와 복지데이터를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 시 해지일시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를 개선할 것

○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포괄적인 예금 압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연금 체납 징수업무 매뉴얼을 개선하고 건강보험공단 경영평가 징수율 평가에 체납액 비율을 가중치로 곱하는 경영평가 산식을 개선할 것

○ 건강보험료 과오납 및 환급체계를 개선할 것

○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및 납부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결손처분 제도를 개선할 것

○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 관련 분할납부 제도 개선, 결손처분 대상 소득 및 재산 상한선을 올리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장기요양 》

○ 요양보호사 성희롱 피해자 유급휴가비 지원 사업 등 인권보호 관련 사업 실효성 제고 및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하여 인권보호매뉴얼 제작 및 교육, 장기요양기관 평가항목에 관련내용 추가, 수급자와의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시간을 하루 최소 5시간 이상 보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근속장려금 금액 인상 등을 검토할 것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지조사 실시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신속한 수사 및 부당 청구액 환수를 위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질평가, 재택임종 지원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률 저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치매노인에 대한 실종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배회감지기 급여이용 활성화 및 신규 배회감지기 급여제품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장기요양 평가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여부를 평가결과에 반영하고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건보공단 임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들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관련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관행, 강압적인 조사 관행 등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것

《 기관운영, 재정 》

○ 의료대란 대응 과정에서의 건보재정 지출 및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 및 재정 건전성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

○ 비상진료 지원을 위한 적정수준의 보상을 위하여 건보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가체계 개편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보료 인상을 검토할 것

○ 적립금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운용인력 자격기준 상향, 성과주의 보수체계 도입, 투자의 다각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운용기구 독립화에 대해 검토할 것

○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

○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하여 정책수가 등 수가체계 개편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의대정원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관계 추계에 대해 분석할 것

○ 건보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정부지원금을 수입으로 인식하는 현행 당기수지 계산 방식을 개선할 것

○ 검체검사료 할인 관행이 신종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건보재정 부정수급 등에 해당하여 환수조치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고지원 지원시기를 정례화할 것

○ 임직원 성비위 범죄 관련 처분 강화를 위한 징계강화 등 제도개선방안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마련할 것

○ 건강보험재정 횡령 관련 공단 인사규정에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할 것

○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관련 항소심 대응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식약처의 담배 유해성 물질 지정 관련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

○ 예산 불용과다에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방지를 위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강화 및 대책마련할 것

○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민간보험사 개방에 대하여 정보제공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공익에 반하거나 제3자 이익 침해, 개인 식별 우려가 있는 정보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일산병원 의료손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의료공백 및 진료수준 회복시까지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

○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근절을 위하여 제재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고객센터를 조속히 소속기관화 하여 고객센터 상담사에 대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추진할 것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관련 포인트 적립 방식 개선, 사용처 확대 및 한도액 상향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요양원 노인학대 의심사건 관련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이사 임명 대상 기관에 해당함에도 이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개선할 것

○ 일산병원의 적자 문제 관련, 영업수익 적자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 및 운영방식을 도출하는 등 재정분야 연구와 정책 개선을 연계할 것

○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잉급여 기준을 조정하고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 건보공단의 역할 재정립, 직원 역량강화 등을 위한 조직진단을 시행할 것

3) 국민연금공단

《 연금개혁 》

○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방지하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선제적인 국고 투입을 검토할 것

○ 연령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에 따른 세대 간 형평성 저해 우려를 고려하고 그 대안으로 청년세대에 적용되는 크레딧제도 확대를 검토할 것

○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수급액 감소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것

○ 출산크레딧을 사전에 적용하고 일반회계 비용부담을 확대할 것

○ 돌봄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돌봄크레딧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연금개혁 관련 설문조사의 신뢰성·타당성 제고를 위한 문항을 구성하고 적절한 조사방법을 마련할 것

○ '연금개혁 추진계획'이 제5차 종합운영계획과 일관되도록 유의할 것

○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 등 국민연금제도 및 연금개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에 노력할 것

《 보험료·가입·급여 관리 》

○ 저소득 지역가입자 및 청년 대상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육아휴직 납부예외자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시 부담을 완화할 것

○ 제3자의 행위로 장애·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상금 징수율을 제고할 것

○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근로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제도 운영에 있어 내국인-외국인 간 역차별을 방지할 것

○ 1국민-1연금 위한 배우자 간 소득 분할 가입방식을 검토할 것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연금 사각지대와 성별 연금격차를 해소할 것

○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할 것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를 고려한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 기준 및 급여감액률을 하향할 것

○ 연기노령연금 수급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가능성을 사전 안내할 것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제도를 폐지 등 정비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폐지 및 공무원연금과의 형평 제고 등을 통한 장애·유족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성을 강화할 것

○ 중증장애인의 기대수명을 고려한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의 특례를 마련할 것

○ 정년 및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간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초연금 급여액의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개선할 것

○ 반환일시금 지급 관련 분할연금 수급권자 권리 보호를 위한 통지제도를 마련할 것

○ 제4차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분할방식 변경 및 최저 혼인기간 단축 등으로 분할연금제도를 개선할 것

○ 망인에 대한 양육책임 미이행자의 수급권을 제한할 것

○ 상속인의 급여 미청구 문제를 개선할 것

○ 반환일시금 수급자의 연금수급권 취득 방안을 검토할 것

○ 급여환수제도의 징수율을 제고할 것

《 기금운용 》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당사자 및 소송가액을 재검토할 것

○ 인수 후 과도한 구조조정 또는 가맹계약 부당해지 등 반노동·비윤리적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강제동원 일본기업, 석탄채굴·발전산업, 대량살상무기산업 등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 시행 및 투자대상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대체투자를 포함한 모든 자산군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침을 준수하고, 관련 정보의 공시 및 대체투자 사전실사·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직의 처우를 개선할 것

○ 위탁운용사 선정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 기준의 적용을 강화하면서 평가요소에 반드시 포함하고, 선정위원회 회의록·녹취록 작성 등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것

○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회사 기업운영을 내실화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할 것

○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에 대한 책임 있는 투자 비중을 확보할 것

○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및 2단계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관리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

○ 기업 간 합병 등 경영활동에 따른 국민연금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주주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위탁·복지사업 》

○ 청풍리조트 이용률 제고 및 고객만족도·청렴도 조사방법을 개선하여 적자문제를 해결할 것

○ 공단 복지사업을 다변화하고 확대할 것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관련 서류 발급비용 지원을 확대할 것

○ 노후준비지원사업을 확대할 것

○ 노인 및 발달장애인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확대할 것

○ 공단 자료요청권의 신설로 기초연금 부정수급조사 실효성을 제고할 것

○ 노후긴급자금대부제도의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인력을 확대하고 종합조사 전문성을 강화할 것

○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할 것

○ 장애 재판정 시 대면조사 또는 직접진단을 확대할 것

《 기관 운영 》

○ 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할 것

○ 공단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 2인을 포함하는 등 정관 위반사항 관련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연금 홍보활동의 특정 지역 편중 문제를 개선할 것

○ 해외사무소 국외여비 과다집행 및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부실 문제를 개선할 것

○ 기금운용직의 재취업 기준 및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강화할 것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계속 준수할 것

○ 파면 또는 해임된 퇴직자의 퇴직금을 감액할 것

○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확대할 것

○ 공단의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징계 양정을 재검토하는 등 감사제도를 쇄신할 것

○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공단 지사 설립 필요성을 검토할 것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척수성근위축증(SMA) 환자가 급여를 받으려면 18세 이전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록을 제출해야 하여 현행 법령상 환자명부 및 진료기록 보관 연한이 10년에 불과하여 관련 기록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재심사 기준이 짧게 설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한시적 승인 방안 마련, 발병나이 제한 완화, 재심사 기간 변경, 처방용량 제한 개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전립선 암 치료제 등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자동차 보험 약침 급여화 관련 안전성과 형평성 모두 만족하는 약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공익목적 임상연구의 경우 승인률이 매우 높고 일부 의료기관에 집중되고 있으며, 외부 지원을 받은 연구에도 적용되고 있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적 목적 활용여부 확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검체검사 위·수탁 기관간 할인 관행 관련 상황파악 및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

○ 의약품 투여 내역 확인 서비스에 대한 참여율 확대를 위해 사전동의절차 개선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전문병원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충족하기 어려운 바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면제제도 개선안 및 보완책을 마련할 것

○ 담도암, 식도암, 말초 T세포 림프종 등 소외암에 대한 신약 급여화 등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풀리기 문제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 관련 상환의무자 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 관련,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기관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지불능력이 있는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한 상환율을 높이고 제도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도록 할 것

○ 환자경험평가 관련 평가대상 확대, 평가방법 개선, 인지도 제고 및 결과활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한약국 제조 첩약 관련 자동차보험 첩약급여 탕전실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할 것

○ 통증 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부신피질호르몬제 신경차단술 관련 부적절한 진료 후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 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심평원의 병원 평가자료에 따르면 지방소재 병원 중에도 사망률이 낮고 진료비가 저렴한 병원이 많으나 관련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병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진료비 심사 시 진료비가 낮은 병원의 삭감률이 더 높게 나타난 바, 병원별 사망률 및 진료비 정보를 공개하고 진료비 심사체계를 개편할 것

○ 병원평가통합포털 시스템 관련, 21개 의료 질 평가지표와 결과를 공개하고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 등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의약품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마약류 의약품 처방전 작성시 및 직접조제시 DUR 시스템을 통한 점검을 의무화할 것

○ DUR 시스템을 통한 중복점검시 사용기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우울증 환자에 대한 스프라바도 치료, 전기경련치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최근 6년간 병원이 국민에게 과다청구한 진료비가 1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는바,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하여 과다청구가 많은 병원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진료비 확인제도 홍보 강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관련, 간호사 구인이 어려운 의료취약지의 현실을 반영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009년부터 시행중인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모형을 재정비하고 본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

○ 재택의료 시범사업들에 대해 환자가 쉽게 제공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기관 명단 추가 게시 등 홍보할 것

○ 의료이용 관련 지표 및 데이터를 진료권별로 상세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의료기관의 DUR 점검 후 처방변경률과 부적절 약물사용평가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

○ 희귀질환인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환자의 치료제 사전심사 요건을 없애고, 선치료 및 후 심의 및 급여기준에 미부합시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수가인상, 타 직역과의 다학제 팀 구성 등 참여율 제고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효과성이 입증안된 치매외 콜린제제 처방을 억제하는 것을 검토할 것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관련 의료기관간 진료비용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려운 전문용어가 나열되어 있어 이용이 쉽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관련 본인부담금 비율 개선 및 만성호흡기질환 등 대상 확대를 검토할 것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관련 참여의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홍보를 활성화하고 본사업 전환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특수의료장비 등 관련 성능 등 품질과 연계한 수가 도입 및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약제비 지출 합리화 및 건보재정 절감을 위하여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검토할 것

○ 한방의료 및 한방의약품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는바 한방약품비 현실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만성신장병환자 복막투석 활성화를 위하여 복막투석 인센티브 활성화, 복막투석 센터 활성화, 도관삽입수술 수가 현실화 등 적극적인 활성화 시책을 마련할 것

○ 신속한 맞춤 항암치료를 위해 표적항암제와 동반진단 의료기기가 동시에 허가된 이후에는 약제의 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동반진단에 대한 신속한 수가 책정을 진행하여 의료현장 도입율을 높이도록 할것

○ 요양병원 노인 대상 항정신성의약품 오남용 관련 기관방문 심사, 집중 심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에크모 치료 급여 삭감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소아 고난도 수술, 수가 세부분류 등 수가체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가치점수 및 수가환산지수 차등 적용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선별집중심사제도 관련 불분명한 삭감 기준, 일관적이지 않은 심사기준,

무리한 자료제출요청 등의 문제가 있는 바 사전 예방적 심사의 성격에 걸맞은 선별집중심사 제도를 운영할 것

○ 대리수술·유령수술 관련 사례감지 시스템 개발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태를 파악할 것

○ 한약사 조제 한약 관련 심평원의 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심사가 반려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을 개선하고 한약국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검체검사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을 위하여 심평원이 검사료를 수탁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급성 희귀질환인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심의제를 운영할 것

○ 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을 위해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

○ 심평원의 광고 및 홍보와 관련하여 공익성을 제고하고 실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홍보가 추진되도록 할 것

○ 심평원의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데이터를 자사 의약품에 한하여 제약사에 공급하여 수급불안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

○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관련, 신청대상이 제한적이고 평가대상에 따라 운영체계가 다르며 자료제출 등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요양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진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하에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확보,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을 위해서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관련, 유연한 인하율 설정을 통해 제도시행 효과 및 적절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것

○ 자가골수 무릎주사의 건강보험 급여 규모와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검토할 것

○ 담도암 치료제인 임핀지에 대한 급여화를 검토할 것

○ 요양기관의 거짓·부당한 급여청구 규모 축소 방안 마련 및 요양기관의 자체점검을 통한 자율점검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중증 아토피피부염을 위한 치료제 간 교차투여에 대하여 급여 적용을 검토할 것

○ 난임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미미한 상황인바 난임 여성 지원을 위한 경구용 유산방지제 등에 대한 급여화 방안 마련을 마련할 것

○ 행정직 및 전산직의 경우 여성 고위직 비율이 낮게 나타나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성별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인 에브리스디건조시럽의 처방 용량을 최대 64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혈우병 치료제인 헴리브라에 대해 원외처방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처방의 용이성, 환자의 선택권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당뇨 치료제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간 계열별 병용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에 대대 검토할 것

○ 무분별한 초고가의약품 처방은 환자 건강악화 및 건보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초고가의약품 처방행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선별등재나 급여기준에 포함되지 못하는 일부 환자의 약제비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효과 불분명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등재를 재검토 할것

○ 희귀질환, 암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

○ 진료비 심사지침 개선 과정에서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적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할 것

○ 전문심사 청구건수 증가 및 전산심사 적용 품목의 전산심사 적용률을 고려하여 전산심사 영역 확대 및 전문심사 인력 확충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의료과다이용(의료쇼핑)에 따라 건보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마약류 의약품, 방사선 피폭량 과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항암제 병용요법 관련 건강보험 검토 절차를 보완할 것

○ 공직자윤리법상 유관단체 취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실장급 퇴직자에 대해서도 로펌 등에 대한 재취업 관련 정보유출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의심 의료기관에 대하여 현지심사 강화 및 제재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자동차보험 심사조정위원회에 학계 및 정책전문가,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하는 등 인적 구성을 개선하여 운영할 것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위하여 심사 사례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유하도록 할 것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이나 심사 절차의 당사자가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실제 영향을 받는 건보공단 및 교통사고 피해자는 배제되어 있는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실태 점검 및 불공정리스크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암환자 치료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의 차등화로 급여접근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중증·희귀질환 환자 치료제 신속한 급여 적용에 대해 검토할 것

○ 레베르 시신경병증 치료제인 락손의 급여화에 대해 검토할 것

○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중립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약침액 안전성 관련 국토부 협의체 결과가 나오기 전 유예기간 부여에 대해 검토할 것

○ 시신경척추염의 경우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필요시 허가초과 약제가 아닌 정식허가를 받은 치료제를 통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간질성 폐질환 중 폐섬유화증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검토할 것

○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 및 평가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환자경험평가에 대한 인지도 및 응답률 개선, 조사방법 개선, 병원평가 반영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연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비상의료체계 중 과도한 수가 삭감을 지양하고 벤탈 수술에 대한 합리적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사하도록 할 것

○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와 함께 대여 의료기구 감염관리 규정을 제도화하고 임대업자 준수사항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 》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총사업비가 삭감되는 등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바, 대규모·장기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기획·준비를 철저히 할 것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R&D) 확대 위한 제2기 사업을 추진할 것

○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실사용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실사용자를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킬 것

○ 의사과학자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학부과정부터 양성사업을 확대하고, 전일제 박사과정의 대학 기관부담금을 낮추며, 지방 의과대학의 참여를 확대할 것

○ 연구중심병원 기술이전 성과 및 기술이전 후 사업화 성과를 향상할 것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산업 육성·지원 》

○ 고령층 증가 및 실버시장 확대를 반영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지속 지원할 것

○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바이오벤처 신규투자 확대, 펀드 조성, 인재 양성 등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지속 지원할 것

○ 외국인환자 유치 진료과목을 다변화하고,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를 재검토할 것

○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국산 의료기기 사용 비중 방안을 마련할 것

○ 디지털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지속 지원할 것

○ 중국·베트남 등 해외 의료진출 지원사업의 성과를 향상할 것

○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여부 분석 절차를 고도화할 것

○ 자회사 코리아메디컬홀딩스(Korea Medical Holdings) 청산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

○ 혁신 신약의 적정가치 보상을 위하여 약가제도를 개선할 것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개선할 것

○ 화장품분야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확대 방안 및 중국·미국 등 주요 수출 시장 규제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

《 기타 》

○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의 타당성·신뢰성을 확보할 것

○ 공공·지방의료분야 사전예비타당성 조사 연구 기능을 강화할 것

○ 원장 등 임직원의 불요불급한 국외출장을 자제할 것

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일자리 지원 》

○ 노인일자리가 노인 소득 보전, 건강 증진, 노인들 간 소통에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것

○ 빈곤층 노인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것

○ 신노년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근무조건이 탄력적인 일자리를 개발할 것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거나, 2회 이상 참여한 인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

○ 참여자 만족도, 사회 전체적인 수요 공급, 생산성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아이돌봄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것

○ 종사자 1인당 교육수료시간이 부족하고, 경력과 분야별 구분 없이 신규담당자 대상 단일 과정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개선할 것

○ 시장형 사업단 신규 설립 및 사업단 수익 확대를 위해 사업비 인상을 검토할 것

○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활동비를 인상하고 참여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경로당 일자리 참여 경로당에 미등록 경로당도 배제되지 않도록 참여기관 선정 과정에서 충실하게 안내할 것

○ 어르신 식사 준비를 돕기 위한 경로당 일자리 사업을 확충할 것

○ 폐지수집 노인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계획, 일자리연계 및 미참여 어르신들에 대한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최저 생계 생활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활동비를 개선할 것

○ 공익활동형 일자리와의 차별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노인일자리 참여자 보호 》

○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상해·사망 사고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상해보험 등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 노인일자리법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수행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안전사고 예방 역량 강화, 위험성 평가 및 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위하여 예산 확보방안 및 단계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

《 기타 》

○ 노인들의 교육수준, 건강수준, 능력, 의지에 맞는 일자리프로그램 기획 및 기획을 위한 부서 활성화를 검토할 것

○ 노인일자리시스템 ISP 구축 및 정책홍보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

○ 공공요금 감면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수급자가 편하게 공공요금 감면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미추진된 과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할 것

○ 복지멤버십 가입율 제고 및 시스템 개선할 것

○ 차세대 3·4차 재추진 사업 추진현황 및 정보화 사업 전반 점검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 차세대 3·4차 재추진 시 능력 있는 업체 선정 등 철저히 준비 할 것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참여한 컨소시엄 3사와 소송현황, 향후 정보화 사업추진 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가 되지 않도록 할 것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참여했던 기업들 관련 실적을 정리하고, 추후 수주업체 선정 시 히스토리를 반영 할 것

《 바우처 사업 관련 》

○ 바우처 결제 건수 증가에 비례하여 적발 금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부정수급 적발 담당 인력이 여전히 부족함,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하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잘 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정인력을 확보할 것

○ 장애인활동지원 생업 사용 불가에 대하여 부정수급조사도 중요하지만 부처와 소통을 통해 예방활동도 필요. 잘못된 결제 관행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 위해 교육과 컨설팅 진행할 것

○ 장애인 개인예산제 바우처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부정수급 공익제보의 경우 현장조사를 나가지만 FDS시스템은 현장조사율이 1%임. 시스템 활용 및 개선할 것

○ 바우처 결제방식 다양화를 위해 실시간 앱 카드 등의 다른 결제방식 고려할 것

○ 바우처 부정수급 철저히 관리하여 복지재정 누수 개선방안 마련할 것

《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아동 관련 》

○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시스템 운영 예산 확보 및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

○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의 신청 처리율 제고 및 가입 확대 방안 마련할 것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상 부적절한 용어에 대한 개선할 것

○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현장점검 실효성 강화할 것

《 기타 》

○ 정보시스템별로 근거가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제도설계나 정책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관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 결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노력할 것

○ 의료요양돌봄 사업 관련 '26년 본사업을 앞두고 있으므로 정보시스템 구축 경험이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이 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

○ 가명정보 활용기반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사업 운영 등 데이터 활용 기반 노력에 대한 방안 마련할 것

○ 의료정보보호센터가 제공하는 '민간 의료기관 의료정보 침해 및 예방을 위한 정보공유' 서비스의 신청 기관이 저조한데, 의료기관이 보안정보 공유에서 재외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청렴도 개선 노력이 낮은 것으로 보임. 직원들의 청렴도가 중요하므로 청렴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종합청렴도 개선을 위해 혁신적으로 노력할 것

○ 종합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할 것

○ 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사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

○ 의료기관 보안관련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적극적 노력과 의원의 의료법 개정 시 적극 지원할 것

○ 다문화가족, 이민가정들의 정보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포털 다국어 서비스 제공 확대할 것

○ 종합청렴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 마련할 것

8)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 본격 시행을 위한 교육 등 사전준비 진행할 것

○ 찾아가는 아동안전교육 예산 삭감에 대응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노력할 것

○ 요양보호사 교육강사 보수교육 개선하여 운영할 것

○ 경계선지능인 육성 및 전문가양성 프로그램 개설하여 확대 운영할 것

○ 의료인면허재교부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교육대상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노력할 것

9)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건강증진사업 》

○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정확한 산출을 통해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조직 및 인력을 강화하고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노인건강관리사업·연구가 통합적·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건강수명 격차 관련 연구와 정책제안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영양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1인가구 영양관리 프로그램 시범운영 성과개선 및 점검, 청년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 전략 마련 및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 확장 등 장기적 유지방안 모색을 통해 청년 1인가구의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금연길라잡이, 오늘건강-어르신건강관리, 채움건강 모바일앱 접근성 인증 획득하는 등 대국민 관련 업무를 추진할 시 장애인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할 것

○ 건강수명 연장과 기대수명과의 격차 해소,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사전예방,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공공형 디지털 헬스케어의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인프라 확장 및 3개년 기준 차세대 공공형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 비의료 경계에 있는 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공공 중심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료취약지역 대상 사업 확대를 염두에 두고 평가 및 기술 지원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건축단가 현실화를 위해 노력,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사업이 균특회계 자율계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 밀리지 않도록 관리할 것

《 금연정책 》

○ 청소년 흡연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만 3~5세 유아대상 흡연위해예방사업이 성인 흡연율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과를 점검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생 대상 금연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닌지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온라인 담배 판매 모니터링 개선 계획을 의원실에 보고하고, 담배 정의 확대 관련 의원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

○ 무인점포 내 담배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 향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흡연 경고그림·문구 표기 법안 개정에 적극 협력할 것

《 음주예방 및 절주사업 》

○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주류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음주를 조장할 수 있는 인터넷 콘텐츠 등 새로운 매체와 관련하여 면밀한 모니터링 및 선제적 예방 등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

○ 청소년 접근이 쉬운 이모티콘이 음주를 미화하여 노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 술병 경고문구에 '지나친' 등과 같은 단어 사용은 경각심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암 경고 문구 관련 개정 검토할 것

○ 음주예방도 금연사업처럼 센터로 격상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유튜브 등 OTT 플랫폼을 통한 음주장면의 규제 근거가 없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정비할 것

○ 보건복지부·건강증진개발원의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연령

제한 및 경고 표시 등이 추가되었으나 강제성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TV 방송 규제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현행 법령에서 정한 주류광고의 구체적 범위와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법령 적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책, 규제가 일관되고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주류광고 위반 적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음주운전 등 인식개선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중요한 사업으로 음주폐해 예방사업의 성과 지표 개선,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인식 개선, 절주 사업의 국가 차원의 노력,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 등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할 것

○ 주세 중 일부를 절주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것

10) 국립암센터

○ 최근 발생한 근로자 방사선 피폭 사건 관련 피폭된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및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할 것

○ 총액인건비와 정원에 대한 규제 완화, 별도의 관리체계 적용 등을 통하여 전문의를 확충하여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할 것

○ 암정복추진 연구개발사업 활성화 및 연구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립암센터에 위탁근거 마련하고, 해당 시스템의 고도화 및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것

○ 국립암센터를 '암 전문 상급병원'으로 지정하거나, '정책가산 수가' 신설하

는 등 상급종합병원에 상응하는 지원할 것

○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암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술병에 있는 암 경고 문구를 담배 경고문구와 같이 간결·명료하게 구체화하고 수정할 것

○ 지방의료원 등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입원형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할 것

11) 대한적십자사

○ 의연금 모집 배분의 공정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호지원기관으로서의 대한적십자사 역할 확대할 것

○ 헌혈기념품 상품권 계약 관련 피해 발생 시 손실보상 가능하도록 지급보증보험 가입 업체와 계약하도록 대책 마련할 것

○ 혈액원 직원 대상 성희롱·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및 피해자 보호조치 방안 마련할 것

○ 부산혈액원 이전·신축을 적극 추진할 것

○ 혈액 수급의 안정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혈액원 노후시설 및 장비 개선, 인력 확충, 혈액사업장 관리 강화, 수혈자 맞춤형 혈액 공급사업, 헌혈추진협의회 적극 운영, 헌혈예약 콜센터·픽업서비스 활성화 등 추진할 것

○ 헌혈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등록헌혈 제고하고, 30세 이상 연령층 및 여성 헌혈 증진할 것

○ 상주·통영·거창 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 적극 추진할 것

○ 혈액원 등 건물 노후화 관련 예산 마련, 스프링클러 조기 설치할 것

○ 헌혈버스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할 것

○ 지역별 헌혈 편차 줄이기 위하여 우수지역 사례 모니터링 및 공유할 것

○ 헌혈포스터 제작 관련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 점검시스템 구축할 것

○ 원료혈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추가 분산공간 마련할 것

○ 적십자병원 결원 발생 및 전문의 구인난 관련 개선방안 마련할 것

○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성별 구성비 개선,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마련할 것

○ 이용률이 저조한 콘도회원권 관리 방안 마련하고, 향후 유사 자산 매입 시 철저한 검증절차 거치도록 시스템 구축할 것

○ 원폭피해자 복지사업 준비금은 원폭피해자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적절한 사용계획 수립할 것

1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CBT 시험의 신속한 확대 도입을 위해 국고 지원을 확대할 것

○ 향후 의사 응시인원 급증에 따른 국가시험 대비가 필요하며, 평가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타당하게 평가 할 것

○ 올해 의사 실기시험 응시인원 감소에 따른 내년 의사 실기시험 시행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시원 재정운영 안정화 및 국가시험 선진화를 위해 10년간 동결된 응시수수료 인상을 검토할 것

○ 의사 및 요양보호사 응시인원 급감으로 인한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하여 국가시험 시행 안전화에 만전을 기할 것

○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처분기준 형평성을 개선할 것

○ 의료윤리 문제 출제 비중을 확대할 것

○ 국가시험 난이도 관리 강화 및 출제, 채점오류 방지 대책 마련할 것

○ 출제 및 채점오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시험원 운영 출연금 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출제작업 보안 취약성 개선을 위한 출제센터 신·증축을 추진할 것

○ 멀티미디어 문항 출제 확대를 위한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간호사 국가시험 CBT 추진을 위한 국고 지원 확보에 노력할 것

13) 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

○ BF인증 민간확대 및 인증운영기관 역할 활성화 할 것

○ BF인증 심의위원 구성 시 장애유형별 참여 다양화 할 것

○ BF인증 운영기관 제대로 된 사후관리 운영할 것

○ BF인증 운영기관으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세움터 연계할 것

《편의증진》

○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할 것

○ 장애인 접근성 보장 강화할 것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우선구매 판촉물에 대한 개선 및 생산시설의 관리 강화할 것

○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를 위한 품목 다양화 및 우선구매 비율 달성 방안 마련할 것

《장애인일자리 및 직업재활》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등 최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사업 확대할 것

○ 훈련수당 및 사업체 지원금 개선할 것

○ 중도포기자 등 관리할 것

○ 장기요양등급 참여제한 개선할 것

○ 고령장애인 참여자를 위한 맞춤 직무 개발 및 일자리 안전대책 마련할 것

《장애인식개선》

○ 장애인식개선교육 수준별, 분야별 맞춤 교육 지원할 것

○ 장애인식개선 미이수기관에 대한 조치할 것

○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향상 노력할 것

○ 장애차별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확대할 것

《장애아동·고령·여성장애인》

○ 장애아동을 위한 동력보조장치 관련 지원정책 검토할 것

○ 고령장애 실태조사 할 것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단가의 균형 조정할 것

○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방안 마련할 것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강화할 것

○ 발달장애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책 마련할 것

○ 공공후견인 연계 지연해소 방안 마련할 것

○ 개인별지원계획 내실화할 것

○ 최중증 통합돌봄 사업 활성화할 것

○ 발달센터 운영위원회 참여 구성 확대 및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제공할 것

《정신장애인》

○ 정신장애인 주거전환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연구할 것

《기관운영》

○ 고용형태 개선할 것

○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할 것

《기타》

○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시범사업에 장애인 소외 개선할 것

○ 개발원 고유 기능인 정책연구 기능 강화할 것

○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 불법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할 것

○ 맞춤형 재난 훈련 확대할 것

1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집행률 제고 필요

○ 북한 보건의료 협력사업의 올바른 방향설정과 실태점검 및 지원 필요

○ 징계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정비하고 자료 제출할 것

1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 개인정보 유출 》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징계 처분할 것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 납부 방안을 마련할 것

○ 실시간 알림서비스 관련 예산을 시급히 확보하여 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것

○ 정보보안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의무설치 》

○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의 지방보조금 지원을 위해 지원 조례 등 법적 근거를 정비할 것

○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역할을 오해하지 않도록 홍보할 것

《 기부식품등제공사업 》

○ 소비기한 경과로 폐기되는 기부식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수도권에 치중된 지역별 기부물품 배분편차 해소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푸드뱅크 기부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정부 비축농산물이 푸드뱅크에 기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

《 사회복지자원봉사육성지원 》

○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 실태 파악을 위해 관계부처에 정책을 건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16) 국립중앙의료원

《 신축 이전 》

○ 필수의료 기능을 할 수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만들기 위해 신축이전 시 병상 수 확대 및 공사비 현실화할 것

《 공공의료 확충 》

○ 필수의료·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가 중앙의료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크므로 적어도 상급종합병원 지원에 상응하는 적절한 지원과 역할 부여 방안 마련할 것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이 감염병 의료 대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할 것

○ 공공병원들이 낮은 급여로 인해 인력 수급 곤란하므로 정부의 인건비 등 지원할 것

○ 코로나19 시기 중앙감염병병원 역할 수행에 대한 회복기 지원 확대할 것

《 기관 운영 》

○ 국립중앙의료원 내 정책통계지원센터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인력 확충 및 안정적인 예산 확보방안 마련하고, 데이터 품질 관리와 통합적 활용 체계 구축 추진할 것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의 정보 정확도 개선할 것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에 따라 필수의료장비 구비 등 법적기준 충족을 위한 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마련할 것

○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장애인건강검진 지원사업 관련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할 것

○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상담 대기 기간 증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 응급의료정보망 구축 및 유지관리, 노후 서버 교체 관련 예산 지원할 것

○ 행려환자와 무보험 외국인 응급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종료 관련 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할 것

○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상황실 인력 부족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할 것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기관화 논의보다 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우선 추진할 것

○ 응급영상판독 지원사업 예산 확보 및 사업 참여도 제고 방안 마련할 것

○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위해 총액인건비·정원 규제 완화 정책 지원할 것

○ 의료분쟁 관련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책 마련할 것

1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기술재평가 》

○ 평가유예 기술 사용 시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 시행 및 기술 사용에 따른 부작용 보고 체계를 마련할 것

○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연장에 관한 실시 계획 및 기간이 만료된 의료기술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의 사용 기간 연장과 비침습적 의료기술에 대한 규제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의료기술재평가 수행 시 중립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

○ 의료기술재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최대 120일의 조정절차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할 것

○ 대구, 울산 전남, 전북, 세종 등 지역의 조정신청 수요에 대해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

○ 의원급, 성형외과, 피부과 등 종별·진료과목별 조정개시율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인적 역량을 확보할 것

○ 의료인과 환자의 정보비대칭 심화문제에 따른 환자대변인 제도의 구체적 실시 방안을 검토할 것

○ 대불재원을 정기적으로 징수하는 등 의료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특사경제도 또는 다른 기관에 추징업무를 맡기는 등 방법을 강구할 것

19)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국내 뇌사장기기증과 기증희망등록률 저조에 따라 장기기증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변화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홍보 방안 마련할 것

○ 뇌사추정자 통보 의료기관 중 신속한 구득이 가능한 곳을 선별하여 방문하는 등 장기구득 빈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할 것

○ 장기기증 실패 사례 원인분석 등 실패 사례 최소화 및 순환정지자 장기기증 실행 등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할 것

○ 뇌사 확인 절차 및 뇌사추정자 통보시스템 관리 철저, 의료기관이 적시에 뇌사추정자를 통보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 마련할 것

○ 뇌사추정자와 이식대기자의 적합성 검사를 수행하는 진단검사의학과의원

(KODA Lab)의 증가한 검사 수요 대응 및 신속·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인력·예산 확대할 것

○ 기증자·수혜자 간 익명으로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는 방안, 공공납골당 무료 지원 등 뇌사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할 것

○ 경영평가 성과급 예산이 지속적으로 미편성되어 최근 3년간 사업예비비 전용으로 성과급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별도의 성과급 예산 편성할 것

20) 한국한의약진흥원

《 원외탕전실 인증제도 》

○ 원외탕전 인증제도 개선 방안 마련할 것

《 우수한약 시범사업 》

○ 우수한약 시범사업의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 한의약임상연구센터 》

○ 국립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건립을 위하여 다각적 노력 필요

《 조제한약, 한약제제 제도 개선 》

○ 조제한약, 한약제제 제도 개선을 통한 한의약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할 것

2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의료기관 인증 》

○ 정신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제도 개선 대책을 검토할 것

○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부조사위원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법적 인력기준 준수 관련 사항을 인증기준에 반영할 것을 검토할 것

○ PA 간호사 관련 인력 인증기준 마련을 검토할 것

○ 병원 내 CCTV 설치 관련 내용을 인증기준에 반영할 것을 검토할 것

○ 비경구영양수액(TPN) 정맥주사 투약 행위에 대한 임상실무지침 관련 내용을 인증기준에 반영할 것을 검토할 것

○ 비경구영양제제 투입 관련 내용을 인증기준에 반영할 것을 검토할 것

○ 기관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환자 안전 》

○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고 의무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환자안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방안을 검토할 것

○ 환자안전 전담인력 제도 강화를 위해 연속적 부재기간 및 겸임 업무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환자안전 전담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

○ 환자안전사고의 원인분석을 통한 유사사례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할 것

○ 환자안전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중앙환자안전센터 운영 내실화 및 역량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역환자안전센터 확대 지정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

○ 환자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

22) 한국공공조직은행

○ 2022년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할 것

○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및 이식재 폐기 최소화 노력 지속할 것

○ 인체조직 기증 관련 의무기록 열람 권한 조정할 것

23) 아동권리보장원

《 입양 관련 》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정비하여 해외 입양을 지양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추진할 것

○ 내년부터 입양기관과 함께 하던 입양정보 제공서비스를 아동권리보장원이 진행하게 되는 만큼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할 것

○ 입양 정보공개진행 통보서와 정보공개청구 결과 통보서에 대한 공문서 확증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개선할 것

○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와 상관없이 입양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므로, 사망 또는 의료적 목적 등 예외 사유해석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입양정보의 공개가 친생부모의 동의여부에 달려있는 등 친생부모 정보에 대한 과잉 보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현재 등기우편으로 진행되고 있는 친생부모 동의절차 방식에서 유선전화나 문자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동의절차 구현을 위한 근거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입양인의 친생부모 노령화로 정보공개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

○ 입양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개편되는 입양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방안을 검토할 것

○ 입양인 당사자가 요청한 입양정보공개청구 관련 제안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할 것

○ 정보공개청구가 적절하게 등록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절차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정보공개제도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입양기록물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오류사항 보고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입양기록물 관련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백지스캔을 진행한 용역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위해 논의할 것

○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논란에 대한 문제 내역 및 복지부 감사결과에 따른 이행·보완 계획을 수립할 것

○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 데이터 오류 확인사항 보고」 용역 보고서 작성 후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 제출할 것

○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대하여 1) 기록물 원본에 면 표시 누락, 2) 백시스캔, 3) 데이터 구축 부실(다년간 데이터 업로드 누락), 4) 사업 수행 업체가 10년간 같은 업체였던 점 등에 대한 철저히 감사하고 시정할 것

○ 입양기록물 관련 2018년 감리보고서부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견한 데이터 이상에 대한 시정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

○ 입양기록물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유관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

○ 입양기록물 관련하여 누락된 데이터 보완 및 향후 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

○ 2025년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입양기록물 이관 사업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내년도 개정 입양법 시행에 따른 입양기록물 이관 과정에서의 정확한 입양기록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입양기록물 영구 보존을 위한 장기 보존시설 확보 및 기록물 이관, 전수조사, 실물 이관 비용 등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내년 법 시행을 대비하여 입양기록물 관리 부실 의혹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양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기록물 전산화를 위한 연구용역 업무에 관련 유경험자 인력을 배치할 것

○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기록물 누락 데이터를 보강하고 외장하드가 없는 기록에 대하여 파악할 것

《 아동학대 관련 》

○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행복e음시스템으로 사건 관리 시 가해자를 사례관리대상자(보호자·성인)로 분류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용어를 아동의 시각에서 숙고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아동학대 범죄 범위를 보호자에서 제3자인 타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아동학대사망사건 모니터링 업무 과정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침에만 의존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할 것

○ 아동학대·예방 관련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통계의 매월 집계, 당해 연도 내 집계를 검토할 것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중대 사망사건 분석팀 설치를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포함하여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역 간 입소율 편차, 쉼터 부족 및 체계적 배치 방안을

검토할 것

○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고 영유아 등 아동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할 것

○ 실효성 있는 현장대응을 위하여 아동학대 분리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자체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에 대한 권고기준(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에 따라 대응인력을 조속히 충원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 조치 등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 아동학대 판단에 관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 간 이견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바, 아동학대 판단 전이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례관리를 강화할 것

○ 재학대 아동 보호조치 개선 및 부모 대상 서비스 강화 등 재학대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재학대 아동 사례 관리 매뉴얼상 가정방문 관리가 원칙임에도 전화로 관리하는 등 부실한 관리를 개선할 것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건수를 높일 수 있는 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 보호종료아동 등 자립지원 관련 》

○ 위기발굴시스템에서 감지되는 자립준비청년의 위기 징후를 자립지원체계에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자립준비청년들이 시설 퇴소 후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

○ 온라인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대상 경제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방문 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

○ 자립준비청년이 금전피해로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되어 사례관리 중인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자립준비청년 금전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신탁제도에 대해 검토할 것

○ 디딤씨앗통장 만기 미수령 계좌 안내 대책 및 홍보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자립준비를 지원할 것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의 예산, 담당인력 및 지원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아동권리 및 보호체계 관련 》

○ 영상물, 사진 등 디지털 영역에서 아동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공자 포상 등으로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

○ 온라인 매체를 통한 아동인권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아동학대와 병행하여 검토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가정형 보호 활성화 및 양육시설의 기능전환을 위한 권역별 또는 시도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관련 논의할 것

○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를 활성화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영향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과 예산 확보하고, 지원 조직 확대 등 검토할 것

○ 지역아동센터 휴폐업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센터 내 안전사고 발생 등에 관한 통계 관리 등 안정적 돌봄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

○ 일반·전문위탁가정 지원에 대한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양육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전문위탁가정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장애여성 지원서비스 안내와 상담원의 장애인식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장애가 있는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대리 신청 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사결정지원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상담을 지원할 것

○ 다양한 집단의 필요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위기임신 상담 지원 대상을 유형별로 분류·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정부가 아동초기보호체계 구축, 시설 기능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정형 보호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서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등 시설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어 있는바, 실제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정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

으로의 구조 전환을 검토할 것

○ 중앙에 한 곳만 존재하는 아동권리보장원과 기초자치단체 및 현장시설을 매개할 광역 거점전달체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24)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자활성공률 높일 방법에 대한 방안 》

○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 개발 외 복합적 욕구 대응에 필요한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례관리사의 전문성 함양 및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적정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져 자활 성과 확대를 확보할 것

○ 자활사업의 특성인 일자리경험과 교육 기회에 대한 대상자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 자활급여 인상 및 지급대상 인원 확대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

○ 자활 자립 성공 시 자활 성공 지원금 지급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것

○ 탈수급, 자활성공을 위해 시장형사업단 비중 상향 방안을 검토할 것

○ 자활사업의 질적 제도개선 병행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자활지원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활성공 높일 방안 적극 검토할 것

○ 전국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 1명씩 모두 배치 확보할 것과 동시에 사례관리 업무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 청년자립도전사업단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 자활기업 활성화에 대한 방안 》

○ 자활기업 우선구매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보할 것

○ 자활기업 업종 발굴 및 업종 다양화에 대한 방안 마련할 것

○ 자활사업 제품 우선구매 등 판매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할 것

○ 자활기업 우선구매제도 의무 구매 비율 설정에 대한 방안 마련할 것

○ 자활기업 우선구매시스템 구축 예산, 법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할 것

25)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해당사항 없음 》

26) 중앙사회서비스원

○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거점기관(2곳)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조치를 시행할 것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율 감소 및 지역격차 발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상시적 품질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

○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 및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협의할 것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 방안을 협의할 것

○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화 등 중앙사회서비스원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을 마련할 것

○ 중앙사회서비스원 장애인 직원 고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 식품의약품안전처

(1) 기획조정관

○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및 신속 대응을 위해 별도 정원으로 일본 식약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

○ 행정처분 전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소송 제기를 줄이고 행정처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소비자위해예방국

○ 종이 빨대와 종이컵에 사용되는 코팅제(수용성 아크릴 에멀젼 포함)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재에서 기인하는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시험법 및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

○ 식품용 페트병의 물리적 재활용 등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인체 유해성을 검증하고, 미세플라스틱특별법 제정에 협조할 것

○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연구와 다양한 식품군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품 내 미세플라스틱 허용기준을 검토할 것

○ 2025년 6월부터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는바, 경인청에 무균실험실을 구축하고 시험비 지원 시범사업 등을 검토할 것

○ 문신용 염료에 대해 최소한 화장품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직접 제조하는 액상형 담배를 포함하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규제를 위해「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 확대 및 선제적 대비를 위한 검토를 할 것

(3) 식품안전정책국

《 HACCP 관련 》

○ HACCP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 방안과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식품업체를 위해 스마트 HACCP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HACCP 신규 의무적용업체 및 자율적용업체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영세한 HACCP 인증업체가 재인증 시 지원 대책을 마련하며,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인력을 추가 확보할 것

○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HACCP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표시·광고 관련 》

○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하는 숙취해소제품은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숙취해소제품에 이러한 문구가 없는 실정인바, 모니터링 후 조치를 할 것

○ 일반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와는 달리 숙취해소제품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심의할 것

○ 설탕 대체제인 말티톨이 함유된 무당(제로슈거) 강조표시 제품에 대해 혈당지수를 표기하거나 제품 뒷면에 경고문구를 추가하는 등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막쿠르트와 같이 일반 음료로 오인 가능한 주류협업제품에 대하여 주류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14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주류임을 표시하게 하는 등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인삼·홍삼, 흑염소를 사용한 제품의 원료 함량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인삼·홍삼 엑기스 제품의 경우 4년근, 6년근 등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연근제 표시와 관련하여 소비자 관점에서 영업자들이 관련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

○ 소비자에게 디카페인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알리는 조치와 디카페인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재조정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특별방역기간 동안 생산된 방사 사육 달걀의 표시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만드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버터 없는 버터맥주 사건에 대한 진행 경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것

○ 자율심의기구에서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급행심의서비스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것

○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를 평가하여 과학적 근거를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근본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전문 배우들이 의사, 약사 등으로 위장하여 영상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광고한 업체가 있으므로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하고, 불법 광고행위

의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 품목별 단계적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조속히 결정하여 GMO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것

○ 전향적인 자세로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할 것

○ 식품 등의 표시를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할 때 해당 QR코드의 위치를 찾기 어려우므로 식별을 위한 위치 안내 촉각돌기를 표시할 것

○ 식품 QR 표시 사업의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 방안을 마련할 것

《 위생·안전관리 관련 》

○ 생맥주 거품을 모았다가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적용을 검토하고 내년 여름이 되기 전 맥주 생산 및 판매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사전 안전관리 점검할 것

○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의 출입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위생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것

○ 창고형 매장의 경우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므로 반품되는 식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하여 점검할 것

○ 위해식품 회수율 제고를 위해 제품의 출고량 대비 회수량을 공개하고, 위해식품 판정 및 회수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것

○ 커피는 대중적인 기호식품이자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만큼 커피 프랜차이즈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감독을 할 것

○ 치킨, 마라탕, 탕후루 등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속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책임감 있게 위생지도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식품안전정보원은 부정·불량식품의 신고 접수 시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만 분류하여 접수하고 있는바, 기능성표시식품에 관한 정보를 신고항목의 필수 정보로 수집하는 등 신고 체계를 보완할 것

○ 상시 급식인원 100명 이상일 때 영양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산업체 집단급식소에 한하여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허용하는 규모를 배치기준과 동일하게 100명 미만으로 한정할 것

○ 영업현장 규제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시간 단축(매년 6시간 → 3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 향상이라는 법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과 같이 연 6시간 유지를 검토할 것

○ 회수 1등급 대상인 무등록·무신고 제품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에 대한 단속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AI와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정기적인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기타 》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업계와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와 제품별 현황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모니터링 및 분석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홍보하고, 해외의 식이보충제로 기능성·안전성이 입증된 전문의약품 성분 천연물 원료인 경우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원료로 사용·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특수의료용도식품은 품목제조신고로 전환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되 의사·임상영양사 등 전문인력으로 자격을 한정할 것

○ 최근 2년간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5성급 특급호텔에서 개최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향후 행사 준비와 진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

(4) 식품기준기획관

○ 지속적으로 이상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하여 제외국의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재평가 결과를 보고할 것

○ 기후변화 등으로 낙동강 유역에서 연례적으로 녹조 발생이 심화되고 있어 낙동강 유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거하여 조사의 실효성 높일 것

○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할 것

○ 202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 감미료에 대해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등의 잠재적인 영향이 장기적으로 있는 것으로 발표한바, 아동·임산부에 대한 감미료의 기준을 보수적으로 검토할 것

○ 비당류 감미료 사용 제품이 지속 증가하는 만큼 국민건강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감미료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 외국 여러 논문에서 대체당류에 대한 다양한 부작용을 언급하고 있어 대체당류의 안전성과 기준을 검토하여 적절히 조치할 것

(5) 수입식품안전정책국

《 수입식품 안전관리 》

○ 중국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주재소를 설치하여 김치 등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수행할 것

○ 수입 김치 HACCP 인증업소에 대한 현장점검 체계를 보완하고 인증단계에서 적합 판정 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었는지 보고할 것

○ 식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리해야 할 해외제조업소가 늘어나 수입 전(前) 단계의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료 수출 업소 등 국외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강화할 것

○ 중국산 수입김치에 대한 통관 전, 통관, 유통단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 가동 시 모니터링 등 계속해서 철저히 관리할 것

○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보다 빠르게 진행하여 많은 물량이 유통되기 전에 부적합한 식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최근 5년간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를 한 수입 김치 회수율이 저조하는 등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바,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

○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상당수가 위해성분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바, 위해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 및 점검 방안을 마련할 것

○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기획검사를 정례화하여 마약류 함유 해외직구식품의 검사, 정보제공 및 실태조사 등 의무 규정화를 검토할 것

○ 해외직구식품 구매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위해성분 검출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구매·검사 확대가 필요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의약성분 함유 해외직구식품의 실질적인 차단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파피씨드 함유 해외직구식품과 같이 동일 회사의 유사제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등 해외직구식품의 규모와 증가세를 고려하여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인력을 확충할 것

《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

○ 일본산 수입 규제, 수산가공품 등 검사 강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홍보, 방사능 장비 운영 등 국민 염려가 없도록 일본산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것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비전인 '식의약 안심이 되는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므로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

응할 것

○ 일본산 가공식품은 후쿠시마산 원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방사능 검출률이 일본 후생노동성과 식약처가 다르므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것

(6) 식품소비안전국

《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

○ 최근 유행하는 식품(탕후루와 요아정 등)이 어린이 기호식품 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규제가 미미함. 기호식품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 지정 기준과 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 타르색소를 사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관련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표시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의원실에서 조사한 103개 젤리제품 중 2개 제품에서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바, 관련 내용을 조사·검토 후 보고할 것

《 급식 안전관리 관련 》

○ 급식 안전관리에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이 없도록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조속한 전국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식생활안전관리원의 내실 있는 급식 안전관리와 식생활 정책지원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것

○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영양사 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반영하고, 면허수당은 기본급과 분리하여 지급할 것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관련 》

○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유통구조를 감안하여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

《 기타 》

○ 전체 음식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별영업자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편의점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이용하는 브랜드카페까지 '고카페인 음료 섭취주의 문구표시 캠페인'의 참여 범위를 확대할 것

○ 요아정(요거트 아이스크림 업체)처럼 소비자가 토핑을 선택하여 세트메뉴를 선택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섭취하는 당류, 열량(칼로리) 등 영양성분 함량을 알 수 없어 제도를 개선할 것

○ 코스트코 등 식육판매업체, 기타식품판매업체에서 구입한 제품에서 이물이 발견되어 소비자가 판매업체에 신고한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소에서 이물 발생을 보고할 수 있도록 판매업체에 대한 이물 통보 제도를 마련할 것

(7) 의약품안전국

《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관련 》

○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사전 GMP 현장실사 적체로 인한 수입품목허가·등록 절차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된 GMP 평가 정책 개편안

을 조속히 시행할 것

○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적합판정 취소 후 적합판정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임상시험 관련 》

○ 임상시험 중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USAR) 의심사례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해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임상시험 절차준수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김안과병원의 셀트리온 CT-P42의 임상시험 수행 관련, 해당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투약주기, 대상자의 정보공개 민원처리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할 것

○ 임상시험계획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자료의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

○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것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위하여 공정한 원가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타당성이 확인된 원가에 대한 비용 청구를 인정할 것

○ 임상시험 대상자가 동의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식약처 차원의 확인 절차제도 보완할 것

《 의약품 허가 관련 》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임신중지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허가를 검토할 것

○ 고가 중증질환 의약품에 대한 허가 지원을 위해 혁신제품 지정과 심사를 신속히 실시할 것

○ 지방청별 의약품·의약외품의 허가(신고) 기간 차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완 요구 시에는 사유를 적시하도록 명확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

《 의약품 공급 관련 》

○ 어린이 필수의약품의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현재 부처별로 개별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리가 부족하므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

○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성분명 처방에 대해 논의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공급중단에 대응할 것

○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수급 불안을 방지·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의약품 안정공급 모니터링에 심평원의 공급자료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해 위탁제조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및 공공재 성격의 의약품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수입국 다변화,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자급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

○ 희귀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약가 부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할 것

○ 식약처 누리집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재개일자가 공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급중단 보고를 더욱 빠르게 하며, 공급 부족 보고를 의무화할 것

《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

○ 동물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조합 C 인자를 이용한 엔도톡신시험법(투구게 대체 엔도톡신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식약처가 개발 등을 지원하여 OECD에 등재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

○ 동물대체시험법의 촉진을 위하여 관계부처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할 것

《 기타 》

○ 스테로이드 의약품의 불법 유통·판매를 단속하고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

○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복지부·식약처가 전문의약품 관리와 의사 의료행위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연계 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

○ 관세청과 협의하여 의약품 해외직구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해외직구를 통한 의약품 구매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점자 표시 의무화와 점자 표시 대상 항목 확대 등을 검토할 것

○ 의약품 유사 포장으로 인한 조제 오류 및 투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품 유사 포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기준을 마련할 것

○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 관련, 임상재평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

는 경우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립할 것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8) 마약안전기획관

《 마약류 예방교육 및 재활 관련 》

○ 마약류 사범의 재범 방지에 효과적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적용을 확대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중독재활센터인 '함께한걸음센터'의 인력 운영을 개선할 것

○ 수요와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함께한걸음센터 추가 설치와 중독자에게 24시간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센터 운영을 검토할 것

○ 마약류 중독자 재활은 장기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므로 함께한걸음센터뿐만 아니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56개 보건소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것

○ 마약류 중독자 재활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늦어진 이유와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보수교육을 도입하면서 기존 위촉강사에 대해서는 참여 유예기간을 부여한 이유를 설명할 것

○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별로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를 배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마약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인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의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추어 제도 시행 초기부터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할 것

○ 남한으로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

○ 마약중독자 재활을 위한 입소형 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입소형 시설의 신설 및 성별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법을 검토할 것

○ 급증하는 마약류 사범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재활 및 치료·예방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류사범 중 재활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중도에 퇴소한 사람들의 퇴소 사유를 파악할 것

○ 마약 동아리 사건 이후, 대학생 관련하여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대학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만든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메타버스가 오히려 마약 구매 루트를 알려주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우려 사항을 개선할 것

○ 지난해 여러 부처가 메타버스 활용 문제로 메타버스 사업을 철수한바, 마약예방 메타버스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재평가할 것

《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관련 》

○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를 위한 의료현장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처방이 빈번한 의사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해 경찰·지자체 등과 기획점검을 실시할 것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처방 중지 등의 행정조치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즉각적으로 처방을 제한할 대책을 마련할 것

○ 잔여 의료용 마약류 폐기량 입력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의료기관들은 잔여량이 감시망을 벗어나 오남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철저하게 지도·단속할 것

○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강보험 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

○ 마약류 오남용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1회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일회성인 경우도 처방내역에 따라 선별하여 처방의사에게 오남용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 폐업한 의료기관의 마약류 재고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과다처방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마약류 오남용 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

○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심평원과 협력하여 소아·청소년 등의 메틸페니데이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방안을 검토할 것

○ 마약류 의료쇼핑을 방지하고 중복·과다 처방으로 인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되는 성분을 확대할 것

○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성분 확대 관련,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처방소프트웨어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처방량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개정할 것

○ 실효성 있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약국을 확대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

○ 마약류 성분이 의심되는 제품을 수거·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 차단 조치를 실시할 것

○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 광고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범부처 차원의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 마약류 지정 관련 》

○ 유럽연합마약청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할 것

○ 프로포폴 대체재로 활용되고 있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불법 유통 및 취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자일라진에 대한 마약류 재지정을 검토할 것

《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관련 》

○ 정신질환자 등이 편리하게 향정신성약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불법적인 마약 사용과 별도의 법체계를 만들거나 규율 내용을 분리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마약류 사범의 양형을 강화하는 대법원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

○ 연구개발 목적의 사일로시빈 취급승인이 규정상 가능한지 설명하고, 품목허가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

○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할 때, 관련 내역을 보건복지부로 통보할 것

○ 국방부가 군 병사에 대한 마약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협의할 것

《 대마 관리 관련 》

○ 의료용 헴프(대마)의 합법적 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과 경북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임시허가 필요성을 검토할 것

○ 합법적으로 재배되는 대마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불시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 기타 》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인력 증원이 충분하지 않고 함께한걸음센터의 인력이 전국 센터별 업무 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치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력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

○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간사 기관으로서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중독센터 운영 및 전문가 양성 등 복지부와 식약처 간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관련 업무의 중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 현재의 마약류 중독자 사후관리는 현장에서 실효성을 지적받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대한 권한이 있는 부처에서 일관성 있고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검토할 것

○ 마약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중독자와 청소년 등의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

고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

○ 젊은 층의 마약류 중독이 급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9) 바이오생약국

《 바이오의약품 관련 》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필수 예방접종 백신의 자급률이 아직 30%를 넘기지 못하고 있어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규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과정에서 필요한 생산원료(세포) 안전성 분석 업무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것

○ 성장호르몬 주사의 오남용 및 이상사례 증가에 대하여 과대광고 단속 등 식약처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백신 멸균 주사침 결함 발생 관련, 이상사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철저하게 사후관리할 것

○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포진 백신의 대중광고 허용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

○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해외직구 사이트 차단, 온라인 불법 유통 점검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

○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오남용 우려 등을 담은 소비자 안내가 필요하고, 유

럽 규제기관의 비만치료제와 자살·자해 위험 간 인과성 검토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

○ 치매 치료제인 레켐비주(레카네맙) 허가 검토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치지 않은 사유 및 미국과 유럽의약품청의 안전성 우려를 검토할 것

○ 바이오의약품 신약 허가 혁신을 위한 허가 조직 시스템 마련을 검토할 것

《 화장품 관련 》

○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와 피해사례를 통합관리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화장품의 부당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

○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침 및 마이크로니들 등을 활용한 미용기기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주요국에서 활용 중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은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안전성 평가자료 개발·보급 등을 지원할 것

○ 이너케어젤 등을 화장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유도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법으로 화장품을 사용하도록 광고하는 영업자를 처벌하는 등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체계를 정비할 것

○ 2022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없이 운영된 화장품 리필 매장에서 위생 문제 등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화장품 리필 매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의무 규제를 개선할 것

《 의약외품 관련 》

○ 반복적으로 생리용품의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치아미백제의 거짓·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할 것

○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이 의약외품으로 오인되어 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

《 기타 》

○ 원외탕전실에서 첩약 등의 품목을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것

(10) 의료기기안전국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관련 》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국내에 도입하기 위하여 검토과정의 효율화, 개발지원 및 인력 확보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 및 안정적 수급 방안을 검토할 것

《 의료기기 품목갱신 및 GMP 인증제도 개선 관련 》

○ 의료기기 품목갱신 시 이전 유효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제출자료에 대한 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심사 시, 중복 GMP 현장 심사 개선을 위해 제조의뢰자 중심 GMP 심사로 개편하고, 심사 지연 해소 방안을 검토할 것

《 기타 》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인 PCL의 임상자료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것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로 인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 발생 시 피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공제)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과도한 가격 변동은 소비자의 가격 신뢰도 하락과 환자의 접근성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선되도록 할 것

○「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을 앞두고 하위규정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신규 제도로 인한 산업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대책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

○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즉시 진입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식약처의 허

가 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의 잠재적 위험성 등급별로 교육방식을 차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차단 관련,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안전성 검사 인력확충 계획과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인력 중 전문성을 갖춘 심사인력을 강화하고 심평원의 심사내용을 식약처가 공유·활용하는 등 안전성·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수술용 대여 의료기구 관리 강화를 위해 임대업자 준수사항 규정을 보완할 것

(11) 감사담당관

○ 직장 내 괴롭힘·갑질 사건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조직문화 개선·예방 교육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12) 규제과학혁신단

○ 「규제과학 인재양성교육 통합플랫폼」 구축은 개별 교육이 아닌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에 해당하는 규제과학혁신 분야의 교육만으로 한정하여 진행할 것

(13)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 식약처의 WHO WLA 등재에 따라 국내 제약업체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협력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14) 사이버조사팀

○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식·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 점검할 것

○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게시물을 적발하여 방심위에 차단 요청하여도 실제 차단이 안되거나 재심의 요청 시 중복 신고로 차단 요청이 각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가 유의미하게 줄지 않는 이유와 수사의뢰 결정 기준에 대하여 제출할 것

○ 정부 차원에서의 식품등의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바, 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업계가 자율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할 것

○ 마약류 불법유통 사이트의 차단 일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사와의 협력할 것

○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부당광고 관리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것

○ 쿠팡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및 불법판매 방치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 고발 등을 검토할 것

○ 온라인 판매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유해제품에 대하여는 직접 사이트 차단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불법 마약류 유통을 즉각 차단하기 위해 적발부터 차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할 것

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활교육 대상자 중 중도 퇴소 인원이 많은데, 퇴소 이유 파악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전 국민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사업에 대하여 단순 양적 수치 확대가 아닌 적절한 목표를 수립하고 연내 달성할 수 있도록 점검할 것

○ 대국민 마약류 예방교육 관련, 검증된 표준교재 및 전문성 있는 마약 예방 전문강사 인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고, 예방교육 사이트 이용자 수가 저조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3)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파미(Pharmee)라는 약 배송 관련 기업과 공식적으로 MOU를 맺거나 업무 위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내용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것

다. 질병관리청 소관

1)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대응 》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에 대하여 급여 등재를 확정한바 제약사와 협의하여 치료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라게브리오는 급여 등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치료제 수요 충족 계획이 충분하지 않아 물량 확보 계획과 그 전까지의 치료제 비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 2020년 10월 코로나19 증후군 질병코드 신설 이후 27만여명의 환자가 진단을 받았으나 실효성 있는 환자 지원 체계가 부재한 상황으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유증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현재 코로나 예방접종 권고대상이 65세 이상과 일부 고위험군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 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독감의 경우 80% 접종률을 토대로 매년 1,000만도즈 이상의 백신을 준비하는 만큼 코로나19 백신도 중증화 예방을 위한 접종률 관리와 충분한 백신 물량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최근 3년간 65세이상 고위험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평균 40.9%로 코로나19 백신의 낮은 접종률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저조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제고 및 백신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폐기물량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올해 7월 코로나19 입원환자가 5배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바 앞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수요를 정확하

게 예측하여 반복적으로 국민들이 감염병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

○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 9만 9,461건 중 보상·지원한 사례는 2만 4,781건이고 인용률이 25.1%로 지난 10년간 다른 백신의 피해구제 비율 49.8%의 절반에 해당함. 백신에 대한 국가 정책을 신뢰한 국민 보호를 위하여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이행과 피해보상 기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인과성 질환 확대, 각종 위로금 등 피해보상 및 지원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근본 대책으로 미흡하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을 마련할 것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 중 보상 및 지원 인정비율이 낮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이 의심되고 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 등에 보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것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4-2 사례들 중 불합리한 판단 사례가 있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통한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코로나19 접종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주장해 왔으나 여전히 근본적 대책이 미흡해 보임. 다음 팬데믹을 대비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특별법 제정 또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 마련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예방접종 》

○ 2023년 대상포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897억원으로 추정되고, 미국 영국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대상포진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있는바 대상포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고령층에 대한 대상포진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지원되는 무료 독감백신은 일반 독감 백신으로 고령층 독감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전문가들은 고면역원성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으로의 변경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예방접종 사업 중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하고 있는 HPV 2·4가에 비하여 예방범위가 넓은 HPV 9가(가다실) 국가예방접종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예방접종사업에 HPV 남아 접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어린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초고령사회에 맞춰 성인 예방접종 패키지 도입 등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수두 백신 2차접종(부스터샷) 등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접종에 대한 이상반응 관리 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는 산후조리원의 신생아들 사이에 집단감염 사례가 빈번하고 독감보다 사망률이 높으며 우리나라는 어린이집 등 집단 양육의 특성이 있어 영유아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 백신 접종 시 이상반응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고가의 백신에 대해 가격을 통제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식 등 국가예방접종 지원방식 변경 검토 및 예방접종 도입 소요시간을 단축할 도입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RS바이러스는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고령자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같은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고 국내 발병 현황이 과소 집계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RSV 발병 추세 파악 및 RSV 백신 도입 계획을 수립할 것

○ 국민에게 백신 선택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백신 접종의 장점뿐만 아니라 후유증,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전달 방안을 마련할 것

《 백신개발 》

○ 21개 국가예방접종 백신 중 순수 국내 제조 가능한 것은 6개에 불과하고 2023년 11월 장티푸스 등의 백신 공급중단 사례에서 보듯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자급화 방안을 마련할 것

○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을 통한 기술 개발에 대해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

○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확보된 성과들이 연구 역량 강화 및 넥스트 팬데믹 대응 등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향후 팬데믹 대비 》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지연 및 의료대응체계 구축 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이 지연되고 계속되는 이월과 불용으로 집행률이 2.2%에 불과하므로 예산 집행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넥스트팬데믹 대비 하수기반 감시체계의 고도화 및 WHO가 선정한 질병X, 고위험군 병원체들을 하수기반 감염병 관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넥스트팬데믹 대비 강력한 위험군으로 선정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비 계획을 수립할 것

《 생물테러 대비 》

○ 북한의 오물풍선이 생화학무기로 활용될 수 있어 미국의 탄저 대응 시나리오를 통한 백신물량 확보처럼 탄저백신 비축 및 관련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북한은 두창을 비롯한 세균, 바이러스 등 오물풍선을 이용한 생물테러 가능성이 있어 바이오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두창백신의 안정적 비축과 관련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생물테러를 대비하여 두창백신의 충분한 확보와 원활한 3세대 백신 개발을 위해 '25년도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탄저균 등의 생물학전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정량의 탄저백신을 비축 방안을 마련할 것

○ 유효기간이 만료된 물량에 따라 2024년 두창백신 구입 계획을 마련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최신 세대의 두창백신으로의 전환 대책을 마련할 것

《 항생제내성 및 의료감염 대응 》

○ 항생제 내성률이 OECD 평균보다 높고 다제내성균의 내성률도 증가하고 있어 다제내성균 감염증 관리를 위해 다인실 위주 입원 환경과 간호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의료환경의 현실 등을 반영하여 환경과 인력, 항생제 사용 행태 등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년~2027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관련감염 대응체계 추진 현황 점검 및 계획을 수립할 것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신고 건수가 2019년 1만 5,369건에서 지난해 3만 8,40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CRE 사망신고 건수가 2019년 203건에서 지난해 63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올 상반기에도 439건이 신고된 바 증가원인 파악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미설치 의료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2024년 항생제 내성 관리에 사용되는 예산이 17억원에 불과하므로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예산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되면 입원 기간의 장기화, 사망률 증가 및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하므로 항생제 내성균 확산 억제를 위한 과학적인 감시체계 강화를 위하여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에 요양병원 등 만성기 병원 참여 확대 및 요양병원 등에서의 요로감염 항생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만성질환 대응 》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건강 불균형 해소 사업이 2025년 3단계임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재원 마련이 어려운 여건으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건강검진 항목 근거평가가 완료된 나이 관련 황반변성(안저검사), 치주질환(파노라마검사)이 신규 검진 항목 도입이 결정되지 않은바 황반변성은 65세 이상 인구에서 실명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질병이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파노라마 검사가 필요한 바 검진 비용의 적합성과 효율성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검진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평상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면 질병 부담뿐만 아니라 감염병 유행에도 중요한 대비 전략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 만성질환 및 질병 부담 감시·관리 체계의 구축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으로 명시된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40.9%로 성인 5명 중 2명이고 2023년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료받는 환자 수가 304만 명이며,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복합 만성질환 환자 수는 140만명에 이르고 있어 이상지질혈증의 높은 유병률 및 증가 추세 개선을 위한 복합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 최근 10년간 호흡기 알레르기질환의 연도별 1인당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4명 중 1명은 10세 미만 아동이며 65세 이상 고령환자는 14.5%에서 18.6%로 증가하는 등 미래세대와 약자들의 환경성 질환 증가에 따른 진료비 부담 및 만성질환 대책을 마련할 것

《 희귀질환자 지원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소득재산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하는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고 희귀질환 대상질환이 아니거나 희귀질환 산정특례 미등록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 성인 및 소아 구별 없이 동일한 소득 기준을 적용할 것

○ 희귀 난치성 질환은 희귀질환으로 지정 받기전까지 환자와 가족들이 보호받지 못하여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큰바 신규 희귀질환 발굴·지정 및 미진단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진료 접근성 강화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환자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희귀질환은 대부분(70~80%) 유전성 질환으로 진단서비스는 제한적이므로 조기진단 및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한 전문적 유전상담 서비스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 중증 호산구성 천식의 사회경제적 부담, 환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및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질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증 호산구성 천식의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하여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최적화된 치료 환경 구축 계획을 마련할 것

○ 희귀질환은 질환의 희소성으로 진단방랑이 발생하고 있으며 조기진단으로 적기에 치료될 경우 예후가 좋아지기 때문에 조기진단이 중요한데, 최근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운영 기간이 약 5개월 정도로 짧고 진단 대상질환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기간을 연중

확대하는 등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등 특례를 지원하는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핵심 조건인데 동일한 질환임에도 선천성과 후천성의 구분에 따라 일부만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 산정특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은 폐동맥 고혈압 중에서도 치료가 어렵고 환자수가 200명 미만으로 추산되는 희귀질환으로 증상이 유사한 폐동맥 고혈압은 지난해 기준 환자수가 약 2,000명 수준으로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어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나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은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방안을 마련할 것

《 성매개 감염병 대응 》

○ 잠복감염자 발굴 등 매독 감염자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역학관계 파악을 위한 선제적 조치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4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단순포진바이러스의 경우 늘어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 발생빈도가 상위권(2위)에 속해 있으며 피부와 피부의 광범위한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는데 예방에 관한 홍보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홍보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신규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취약군 HIV 선별검사 및 PrEP(pre-exposure prophylaxis: 노출전 예방요법) 시범 지원 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 의료기관 상담 간호사 대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HIV 신규 발생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HIV 예방정책에 대한 계획 및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

《 기후변화 대응 》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 최소화, 신종 감염성 질환 대비와 기후변화에 따라 국내에서 증가가 예상되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감시망 강화 등 기후변화 대응 감염병 관리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 감염병 관리 R&D 예산증액 방안을 마련할 것

○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와 환경성 질환 진료 인원 4명 중 1명은 10세 미만 아동이고 60대 이상 고령환자의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경우 취약계층부터 위험해질 것이므로 실질적인 국민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종감염병 발생과 확산에 대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기후변화에 따른 온열질환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예산이 2023년 13억 9,400만원 대비 2024년에 73% 삭감된 3억 7,500만원으로 모기 관련 질병 관리가 우려되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질병 감시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온열질환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기반 온열질환 감시체계에서 나오는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에서 파악한 자료간 온열질환자 수가 상이한바 온열질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력하여 예방의 관점에서 위험요인을 찾아낼 수 있는 체계적 대책을 마련할 것

《 기타 》

○ 모기 매개체 감염병인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들은 모기를 통해 감염되므로 방역이 중요하며 WHO는 방역 수단으로 화학 살충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 매개체관리방법 I.V.M(Integrated Vector Management)을 제안하고 있음. 그 주요내용으로 생물학적 방제, 물리적 방제, 화학적 방제가 있는데, 해충 발생 전 예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생물학적 방제와 물리적 방제를 통해 유충 서식지를 원천적으로 박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친환경적인 유충 방제 대책을 마련할 것

○ 노숙인 결핵시설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어 최소운영비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검역소 인력 및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우려되므로 긴급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추가 인력 및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영국은 위험을 만든 당사자나 계약이나 법적 의무가 있는 목격자가 요(要)구호자에 대해 구조하지 않고 방관하는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한바 우리나라도 심폐소생술 확대 및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퇴행성 뇌질환인 크로이츠펠츠-야콥병(CJD: Creutzfeldt-Jakob disease) 환자는 매년 약 60여명 수준으로 발생하며, 지난해와 올해 환자 부검을 통한 확진 사례가 없으므로, 부검을 통한 변종 CJD 발생 유무를 확인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CJD 환자 부검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예산지원 확대 등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

○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42.8%를 차지, 노인 진료비 부담을 낮출 노인건강연구와 민간연구소의 지원 및 네크워킹을 위한 국가차원의 법정 국립노

화연구소 설립을 방안을 마련할 것

○ C형간염 검진 확대, C형 간염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과 C형 간염 퇴치를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것

○ 5,8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원인 미상의 비감염성 질환 집단발병 대응체계는 미흡한 수준으로 비감염성 질환이라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발병 시 감시와 역학조사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 백일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유행 양상 및 역학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감시 네트워크 신설과 강화된 방역체계가 요구되며 실시간으로 감염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는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다른 호흡기 감염병과 유사하여 제대로 진단되지 않아 국내 발병 현황이 과소 집계되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발병 추세 파악과 향후 RSV 백신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망률, 질병부담, 치료기간 등 백신 필요성 판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소아희귀난치성 안질환, 소아백혈병, 소아암 등에 대한 대안인 세포유전자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문제 진단과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2024년도 백일해 2급 감염병 발생인원이 2만명으로 작년 292명 대비 약 69배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백일해 유행 상황이 발생한바 급증한 백일해

감염병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목적으로 지난 3년간 기본조사설계비 등으로 96억 6,800만원을 편성했으나 매년 집행되지 않아 국립심뇌혈관센터 관련 철저한 사업 관리와 예산 집행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성조숙증이 2014년 9만 6,733명에서 2023년 25만 1,599명으로 급증하고 있는바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각종 질환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2) 대한결핵협회

《 결핵 관리(예방, 진단, 치료 등) 》

○ 2022년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결핵발생률이 26년간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해 오다가 2022년 2위로 하락했으나 심각한 수준이고 취약계층 돌봄시설 종사자의 잠복결핵 감염률이 40.8%에 육박하고 있으며 2024년 및 2025년 잠복결핵 감염 검진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 책정과 결핵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젊은 세대의 잠복결핵 현황 및 전북·전남 지역 노인 결핵 신환자 발생률이 높은 이유를 분석하고, 결핵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할 것

○ 돌봄시설 등 집단종사자의 잠복결핵검진 예산 삭감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및 결핵 예방·치료 대책을 마련할 것

○ 최근 대한결핵협회 자체예산 및 정부출연금 축소로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 목표인 2027년까지 결핵 발생률 10만 명당 20명 이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추가적인 정책 강화, 협회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결핵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다제내성결핵 환자수가 2021년 317명에서 2023년 551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다제내성결핵은 치료가 어려워 다제내성 결핵 예방을 위한 추가 재정 확보, 다제내성결핵 환자수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크리스마스 씰 모금 및 홍보 》

○ 대한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 씰 재원을 통해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결핵 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나 씰 판매의 변동성으로 인하여 재정 안정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크리스마스 씰 모금 축소에 따라 자체예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 및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활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기타 》

○ 대한결핵협회 사이버연수원 해킹으로 의무교육 대상자 1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8. 증인 및 참고인 주요 신문사항

가. 증인

고승윤((주) 비브로스 대표)

《 의료기관 진료 예약 어플(똑닥) 관련 》

○ 똑닥의 의료정보 수집과 의료민영화의 연관관계에 대해 질의

○ 똑닥의 의료정보 수집·관리 현황 및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정진웅(닥터나우 대표)

《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련 》

○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고, 플랫폼 영업과 연계하는 사유 및 적절성 질의

○ 정부의 공공 처방전전달시스템 마련 검토 요청

조승연(지방의료원연합회장)

《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관련 》

○ 성남시의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승인 요청에 대한 질의

남우동(강원대병원장)

《 국립대병원 경영난, 소관부처 이관, 공공임상교수제 운영 관련 질의 》

○ 국립대병원의 재정상황, 인력 충원률, 병상가동률 등의 경영상의 어려움과 병원의 노력사항 청취 및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 질의

○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에 대한 의견 및 기대하는 정책에 대해 질의

○ 교육부 공공임상교수제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질의

양재웅(W진병원 원장)

《 정신의료기관 치료환경 개선 》

○ 정신병원에서 격리·강박 환자가 사망한 사고 관련하여 유가족에 대한 사과 요구

조민수(㈜코스트코 코리아 대표)

《 유통제품의 품질위생 관련 질의 》

○ 납탄 조각이 검출된 소고기 등 코스트코에서 유통된 제품의 품질위생 문제와 관련하여 소비자에 대한 사후조치가 늦어진 이유와 재발 방지 대책 관련 질의

○ 반품 제품에 대한 검수기준, 재발 방지 대책 및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수행 여부 관련 질의

주성원(쿠팡 전무)

《 온라인 플랫폼 불법유통 의약품 관련 질의 》

○ 온라인 플랫폼인 쿠팡을 통해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의약품에 대한 조치방안 질의

나. 참고인

서은교(경기도 지역상담기관 기관장)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 지역상담기관의 상담 건수나 주요 상담 내용 및 인력이나 예산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 또는 개선할 부분에 대한 질의

오복경(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계룡시 요양원 노인 학대 관련》

○ 충남 계룡시 노인요양원 노인 학대 사건의 심각성과 요양원 내 강박에 대한 문제점, 요양원 등에게 받은 압박·협박 여부, 경찰 송치 여부와 별개로 지자체의 행정처분 사례가 있는지 여부 및 요양원에서의 강박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대다수인데 이에 관한 견해 등 질의

구민정(서울대 어린이병원 당뇨병교육실간호사)

《 1형 당뇨 환자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 청취 》

○ 하루 수회 인슐린 주사를 해야 하므로 학교 생활 어려움은 물론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당함

김대중(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 1형 당뇨에 대한 장애인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청취 》

○ 1형 당뇨는 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이 있음

박진주(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팀장)

《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및 대책 마련 관련 의견청취 》

○ 경계선 지능인에 필요한 지원 및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청취

강현석(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전주지역 수행기관장)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개선방안 청취 등 》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성과 대비 실적이 낮은 이유와 시범사업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박초현(피플퍼스트성북센터)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필요성 관련 》

○ 장애인거주시설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 과정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에 관한 설명

정형준(원진녹색병원부원장)

《 의대정원 증원 관련 》

○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대해 중소병원 현장의 의사로서 의견에 대한 질의

○ 현장의 의사, 정책 전문가로서 의료대란 및 의대 증원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사회단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

안덕선(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 의과대학 평가인증 관련 》

○ 주요변화평가 관련 진행상 어려움 및 교육부와 문제에 대한 질의

임진수(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의과대학 교육과정 관련 》

○ 의과대학 교육과정 6년제에서 (교육의 질 저하 없이 희망하는 대학에 한해) 5년제 과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질의

《 의료대란 관련 사직 전공의 의견 청취 》

○ 메디스태프 전공의 블랙리스트와 전공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질의

김신애(장애인 부모)

《 경장영양제(유동식) 공급부족 관련 》

○ 경관급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장애인 가족의 애로 및 요구사항에 관한 설명과 지원 확대 촉구

박조은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

○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차 투여에 대한 인정 필요성에 대한 질의

안창국(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 실손보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관련 》

○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견해 청취

박정환(대한비만학회)

《 비만치료에 관한 문제 등 》

○ 만성질환의 관리 방안처럼 제2차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이 필요

○ 복지부 차원에서 비만 치료, 연구협력 및 개발, 규제 혁신을 위해 지원해 주기 바람

김도윤(타투이스트)

《 문신 제도화 관련 》

○ 시술자의 피해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문신 제도화 촉구

이상아(의과대학 교수)

《 공공의료데이터 연구 등 》

○ 데이터 결합 등 공공 의료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연계를 위한 개선 건의

조승연(지방의료원연합회장)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관련 》

○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의 지역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트에 지방의료원·공공병원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는 것과 관련 지방의료원이 참여하는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질의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회장)

《 의료개혁 추진 방향 》

○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이 필요한데 1차 의료 강화,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공공의료 중심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견해 질의

○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제정 추진에 대한 환자단체의 입장 질의

한분영(덴마크 한국입양진상규명그룹 공동대표)

《 입양 기록 및 정보공개청구 관련 》

○ 입양 정보가 출생부터 입양까지의 모든 기록, 입양 전 성장에 대한 기록, 고아 호적 및 고아 호적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기록,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 양부모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 할 수 있도록 입양정보 항목 개선 요구

○ 입양정보 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표준화된 절차 마련 요구

○ 입양인들에게 완전하고 조건 없는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입양인들이 신원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으로 정보를 조작하거나 숨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공개 요청을 처리하는 유관기관들이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장 대응 관련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감에 대한 보건복지부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관리 감독 여부에 대한 질의

○ 아동학대 분리 조치는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반면 아동의 원가정 복귀 절차는 행정복지 차원의 접근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질의

○ 재학대 방지 예방을 교육 세분화 필요성에 대한 질의

이승준((주)일공비 이사(SMA환우 대표))

《 SMA 환자 치료제 급여 불승인 관련 》

○ SMA 치료제 급여기준이 18세로 확대되었으나 불구하고 과거의 관련 기록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증상과 발현 시점을 증명할 수 없어 불승인되는 사례 및 심사평가 기준 보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

김대연(의료법인 희정의료재단 양구우리병원 부장)

《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관련 》

○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사업의 연장 필요성 및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공급 여건에 따른 현행 등급부여 등 제도의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

조정일(한국폐암환우회장)양구우리병원 부장)

《 폐암 국가 암검진 제도 관련 》

○ 현행 폐암 국가 암검진 제도의 문제점, 대상 확대의 필요성 등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

김재성(인천 참사랑병원 진료과장)

《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사후관리 관련 질의 》

○ 마약류 중독자 치료 시 경험하는 고충 및 마약류 중독자들의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질의

○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각각 운영하는 중독재활센터 간 중복 문제 및 운영시간 연장 등에 대한 질의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25개소임에도 인천 참사랑병원 등 일부 병원에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

○ 마약류 관련 언론 보도가 마약류 중독자의 재발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는지 질의

남경필(마약예방치유단체 은구(NGU) 대표)

《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관련 질의 》

○ 마약류 투약자의 가족으로서 치료·재활 확대에 공감하는지, 식약처 재활센터인 '함께 한걸음센터'는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질의

려우문한(웨일코코리아 Trust Safety팀 책임자)

《 해외 플랫폼의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관련 질의 》

○ 테무 등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이 불법유통 및 광고되고 있는데, 그 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

○ 테무는 한국에 상주 직원이 없어 규제기관과의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 법인 설립계획에 대한 질의

정경주(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

《 병원 마약류관리자 관련 질의 》

○ 병원에서 마약류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할 때 처방의사 수가 아니라 처방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